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508-01

유엔 인권조약기구제도 강화 방안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Strengthen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y System
A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내바네섬 필레이
2012년 6월

신혜수(감수)



목 차

◎ 사무총장 서문	3
◎ 서 론	4
◎ 제1절 조약기구제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	9
◎ 제2절 배경, 실상 및 수치	14
2.1. 조약기구제도 개관	14
2.2. 조약기구제도의 실상 및 수치	15
2.3. 조약기구제도의 당면 과제	19
2.3.1. 보고의무 불이행	19
2.3.2. 당사국 보고서 및 개인진정 심의의 적체	23
2.3.3. 조약기구 문서	24
2.3.4. 역량의 격차	25
2.3.5. 일관성	26
2.3.6. 자원	26
2.4. 조약기구강화를 위한 과거의 시도	29
2.5. 조약기구강화를 위한 현재의 과정	31

● 제3절 현재까지의 성과	33
3.1. 조약기구가 취한 조치	33
3.1.1. 건설적 대화에 할당된 시간 및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	33
3.1.2. 의장들의 역할	34
3.1.3. 통역사용 및 문서의 축소	34
3.2.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조치	35
3.2.1. 사무국 업무방식의 조화 모색	35
3.2.2.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사업 및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서의 조약기구 권고	36
3.2.3. 조약기구제도의 접촉활동 및 가시성 확대	36
3.2.4. 기술 협력	37
3.2.5. 조약기구강화 과정	38
3.3. 각국이 취한 조치	38
● 제4절 2009년 11월 이후의 자문과정을 기반으로 한 인권최고대표의 제안과 권고	40
4.1. 종합 보고 캘렌다	40
4.2. 간소화되고 조율된 보고과정	53
4.2.1. “약식 보고절차”	53
4.2.2. 공통핵심문서 제출 및 정기적 업데이트	58
4.2.3. 페이지 제한의 엄격한 준수	61
4.2.4. 당사국과 조약기구 간 건설적 대화를 위한 조율된 방법론	64
4.2.5. 요약회의록 번역의 축소	66
4.2.6. 초점을 맞춘 조약기구 최종견해	68

4.2.7. 여타 유엔 파트너들과의 관계의 제도화 제고	71
4.2.8. 조약기구,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간 통합적 교류 모델	74
4.3. 개인통보절차, 조사 및 국가방문의 강화	77
4.3.1. 개인통보에 관한 조약기구 공동의 실무그룹	77
4.3.2. 절차규정과 업무방식의 적용 및 공동지침 채택과 관련된 우수사례 검토	79
4.3.3. 개인사례에 관한 조약기구 결정례 데이터베이스의 수립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제공	81
4.3.4. 우호적 해결	82
4.3.5. 고문방지소위원회의 역량 향상	83
4.4. 조약기구 위원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85
4.4.1. 인권조약기구 위원들의 기능행사에 있어서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한 지침	85
4.4.2. 조약기구 전문가의 후보추천과 선출에 관한 국가정책 및 과정에 대한 제안	86
4.4.3. 기대, 가용성, 요구되는 업무량에 관한 안내책자 및 조약기구선거 통합 웹사이트	89
4.4.4. 모든 당사국이 조약기구의 잠재적 후보자나 피지명인을 공고하기 위한 공개된 공적 공간	90
4.5. 조약 이행 역량의 강화	92
4.5.1. 조약기구의 후속조치 절차	92
4.5.2. 일반논평/일반권고의 작성을 위한 조율된 자문과정	94
4.5.3. 보고 관련 역량강화 활동	96
4.5.4.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	99
4.6. 조약기구의 가시성 및 접근성 향상	102

4.6.1. 조약기구의 접근성 및 가시성을 국가적 수준에서 향상시키기 위한 웹캐스팅 및 화상회의	103
4.6.2. 조약기구제도의 가시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타 조치	107
◎ 결론 앞으로의 방향	110
◎ 부록 제4절의 제안들에 대한 비용 추계	111

약어 목록 (알파벳 순)

CAT	고문방지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
CCD	공동핵심문서 (Common Core Document)
CED	강제실종위원회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
CEDAW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RD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SC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MW	이주노동자위원회 (Committee on Migrant Workers)
CM	의장단 회의 (Chairpersons Meeting)
CRC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OPAC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CRC-OPIC	개인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CRC-OPSC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RPD	장애인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CM	회의관리국 (Division of Conference Management)
ECOSOC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HR Committee	자유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HRTD	인권조약국 (Human Rights Treaties Division)
ICM	위원회 간 회의 (Inter-Committee Meeting)
LOIPR	보고 전 현안목록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NGO	비정부 기구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NHRI	국가인권기구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PM	국가 예방 메커니즘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OHCHR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IOS	내부감사실 (Office of Internal Oversight Services)
OPCAT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약어 목록 (알파벳 순)

SNRCM	상설 국가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 (Standing national reporting and coordination mechanism)
SPT	고문방지소위원회 (Subcommittee on Prevention of Torture)
SRP	약식 보고절차 (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TB	조약기구 (Treaty Body)
UHRI	세계인권색인 (Universal Human Rights Index)
UNCT	유엔국가팀 (United Nations Country Team)
UNOG	유엔 제네바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UPR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사무총장 서문

유엔 인권조약기구제도는 고귀한 이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용적 조치를 혼합한 것으로, 인권을 위한 국제적 투쟁사에 있어 최고의 업적중 하나이다. 조약기구는 보편적 규범을 사회정의와 개인의 안녕으로 전환시키는 엔진으로서 국제 인권보호제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도구들을 적용시켜가면서 이 제도는 인권 기준에 대한 권위있는 안내서 역할을 하며, 조약이 특정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언하고, 모든 인간이 인권을 향유하기 위해 당사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은 지난 수년 동안 새로운 인권협약을 채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기구들을 창설함으로써 본 제도를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온 국가들이 이를 증명해준다. 그 혜택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 피해자들은 개인진정 제도를 통해 보상이나 배상을 조약기구에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들 기구에 의존한다. 또한 전문가, 시민사회집단 및 정부대표가 보고 및 여타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개개인의 권한이 강화되고 법률, 정책, 계획 및 제도가 개선된다.

조약 기구의 타당성 및 역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국제적 합의가 다음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이는 3년에 걸친 성찰과 모든 당사자들과의 협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본인은 국제인권기준의 이행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독립 전문가 심의 및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가 있는 이 귀중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인권 최고대표가 보여준 리더십을 비롯하여 작성과정에 기여한 모든 이들의 노력을 치하하는 바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노예제도, 인종 차별, 고문 및 여타 인권을 유린하는 활동들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사실은 인권 공동체의 활동의 결과이며, 이를 실제적으로 근절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는 본 보고서에 있는 제안들을 진중하게 고려함으로써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세밀하게 작성된 문서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지는 정부, 인권 활동가 및 그 밖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본 보고서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국제적 발전에 정말 핵심적인 유엔 인권조약기구제도의 보다 진전된 발전을 촉발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2년 6월

유엔 사무총장 반 기 문



서론

2008년 9월에 시작된 본인의 재임 첫 1년간, 수많은 국가 대표와 모든 유엔 인권조약기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많은 국가들이 그들이 약속한 수많은 보고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좌절감을 표현했다. 이러한 보고의무는 국제인권조약 상의 보고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과정 및 다수의 국제노동기구 조약상의 보고도 포함한다. 거의 모든 조약기구들은 늘어나는 국가 보고서 및 개인통보를 심의할 회의시간의 부족 및 이로 인한 심의 연기, 시의적절한 문서번역의 부족, 사무를 보좌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의 부족 등을 비롯하여, 그들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능력을 제한하는 수많은 장애물에 깊은 불만을 표시했다.

인권조약기구의 설립 및 조약기구제도의 발전은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려는 국제 공동체의 노력 중 가장 위대한 업적의 하나이다. 조약기구는 인권 조약에 의해 설립된 범규범의 관리자이다. 국제인권조약의 법적 서약에 근거하여, 당사국은 조약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조약기구는 법률 및 정책을 심의하고 당사국이 인권 의무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는 길을 조언해준다. 보고과정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일도록 고안되었다. 국가는 조약기구제도를 설립하였고, 그 업무의 주요 수혜자이다. 국가는 인권조약의 실질적 조항들의 이행 및 그 제도가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권리를 향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고과정은 보고서 준비 및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있어 국가 수준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고과정의 정례화, 그리고 보고서 준비 및 보고 후 후속

1) 예를 들면 다음을 참조: Christof Heyns and Frans Vioen, *The Impact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ies on the Domestic Level*, (Kluwer Law International, The Hague, 2002), p. 648. 이외에도 단일 조약에 대한 몇 가지 특정 연구로는 *What Happened?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Five Countries: Estonia, Nepal, Peru, Uganda and Yemen*, Save the Children, 2009; *Report of the Study on the Impact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04)가 있다. 조약 기구의 개인통보절차 영향력과 관련하여 Committee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Final report on the impact of findings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ies* (2004) 또는 *From Judgment to Justice: Implementi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Decisions*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 Open Society Foundations, 2011)를 참고할 수 있다.

조치에 수반되는 전국적 토의 및 논쟁은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보고의무의 충실한 준수가 지속적 후속조치와 이행을 촉진한다는 점이다. 조약기구의 권고와 일반 논평은 종종 국가를 위한 조기경보 및 이행안내도구가 되고,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에는 지지활동을 위한 기지를 제공하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와 특별절차의 업무를 위해 강력한 실체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한다. 개인통보를 접수하고 심의하는 조약기구의 권한은 개인 및 집단을 직접 보호하는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인권 판례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조약기구는 주요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절대로 편중된 선택을 하지 않으며, 모든 인권의 동등한 취급을 보장한다. 조약기구제도의 전문적이고 규범적인 특성은 조약기구가 정치적인 수 있다는 비난으로부터 지켜준다. 조약기구 권고의 정확성, 타당성 및 질은 계속 유지되고 향상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로, 모든 이해 당사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국가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당사국의 단 16%만이 제때에 보고하며²⁾, 이러한 낮은 준수율 하에서도 보고절차를 갖고 있는 9개의 조약기구 중 4개 기구는 심의가 필요한 보고서가 계속 쌓이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여러 조약기구가 추가 회의시간을 유엔총회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심의대기 중인 개인통보가 지연됨에 따라 자유권위원회는 제67차 유엔총회에 140건의 개인통보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 서류번역 및 실무인력을 요청할 예정이다.³⁾

조약기구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급 자원봉사자들인 전문가들의 헌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뒷받침, 그리고 국가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제도가 오로지 불이행 때문에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허약한 조약기구제도는 즉각적인 혜택을 입는 사람들에게 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한 유엔 인권제도 전반, 즉 인권이사회의 UPR이나 세계인권운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9년 후반, 본인은 조약기구제도를 강화할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을 시작해 달라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요청했다. 이는 본인이 유엔총회 결의 48/141에 의해 부여된, “인권분야의 유엔제도 효

2) 본 수치는 2010년 - 2011년 2년간의 보고서 계산에 기준한 것이다.

3) 대략 비용 추산 결과, 회의 서비스 (번역 및 여타 문서화 비용) 750만불 및 직원 비용 120만불.

율성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한 합리화, 적응, 강화, 일원화”라는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의 궁극적 목적은 문제점을 조사해서 조약기구의 독립성을 온전히 존중하면서도 그 업무를 강화하여 국가 수준에서 당사국,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의 기저에 있는 원칙적 접근방법은 이 제도 내의 모든 주체들과 협의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현 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도출해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인은 조약기구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조약기구를 하나의 제도로 보는 견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하였다. 이 과정은 조약기구와 조약기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운영방식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과 조화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조약기구의 업무를 적절히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이 무엇인지를 이 과정에서 파악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재정위기에 비추어 비용절감 기회도 찾아보려 하였다. 하지만 혹시 절감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자원 내에서 새로운 임무를 더 받아들이는 접근방법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분명해졌다.

조약기구 강화과정은 조약기구 전문가, 당사국,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및 유엔기구 등 여러 다른 주체들 간에 세계 여러 곳에서 개최된 약 20여회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협의의 대부분이 외부 파트너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사실은 이해당사자가 다수라는 조약기구의 성격을 반영해준다. 이 과정을 완전히 투명하고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 협의의 결과들, 그리고 국가, 조약기구 위원들 및 시민사회가 제출한 모든 서면문서들을 본인 사무소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공개했다.

조약기구들 또한 더블린 II (2011년 11월) 종합결과문서 등을 포함, 이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문서는 모든 조약기구의 의장들이 개인자격으로 서명했다. 이 문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6개 조약기구(아동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자유권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및 고문방지소위원회)와 많은 조약기구 개인전문가들이 지지했다. 이 기회를 빌려 힘든 일을 해내기 위해 휴회 기간 중에도 무료봉사로 헌신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2012년 4월 2일과 3일 뉴욕에서의 국가들과의 협의와 그 이전에 2012년 2월 7일에서 8일까지 케네디, 그리고 2011년 5월 12일에서 13일까지 시온에서 각각 개최되어 국가들이 참석했던 행사는 높

은 참여율을 나타냈고, 풍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수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시민사회 대표들 또한 이 협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조약기구들과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협력관계를 마찬가지로 보여주었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조약기구 강화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여, 현안에 집중하면서 조약기구제도의 기능, 요건, 영향력 및 미래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풍부하고 창의적이며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이 과정은 조약기구제도의 “개혁”보다는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전의 개혁 시도로부터 배운 교훈에 따라 나는 조약의 법적인 면은 변경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과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은 헌신, 투명성, 참여, 기술적 건전성 및 포괄성의 정신위에서 전개되었다.

수많은 자료와 아이디어가 표출되었으나, 이들 모두를 본 보고서에 게재할 수는 없었다. 국가별로 제출한 문서의 전문 등 모든 기고문은 공개되어 있으며,⁴⁾ 두 핵심 정책결정자(당사국과 조약기구)들이 이 방대한 자료를 활용해서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을 권장한다. 따라서 본 취합본의 목적은 상호 강화를 위한 시너지, 연관성 및 영역을 파악하고, 협의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잠재적 미래 공통 기반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인의 보고서에 포함할 제안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이러한 제안들은 조약을 존중하고 조약의 개정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협의 과정동안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고려하고 가장 많은 수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한 제안이어야 하며, 조약기구제도의 미래를 위한 통합적 비전을 제공할 수 있게끔 다른 제안들과 같이 병존해서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제안이 조약기구 강화에 기여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더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핵심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 인권조약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당사국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종합적 보고 칼렌다 수립
- 위원들의 독립성과 공정성 증진 및 선출 절차 강화
- 당사국의 보고의무 역량구축을 위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접근방법 수립
- 조약기구의 개인통보 결정레가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갖도록 보장
- 개인통보 관련 업무에 있어서 조약기구들 간의 업무조정 강화 및 절차적 질문에 관해 공통의 가이드라인 채택
- 공개회의의 웹캐스팅 등 여타 새로운 기술사용을 통해 조약기구제도의 접근성 및 가시성 증진

4)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TD/index.htm> 참조.

- 당사국들과 유엔이 질을 담보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면서 보고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간소화되고 초점 있는 보고절차
- 조약의 규범적 특수성에 상충됨이 없이 최대한 타 기구의 운영방식과 조율
- 문서 길이 제한

사무소가 수행할 업무에 덧붙여, 보고서의 각 부분들은 필요한 경우 이해당사자들, 즉 조약기구, 당사국,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및 유엔기구 등에게 권고안을 명시하고 있다. 각 권고안은 독립적으로 이행 가능하지만, ‘한 묶음’으로 같이 다루어지면 상호 강화 효과가 있고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는 협의과정의 결과를 위해 지난 2012년 2월 23일에 총회가 채택한 결의안 66/254에 의해 총회가 앞으로 내릴 결정, 특히 재정에 대한 결정을 알리게 될 기회가 생긴 것을 환영한다. 2009년 이 과정이 시작된 이후, 본인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책임 영역에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줄곧 생각해왔다. 이 정부 간 논의가 여러 이해당사자를 포괄하고, 자체의 업무방식과 절차규정을 결정하는 조약기구의 권한을 존중하며, 조약에 명시된 조약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으로 믿는다. 나는 이 보고서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정책결정을 위한 튼튼한 밑받침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는 여기서 제안한 ‘한 묶음’의 권고안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당사국 및 조약기구의 헌신이 요구된다.

효율적 인권조약기구제도의 성취라는 공통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본 제도의 모든 주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한다.



당사국을 위한 뉴욕 협의 (2012년 4월)

제1절

조약기구제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

모든 인권의 보호를 증진시키고, 특별절차 및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비롯한 다른 인권 메커니즘과 조화를 이루는,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무이행에 대한 예측 가능하고, 정기적이며, 비정치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전문가가 이끄는 독립적 심의를 통해 국가적 토론 및 국제적 대화에 기여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약기구 제도.

조약기구 강화과정을 시작했을 때, 많은 이해당사자들은 조약제도가 완전히 제 기능을 다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많은 제한사항들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전의 급진적 개혁 시도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당사국 및 조약기구 전문가들의 헌신 속에서 계속적으로 토의가 이루어졌고,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유엔 파트너 및 학회 등으로부터 동등하게 제안을 보탠 결과, 수많은 아이디어가 생성되었다. 이를 통해 조약기구제도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내가 조약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비전은 다름 아닌 인권의 보편성 및 불가분성 원리의 작동이며, 이러한 원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할 국가의 주요 책임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들이 조약을 비준도 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실현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따라,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차별이나 이중 잣대 없이 정기적, 비정치적, 비차별적 그리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심리를 하며,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키는 강력한 조약기구제도를 요구한다. 본인은 차후 이러한 제도가 조약기구를 뛰어 넘어 상당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가들이 국제인권제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비전은 결국 임시변통적 해결책이 종식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완전히 도입됨을 뜻하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당사국들이 조약기구들과 관계를 맺고 혜택을 받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각 당사국은 조약을 통한 각자의 보고의무를 숙지하고, 이 보고서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상설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을 설치 또는 강화할 것을 장려하며, 자체평가와 정책검토, 그리고 건설적인 국내 대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고과정을 빛나게 하고 진정한 정수를 제공하는 긴요한 국가적 간담회를 포함하여, 일의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업무량 하에서 이러한 국가 메커니즘은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그 역량과 제도적 기억력을 점차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들은 곧 조약 간 상호연결성을 인지하고, 경험의 축적과 더불어, 한 보고서를 위해 쌓아놓은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보고서의 준비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전의 권고를 이행하면서 그동안의 발전과 문제점들을 다음 보고서 제출 시 진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확실해지면서, 이러한 국가 메커니즘은 중간 기간 동안 실제로 이행한 것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 제안된 신규절차에 따라 정렬된 보고체계를 심분 활용하여, 이들은 향후 정기보고서 준비가 더욱 초점이 있게 되고 작성이 수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최근 다년간의 보고서들이 가장 높은 상호연관성을 지니면서, 한 보고서의 작성이 그 해에 제출해야 하는 다른 보고서의 작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보고의 부담'이나 '행정적 작업'에서 벗어나, 국가 토론을 위한 기회, 정기적 정책평가를 위한 도구, 그리고 국제차원의 모범사례 및 조건의 혜택을 누리는 계기가 되는, 보고서의 참된 의미로 돌아가는 중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당사국들은 필요한 경우 보고의무에 관해 유엔으로부터 기술적 지원협력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이 일단 설치 또는 강화되면, 이는 스스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국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가지는 효용성이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절차, 동 이사회의 특별절차에서 나온 요구, 그리고 나중에는 지역 기구들을 포함해,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보고 의무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사국들이 제시하는 정보의 일관성과 국제 인권 조약을 따르는 혜택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감기일과 절차가 훨씬 미리 공고되기 때문에, 조약보고과정에 동참하는 다른 이들은 보다 일찍 이를 준비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조약기구 절차를 공지받고 화상회의와 웹캐스팅을 통해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의 역할이 국가의 정책 및 법제를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약기구뿐만 아니라 당사국에도 소중한 협력자가 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권장할 만한 또 하나의 국가제도는 조약기구의 가장 큰 자산인 위원들에 대한 것이다. 각

당사국에서 조약기구의 지식과 경험에 기여하고 싶은 개인들은 적임의 국가당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후보군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능력위주의 투명한 국가차원의 선발절차는, 잠재적인 후보자나 피지명인을 공표할 수 있는 개방된 공적 공간이 있을 경우,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라는 기준에 맞추어 모든 후보자들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고 최고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추천되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원들은 각 위원회 회기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각 당사국의 핵심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들은 제출 이후 얼마 안가 심의를 받게 되는 당사국들의 보고서에 포함된 정확한 최신 정보에 기초해서 일하게 된다. 조약기구들은 당사국에서의 각 조약의 이행을 심의하는데 진전을 보게 되고, 5년 뒤에는 모든 당사국들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게 될 것이다.

본 과정을 통해 수립된 강력한 조약기구제도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개인 통보 절차를 통해 구제할 것이다. 더 이상 장기적인 지연으로 인해 정의가 거부되는 것을 관용하지 않을 것이며, 조약기구들은 조사결과를 진정한 및 당사국에게 즉시 통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조사결과는 일관성 있고, 모든 인권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며, 국가들이 개인 구제방안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인권 보호까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할 것인데, 이들의 관례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국가 표준을 개발하기가 보다 수월해지게 된다.

고문방지소위원회는 예방 차원에서 구금시설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고문을 초래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이런 혐오스런 현상이 효과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소속 전문가들이 필요한 횟수만큼 당사국을 방문할 수 있다.

유엔 회의관리국은 적절한 자원과 수요를 미리 계획하여, 모든 양질의 문서와 서비스를 제시간에 제공하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문서의 낭비를 줄이거나 보고의 간소화를 비롯한 여러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문서 관련 비용 한 푼 한 푼이 조약 기구 및 그 관련자에게 소중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만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

조약기구회의의 웹캐스팅과 여타 기술 발전을 비롯한 이런 모든 요소들을 통해 조약제도가 유엔의 회의장과 일부 정부부처, 조약기구의 업무를 이해하는 소수 헌신적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부 관심 있는 대학들에서 탈피하여 모든 당사국의 일반대중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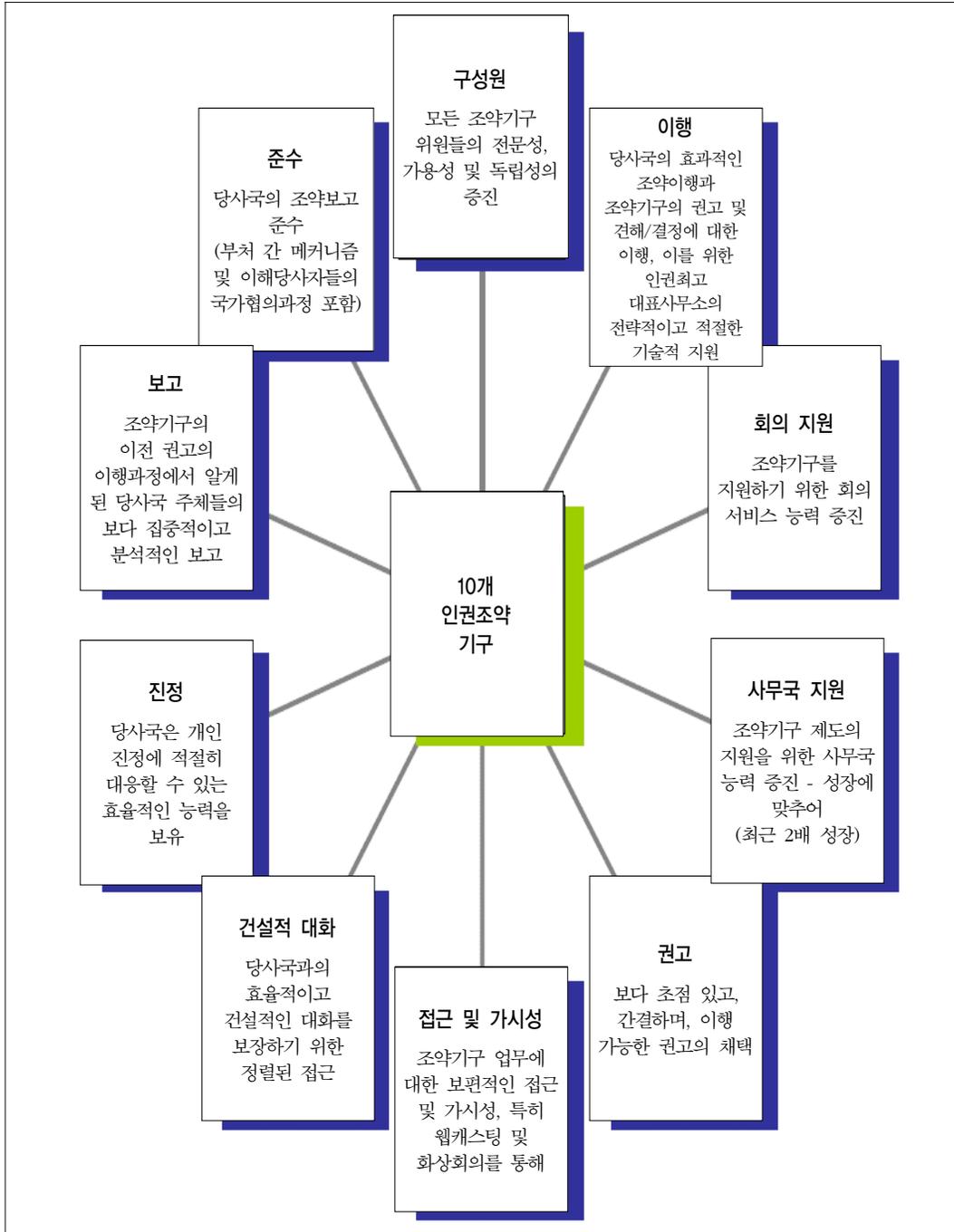
는 국가적 차원에서 현 인권문제에 대처하는 행동을 동원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인권교육을 지지해 주는 값진 투자가 될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이 효과적인 조약 기구제도는 구체적 발전을 인식할 정확한 도구가 되는데, 추가적 발전이 필요한 곳을 파악하며, 요청한 국가들의 인권기록 개선을 위해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탄탄하게 운영되는 조약기구 제도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나 일반화된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인권추세 및 발전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조기경고 및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제안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즉 조약에서 본래 명시된 것처럼, 당사국 주체들이 조약에 따라 계속 보고하고 이행함으로써 현장에 있는 권리보유자들의 이득을 위해 인권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약기구 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블린 I (2009년 11월), 포즈난 (2010년 10월) 및 더블린 II (2011년 11월) 전문가 협의

〈조약기구제도를 위한 비전〉



제2절

배경, 실상 및 수치

조약기구는 사회적 정의와 공평한 발전의 증진에 필수적인 정책 및 법률의 변화를 위해, 대화 및 토론을 할 수 있는 고유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국가가 보다 포괄적인 인권보호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이루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 또한 이들은 국가 상황의 철저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조기경고 도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가 공허한 이상이나 약속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기구들을 만들었다. 조약기구는 보편적인 기준과 그들이 권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 간에 필수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2012년 4월 2일

유엔 사무총장 반 기 문

2.1. 조약기구제도 개관

핵심 국제인권조약⁵⁾들은 당사국이 국가차원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한다. 국가가 비준, 가입 또는 승계⁶⁾를 통해 조약에 구속되기로 동의한 경우, 이는 그 조약이 설정한 권리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의미한다. 각 핵심 국제인권조약은 따라서 그 조약의 이행을 다양한 수단으로 모니터링할 독립적 전문가들의 국제기구를 설립하게 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경우, 조약기구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를 통해 설립한다). 각 위원회⁷⁾는 당사국들이 추천하고 선출한,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되는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특히 인권조약국을 통해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인권조약기구

- 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 6) 이하 '비준'이라는 용어는 당사국이 조약에 구속되기로 동의한 3가지 형태를 포괄한다.
- 7) 자유권위원회(HR Committee), 사회권위원회(CESCR),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고문방지위원회(CAT), 고문방지소위원회(SPT), 아동권리위원회(CRC),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CMW),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강제실종위원회(CED).

를 지원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유엔기구이다. 유엔 제네바사무소 회의관리국은 조약기구나 여타 고객에게 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약기구들은 당사국들이 조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심의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조약기구들은, 고문방지소위원회를 제외하고, 당사국들이 어떻게 조약의 조항들을 국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부분 매 4-5년마다) 제출하는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의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한 개 기구(고문방지소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조약기구는 원칙적으로 당사국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로부터 진정 또는 통보를 접수하고 심의할 수 있는데, 단 이는 당사국이 본 절차를 수락한 경우에 한한다.⁸⁾ 조약기구 중 6개(2개는 아직 발효되지 않음)는 고문방지소위원회를 포함하여 국가를 상대로 조사하거나 방문할 권한을 지닌다.

2.2. 조약기구제도의 실상 및 수치

2004년 이후, 인권조약기구제도는 4개의 신규 조약기구(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고문방지소위원회 및 강제실종위원회)와 3개의 신규 개인진정 절차(장애인권리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으로 규모가 **2배로 확대**되었다. 2000년까지는 단지 3개의 조약 기구가 개인진정 절차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77조 및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될 때는, 모든 조약 기구(고문방지소위원회 제외)가 개인통보를 접수할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인권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의미한다. 새로운 국제인권조약들이 채택된다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수 있다.

개인통보 절차

2000년: 자유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년: 이 절차를 갖춘 9개 조약 기구(자유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중, 3개 조약 기구(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8)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및 사회권위원회는 해당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경우에만 개인통보 심사 권한을 지닌다.

아동권리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및 고문방지소위원회 위원이 늘면서 조약기구 전문가의 총인원이 (2000년 97명, 2010년 초 125명이던 것에 비해) 2012년에 172명이 되었다. 회의시간 역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0년 51주, 2010년 72주, 2012년 74주), 다양한 전달 단계에서 유엔 총회에 여러 차례 회의시간 증가 요청이 있었다.

또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긍정적 영향으로, 국가들은 보다 많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였다. 2000년 시행중이던 6개 핵심 국제인권조약은 927개국의 비준을 기록했다. 2012년에는 총 비준국수는 1,586개국으로 50% 이상 증가했다.⁹⁾ 만약 모든 핵심 국제인권조약 및 관련 선택의정서를 포함하면, 비준국 수는 2,000개국에 이른다(1,953개국, 2012년 5월 8일 기준). 그러나 당사국들이 제출하는 보고서 수의 증가율은 이러한 비준 증가율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소폭 증가한 보고서 제출 수는 상대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보고의무 준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2000년에는 102개(누적 927개 당사국), 2008년에는 117개(1,325개 당사국), 그리고 2011년에는 136개(1,508개 당사국¹⁰⁾)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다.

국제인권조약 비준/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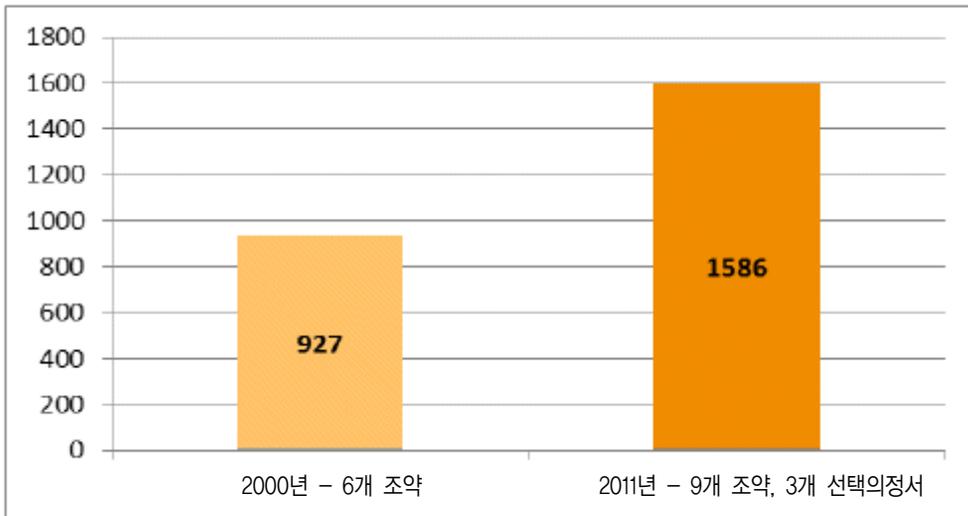
2000년: 6대 핵심 국제인권조약 = 927 비준국

2012년: 9대 핵심 국제인권조약 및 3개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에 대한 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상의 보고 절차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상의 방문 절차) = **1,586** 비준국 (2000년 이후 평균 5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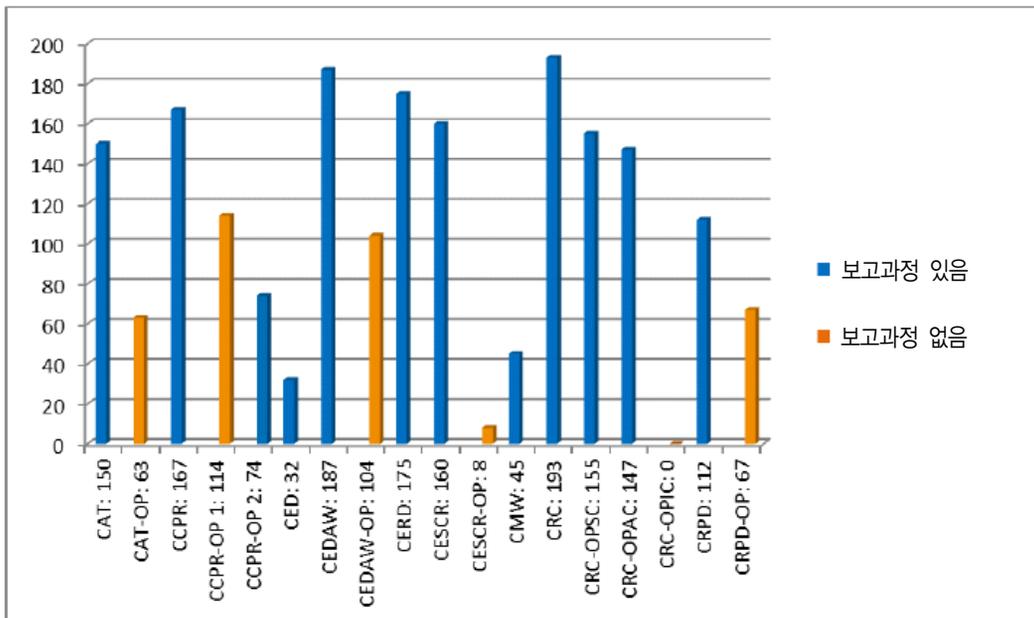
2020년: 모든 국가 비준시 2,123 비준국에 이를 것임.
(9대 핵심 국제인권조약 및 3개 선택의정서)

9) 본 수치는 9대 핵심 국제인권조약 및 3개 선택의정서(2개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의무가 있고,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방문절차)을 포괄한다.

10) 여기에 표시된 당사국 수는 특정한 보고과정을 가진 조약(9개) 및 선택의정서(2개)만을 포함한다.



2012년 5월 현재,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상태는 다음과 같다.



2011-2012년 2년의 회기 말까지, 조약기구는 246개 당사국의 보고서 심의와, 250건 이상의 개인 진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250개 이상의 당사국 보고서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500건 이상의 개인진정이 심의 계류 중일 것이다. 지난 2000년에는 당사국 보고서 200개와 개인통보 214건이 심의 계류 중이었다.

제출된 당사국 보고서

2000년: 102개 보고서
2011년: 136개 보고서

채택된 최종견해 숫자

2000년: 68개 최종견해
2011년: 118개 최종견해

현 기준 수준에서, 모든 당사국이 규정에 있는 대로의 기간에 맞춰 보고할 경우, 조약 기구는 평균적으로 연간 320개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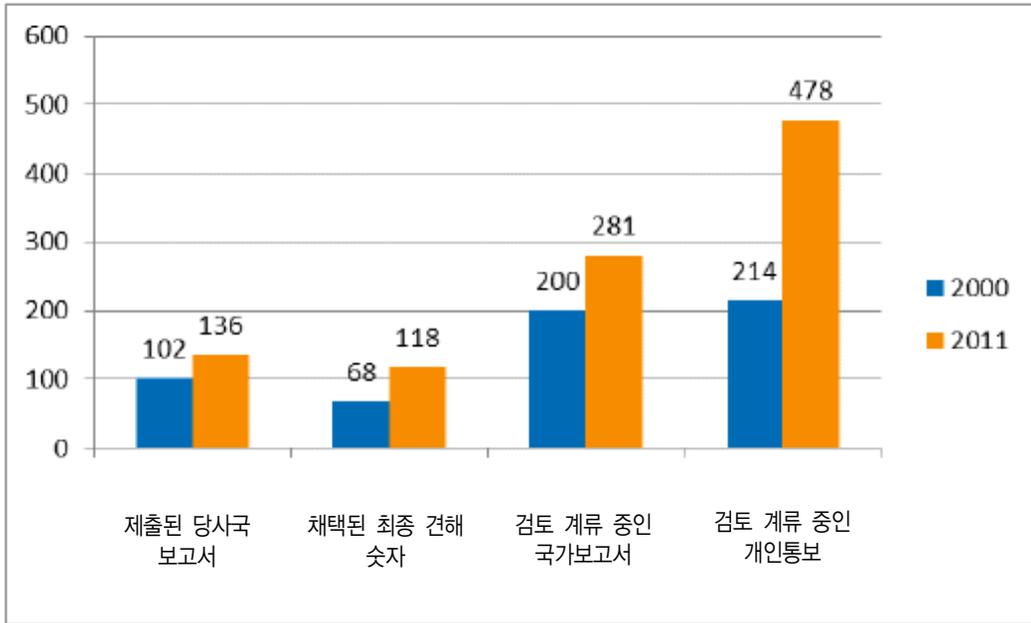
또한, 조약기구는 연간 평균 120건의 개인통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게 된다.

검토 계류 중인 국가보고서

2000년: 약 200개
2012년: 281개 (2012년 3월 21일 기준)
2012년 평균 대기 기간: 2-4년(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경우 7년)

검토 계류 중인 개인통보

2000년: 214건
2012년: 478건(2012년 2월 1일 기준)
사안별 등록에서 최종결정까지 평균 기간:
자유권위원회: 3.5년
고문방지위원회: 2.5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5년



2.3. 조약기구제도의 당면 과제

2.3.1. 보고의무 불이행

정기적 보고는 핵심적인 법적 의무이며 조약제도에 대한 개인의 시기적절한 접근성은 개인 또는 집단 권리보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건이다.

가장 오래된 6개 조약(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아동권리협약)은 각각 최소 150개 당사국을 두고 있다. 새로운 조약의 비준 건수는 지난 10년 동안 59%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동시에, 여러 개의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에 따라 가중된 보고 및 이행의 의무를 수행할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조약상의 보고

9개의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 및 2개의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에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이 보고절차의 각 주기는 아래 표에 명시되어 있다.

조약	최초보고서 (비준후 기한)	정기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1년 이내	2년 마다 ¹¹⁾
사회권규약	2년 이내	5년 마다 ¹²⁾
자유권규약	1년 이내	4년 마다 ¹³⁾
여성차별철폐협약	1년 이내	4년 마다
고문방지협약	1년 이내	4년 마다
아동권리협약	2년 이내	5년 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년 이내	5년 마다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년 이내	5년 마다, 또는 차기 아동권리협약 보고서와 함께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년 이내	5년 마다, 또는 차기 아동권리협약 보고서와 함께
장애인권리협약	2년 이내	4년 마다
강제실종협약	2년 이내	강제실종위원회 요청 시 (제29조 제4항)

9개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평균 보고 주기는 4.5년이다. 한 국가가 9개 핵심조약 및 보고절차가 있는 2개의 선택의정서를 모두 비준할 경우, 10년 기간 내에 약 20개의 보고서를 조약기구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연간 평균 2개 수준이다. 이러한 보고는 국가적 과정을 포함하고, 이후 제네바(또는 뉴욕)에서 당사국과 해당 조약기구 간에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회의가 뒤따르게 된다. 모든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이 모든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면 연간 평균 2번의 대화에 참여하게 된다.

실제로는, 일부 최초보고서들은 조약에 규정된 대로, 혹은 조약이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 위원

11) 조약에는 2년 주기로 명시되어 있으면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은 2개 보고서를 한 개로 통합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사실상 4년 주기).

12) 규약 제17조에서는 보고 주기를 설정하지 않고, 보고 계획을 세울 권한을 경제사회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13) 규약 제40조에서는 언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결정권을 자유권위원회에게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4년마다 요구되고 있다.

회가 설정한 주기에 따라 적시에 제출되지만, 모든 조약기구들은 정기 보고서의 제출 속도를 고려하여 조약에서 설정한 기한을 조정해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 각 조약하의 주기성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요구받는 핵심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은 별로 없다.¹⁴⁾ 아래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0년과 2011년도에 제출되어야 할 보고서 가운데 16%만이 조약 또는 조약기구에 의해 설정된 기한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출되었다. 제출기한 초과 이후 12개월이라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계산해도, 여전히 보고서의 3분의 1만이 기한 내에 제출되었다.

2010				2011			
조약기구	2010년 접수 보고서	적시에 제출한 2010년 보고서	보고서 적시 제출율	조약기구	2011년 접수 보고서	적시에 제출한 2011년 보고서	보고서 적시 제출율
CAT*	16	2	13%	CAT*	13	4	31%
HRCtee	10	2	20%	HRCtee	13	2	15%
CEDAW	28	3	11%	CEDAW	27	4	15%
CERD	18	2	11%	CERD	15	1	7%
CESCR	17	5	29%	CESCR	15	2	13%
CMW	4	0	0%	CMW	5	0	0%
CRC	20	2	10%	CRC	14	2	14%
CRC-OPSC	8	1	13%	CRC-OPSC	8	0	0%
CRC-OPAC	11	2	18%	CRC-OPAC	10	1	10%
CRPD	9	3	33%	CRPD	17	6	35%
총계	141	22	16%	총계	137	22	16%
* 적시에 제출된 고문방지위원회 보고서는 보고 전 현안목록 (LOIPR)라는 신규 선택절차를 채택했다.				* 적시에 제출된 고문방지위원회 보고서는 보고 전 현안목록 (LOIPR)라는 신규 선택절차를 채택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보고의무 불이행율이 지속되면서, 조약기구들은 보고서가 들어오는 대로 국가별 임시 업무일정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보고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한 국가는 덜 성실하게**

14)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일은 국가가 비준한 관련 조약 또는 해당 위원회의 절차 규정에 명시된 주기에 의해 결정된다.

준수한 국가보다 보다 빈번하게 해당 조약기구로부터 심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불이행은 국가 간의 차별적인 대우를 초래하게 된다.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자유권규약과 같은 조약과 관련해서는, 약 20%의 당사국이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및 (보고 의무가 있는) 2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경우, 그 수치는 훨씬 더 높다. 다시 말하면, 상당한 비율의 조약 비준이 보고서 또는 심의로 전혀 이어지지 못했다. 동시에, 가장 널리 비준된 조약-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들은 각각 193개 및 187개의 해당 당사국으로부터 거의 모든 최초 보고서를 받는데 성공했다.



국가들과의 시온 협의 (2011년 5월)

당사국의 실제 보고

2012년 4월 기준으로, 626건의 국가보고서가 기한을 경과했다. 비준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새로운 조약기구들이 계속 설립된다면, 이러한 수치는 증가할 것이다.

조약 (당사국 수)	보고서 제출					
	기한을 경과한 최초 보고서	기한을 경과한 최초 보고서율	기한을 경과한 정기 보고서	기한을 경과한 정기 보고서율	기한을 경과한 총 보고서	기한을 경과한 총 보고서율
고문방지협약 (150)	29	19%	39	26%	68	45%
자유권규약 (167)	26	16%	58	35%	84	50%
강제실종협약 (32)	0	0%	0	0%	0	0%
여성차별철폐협약 (187)	10	5%	30	16%	40	21%
인종차별철폐협약 (175)	13	7%	74	42%	87	50%
사회권규약 (160)	35	22%	41	26%	76	48%
이주노동자권리협약 (45)	21	47%	8	18%	29	64%
아동권리협약 (193)	2	1%	61	32%	64	33%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156)	76	49%	0	0%	76	49%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147)	52	36%	0	0%	52	36%
장애인권리협약 (112)	50	46%	0	0%	50	46%
총계	315		311		626	

2.3.2. 당사국 보고서 및 개인진정 심의의 적체

위에서 설명한 정도의 불이행율에도 불구하고, 조약기구들은 누적 281건의 국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지체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2012년 3월 21일 기준). 그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듯이, 보고서 준비에 시간을 투자한 당사국들은 보고서 제출 이후 건설적 대화를 하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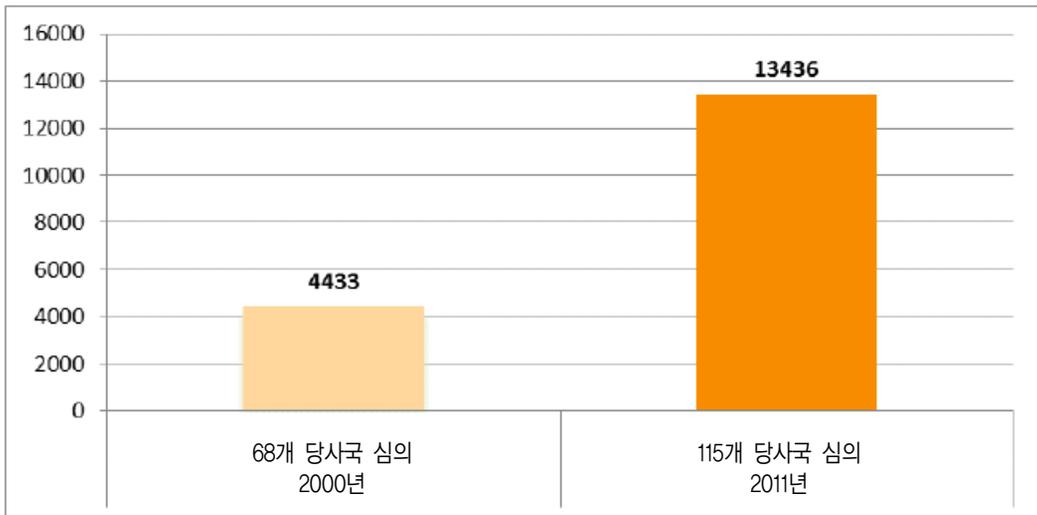
개인통보를 심의하는 조약기구의 경우, 청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해당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2011년 기준, 평균 480건 개인통보 계류). 예를 들어 자유권위원회의 경우 333건이 계류 중이고,

건별 등록에서 최종 결정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이 약 3.5년이다. 고문방지위원회의 경우, 115건이 계류 중인데, 지체 기간은 평균 2.5년이다. 이는 사안이 결정되기까지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청원인에게, 그리고 임시 조치들을 장기간 이행하라는 위원회의 요청을 자주 직면하는 당사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원회가 개인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수차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이 위원회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진정에 대한 심의가 더욱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언급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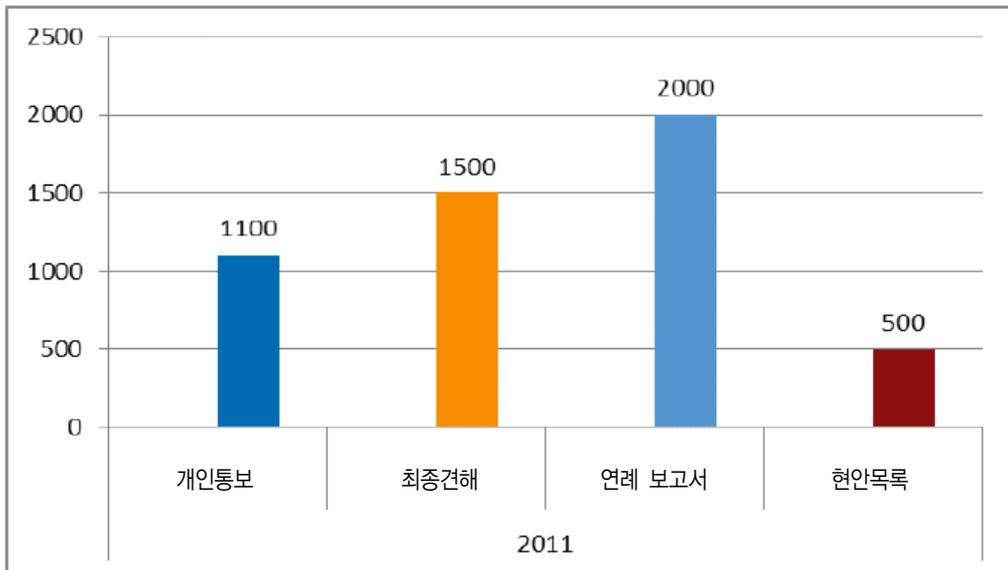
2.3.3. 조약기구 문서

본 제도의 성장은 문서량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 10년 동안 문서량이 거의 3배나 증가했다. 2011년, 이는 조약 기구의 운영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항목이었다. 조약기구 문서의 대부분은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이다(총 문서량의 3분의 2). 다른 문서는 조약기구가 발행한 것으로, 유엔총회가 정한 대로 엄격한 페이지 제한을 준수한다(본 사항에 관해서는, 엄격한 페이지 제한 준수에 관한 4.2.3. 참조).

〈당사국이 제출한 문서 페이지 수의 증가(번역 된 것)〉



〈2011년 10개 조약기구가 생산한 문서 페이지 수 (번역된 것)〉



2.3.4. 역량의 격차

보고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인권조약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보고서의 수도 증가되었다. 유엔 업무 중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의 보고 또는 이행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환경, 군비축소, 노동권, 지속적 개발 및 공중보건 등, 대부분의 국가가 지역 차원에서 보고의무가 확대되는 것에 추가해서 그 속도를 맞추기에 심히 난관을 겪게 된다. 이는 최빈국(LDC), 내륙개발도상국(LLDC), 도서개발도상국(SIDS), 그리고 자연재해나 무력 갈등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국가보고서의 준비는 모든 영역의 유엔 업무와 절차에 관련되어 있어 상당한 자원과 능력이 요구된다. 인권조약의 경우, 모든 작성 메커니즘에서 조약을 이해하고 조약기구가 보고서를 처리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임시 메커니즘에 의존하여 보고서를 준비하는 국가들은 새로운 작성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보고서 제출부터 조약기구의 심의까지 장기간이 지연될 경우 역량의 격차는 더 커진다. 이 경우, 국가들은 준비된 보고서에 관해 대화를 할 때에는 일부 또는 대부분의 보고서 작성자들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알게 되며, 이로 인해 조직적 기억력이 허약해지고, 교체된 인력의 역량을 또 다시 키워내야 한다. 당사국

의 대다수가 늦게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약기구에 제출할 다음 보고서를 준비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역량 구축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된다. 정도는 덜 하지만, 개인 통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교체도 심의적격성 및 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약기구의 견해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맥락에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약보고와 때로는 개인통보절차의 분야에서 역량 강화를 지원해달라는 정부(그리고 다른 당사자들, 의회, 국가인권기구, 사법부 및 시민사회)의 요청에 정기적으로 응한다. 그러나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공하는 기술적 협력은 보고서의 제출이 늦은 모든 국가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직적 기억력과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상설 국가 작성 메커니즘이 없을 경우, 기술적 협력활동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지 못하게 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협력 업무를 합리화하고 강화해서 국가보고 구조를 합리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원을 요청하는 각 당사국에 계속 임시 훈련을 제공하는 대신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2.3.5. 일관성

조약기구제도의 급격한 확장은 일관성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9개 핵심 인권조약은 각각의 자체적 범위가 있지만, 이들 일부 또는 전부는 유사한 조항이 있고, 동일한 문제를 상이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차별금지, 국내 법제와 인권조약의 국내 적용, 정책, 제도 및 국가인권기구, 그리고 성평등 등이다. 당사국은 서로 다른 조약기구에 제출할 다양한 보고서에 포함된 공통적인 의제들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입해 있는 모든 조약기구에 일관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조약기구들 또한 조약 이행에 관한 제언과 안내를 당사국에 일관되게 제공하기 위해 공통된 의제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관성은 모든 조약기구의 개인통보 절차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2.3.6.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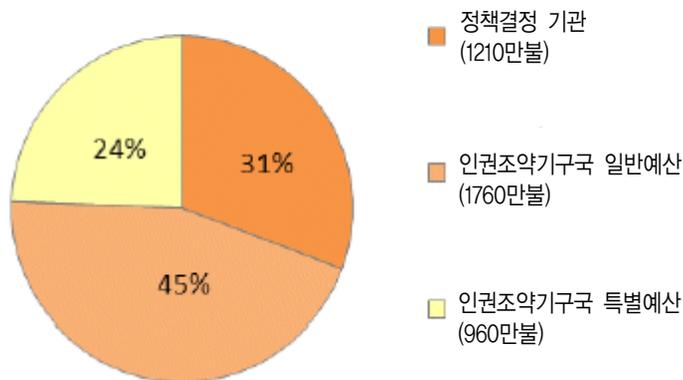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난 2년 반에 걸친 논의에서 강조되었듯이, 이러한 제도를 위한 자원이 조약기구의 확대 및 증가하는 업무량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조약기구에 제공하는 지원은 현재 2가지 출처에서 나온다. **유엔 일반예산**

(2010년-2011년도 2970만불)과 **자발적 기여금**(2010년-2011년도 960만불)이다. 이에 따라, 2010년-2011년도 일반예산은 총 3930만불에 달하는 자원의 76%를 부담했다. 일반예산 배정 가운데 약 1210만불은 조약기구 회기 참석을 위한 **위원들의 여행경비**로 사용되어, 인권 예산 중 “정책결정 기관” 항목으로 잡혔고, 1760만불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소요되어 주로 조약기구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었다. 또한, 960만불은 자발적 기여금에서 충당되었는데, 이는 조약기구에 제공되는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2010년-2011년의 2년간 **회의 서비스** 비용은 약 7200만불에 해당한다.

2010-2011



전문가 여행경비 (정책결정기관)

위원회 위원들은 업무를 위한 급여를 받지 않지만, 유엔은 그들이 위원회 회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여행**과 체재 경비를 지원한다. 이는 조약기구(“정책결정기관”)의 전체 경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00년 74명이었던 전문가가 2011년 172명의 전문가로 증가되면서, 예산은 2000년-2001년 2년간 430만불에서 2010년-2011년 2년간 1210만불로 증가했다. 이 수치는 강제실종위원회의 설립과 고문방지소위원회 및 장애인권리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 위원 수의 확대에 의해 2012년-2013년에 더욱 증가되었다. 반면, 실제 비용은 승인된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했다.



국가들과의 제네바회의 (2012년 2월)

일반예산 - 전문가 여행경비							
(USD 1,000) ¹⁵⁾	2000~01	2002~03	2004~05	2006~07	2008~09	2011~11*	2012~13
자유권위원회	1,224	1,372	1,370	1,363	1,497	1,778	1,865
사회권위원회	973	748	741	775	808	1,153	920
아동권리위원회	1,123	787	1,627	1,702	1,555	1,885	1,949
고문방지위원회	324	342	464	482	520	668	635
인종차별철폐위원회	629	665	699	764	813	1,327	1,204
의장단 회의	51	53	56	55	118	112	119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2004년 이후 및 위원수 10명에서 14명으로 증가)	-	-	180	183	195	511	565
고문방지소위원회 (2007년 이후 및 위원수 10명에서 25명으로 증가)	-	-	-	-	976	1,398	2,037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6년 이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	-	-	-	1,231	1,737	2,344	2,169
장애인권리위원회 (2009년 이후 및 위원수 12명에서 18명으로 증가)	-	-	-	-	584	809	1,586
강제실종위원회 (2011년 이후)						88	709
총액	4,324	3,967	5,136	6,555	8,803	12,073	13,759

(*) 수정 책정

15) 이 수치는 다음의 2년 동안 해당되는 사업예산서에 책정된 2년 예산이다. A/56/6 (sect. 22); A/58/6 (sect. 24), suppl. information; A/60/6 (section, 23), suppl. information; A/62/6 (sect. 23), suppl. information; A/64/6 (sect. 23), suppl. information; A/66/6 (sect. 24), suppl. information.

28_ 유엔 인권조약기구제도 강화 방안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직원 지원 (세부사업 2 및 자발적 기여금)

2000년 이후, 세부사업 2 하의 조약기구 지원용 정규예산 할당금은 인권조약국에 통합되어 직원 비용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2년간 610만불에서 2년간 1760만불로 증가했다.

인권조약국은 61명의 전문직과 22명의 일반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예산(RB post)에서 지원 받는 40명의 전문직(D-1 1명, P-5 4명, P-4 15명, P-3 19명, P-2 5명)과 16명의 일반직 직원, 그리고 자발적 기여금(XB post)에서 지원받는 17명의 전문직(P-4 1명, P-3 15명, P-2 1명)과 6명의 일반직을 포함한다.¹⁶⁾

2010년 실행한 업무량 분석에서 조약기구 회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권담당관의 수(일반예산과 특별예산 직위)와 실제 인권담당관의 수가 30%의 격차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이유는 조약기구들이 애초부터 완전하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몇 가지 경우에만 이와 같은 상황이 재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수의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보고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 현재 및 향후 업무량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조약기구에 할당되는 자원은, 조약기구의 기능이 수입 받은 핵심활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맡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하며 유엔의 일반예산에서 나와야 한다.

현재 유엔과 많은 국가들이 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국제인권법하의 국가책임이라는 근본적 원칙 또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아니다. 지난 수년간 조약기구제도의 지속적인 자원 부족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면 본 제도의 미래에 위협이 된다. 84%에 이르는 보고 불이행을 묵과해야만 조약 메커니즘이 기능을 하게 된다면, 이는 중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2.4. 조약기구강화를 위한 과거의 시도

조약기구제도의 강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간의 주요 이정표 중에는 독립적 전문가 필립 알스톤(Philip Alston)의 1997년에 발간된 유엔 인권조약제도의 장기적인 유효성 개선에 관한 최

16) 인도주의 신탁기금(Humanitarian Trust Fund) 해당 부서 근무 직원 제외.

종 보고서¹⁷⁾, 2002년 유엔의 강화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 더 많은 개혁을 위한 의제. 그리고 2003년과 2006년에 개최한 인권조약기구 개혁에 관한 두 차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Malbun I 및 II 회의)이다.

전 인권최고대표 루이스 아머(Louise Arbour)는 2005년도 사업계획서에서 제도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상설 조약기구를 위한 제안에 관한 계획서가 상세히 작성되었으며, 그 제안에 기초해서 개혁을 위한 여러 안이 연구되었다.¹⁸⁾ 통합 상설 조약기구에 대한 제안은 이미 그 당시 제도가 당면하고 있었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는 노후한 제도를 늘어난 현대적 요구에 적용시키는 제안을 통해, 국가차원에서의 메커니즘의 효율성과 권리보유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본 것이다.

통합 상설 조약기구에 대한 제안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조약기구 위원들이, 주로 2006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위원회 간 회의와 의장단 회의를 통해, 조약기구간의 업무방식과 절차를 조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촉진했다.



시온 국가간 협의 (2011년 5월)

17) A/44/668, A/CONF.157//PC/62/Add.11/Rev.1, E/CN.4/1997/74

18) HRI/MC/2006/2, 2006년 3월 22일

2.5. 조약기구강화를 위한 현재의 과정

본인이 시작한 조약기구 강화 과정은 조약기구 제도의 가시성, 접근성 및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설립 당시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조화롭고,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조약기구의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적자원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강화과정은 전 세계의 다양한 당사자들, 즉 조약기구 전문가, 국가,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및 유엔기구들 간에 이루어졌던 20여회의 자문회의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 자문회의의 결과와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문건은 새롭고 다양한 제안 목록으로 취합되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웹사이트에서 조약기구 강화에 대한 별도의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조약기구강화에 관한 이해당사자 간 주요 자문회의 (2009년 11월 ~ 2012년 4월)

공식회의는 인권조약기구가 2년마다 개최하는 위원회 간 회의 및 연례 의장단 회의.

조약기구 내부 및 조약기구 간 자문회의, 여기에는 제네바에서 동시에 회의를 개최하는 조약기구들 간의 아베니에(Avenièes) 및 보세이(Bossey)에서의 합동자문회의(5회의 토요일 리트리트)와 조약기구 구성원을 위한 청원에 관한 전문가 회의(2011년 10월), 그리고 2011년 및 2012년(현재까지) 개최된 거의 모든 조약기구 회의에서의 브리핑.

비공식회의 및 자문회의(모두 결과 문서를 포함하고 있음)

- 노팅엄 대학이 조직한 조약기구 위원들을 위한 더블린 자문회의(2009년 11월)
- 모로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한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마라케시 자문회의(2010년 6월)
- 아담 마키비츠 대학이 조직한 조약기구 위원들을 위한 포즈난 자문회의(2010년 10월)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한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서울 자문회의(2011년 4월)
- Kurt Böch 대학교 국제아동권리연구소(IIRC/IUKB)가 조직한 시온 1차 당사국 비공식 기술자문회의(2011년 5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모든 조약기구 의장이 공동 조직)
- 프레토리아 대학교가 조직한 프레토리아 시민사회단체 자문회의(2011년 6월)
- 브리스톨 대학교가 조직한 최종견해 이행에 대한 브리스톨 세미나(2011년 9월)
- 교사교육대학교(UTE) 인권교육센터가 조직한 루체른 학술 자문회의(2011년 10월)
- 노팅엄 대학교가 조직한 더블린 제2차 자문회의(2011년 11월)
- 마스트리트 대학교가 조직한 마스트리트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및 조약기구 세미나(2011년 11월)
- 제네바 및 뉴욕 소재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조직한 유엔 조직 및 전문가 자문회의(2011년 11월)
-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조직한 제네바 당사국 제2차 자문회의(2012년 2월 7일-8일)
-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조직한 뉴욕 당사국 제3차 자문회의(2012년 4월 2일-3일)

인권최고대표의 요청에 따른 이해 당사자의 서면 제출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효과적인 기능강화에 관한 정부 간 과정 문제에 대한 NGO 공동 제출서(2012년 4월)
더블린 성명서에 대한 NGO의 대응(2010년 11월)
조약기구 개인통보절차 강화에 관한 NGO 성명서

조약기구강화절차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개인 서면 제출

당사국들의 제출물 (36)
조약기구들의 제출물 (1)
조약기구 위원들의 제출물 (8)
학계 제출물 (3)
시민사회단체 제출물 (10+공동제출 3)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전용 웹사이트는 2010년 초반에 개설되었다.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TD/index.htm>)



Avenières 전문가 워크숍 (2010년 10월~2011년 5월), 더블린 II (2011년 11월),
국가와의 제네바 자문회의 (2012년 2월)

3.1. 조약기구가 취한 조치

지난 2009년 강화를 위한 과정을 개시한 이후, 인권조약기구들은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계속해왔다. 조약기구 전문가들이 주어진 시간과 자원의 제약 속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책임을 가지고 활동했다. 현재까지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3.1.1. 건설적 대화에 할당된 시간 및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

지난 10년간, 회의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모든 기구(2012년 11월 기준으로 사회권위원회가 시험적으로 참가함)들은 정기 보고서를 위한 국가 심의 회의를 3번에서 2번으로(9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다. 이 조치는 각 조약기구별로 매년 심의 받는 당사국 수를 50%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고서심의 적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로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경우 유엔총회 결의안 63/244를 통해 추가 회의시간을 승인받아, 2010년 세 차례의 회기 중에 병렬적으로 2개의 분과로 나뉘어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보고서 심의가 2009년 30건에서 2010년 52건으로 증가하였다.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보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2010년 말까지 80개의 보고서가 적체된 것은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¹⁹⁾ 이는 그 특정한 위원회에서의 적체되는 정도와 임시 해결책의 한계를 나타낸다.

또한, 조약기구들은 우수사례가 반영된 규정과 절차를 채택한 새 조약기구들과 자기들의 절차를 조화시켰다. 2007년 고문방지위원회가 설립한 관행을 따라, 2개의 추가 조약기구들(자유권위원회와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이 선택적 보고과정으로 『보고 전 현안목록OIPR』 과정을 채택했다.

19) A/65/317 인권조약기구의 추가 회의시간 사용 평가 중 사무총장 작성 문서 참조.

3.1.2. 의장들의 역할

2011년 6월, 모든 조약기구의 의장들은 연례회의에서 업무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조약기구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비용대비 보다 효율적이고 조화된 업무방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휴회기간 동안 공통된 활동을 보다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의장들이 선봉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의장들은 조약기구 제도에 공통으로 존재하며 각 위원회가 이전에 토의했었던 업무방식 및 절차상 문제에 대한 조치의 채택을 권고했다. 의장들은 또한, 위원회가 나중에 반대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조치가 모든 조약기구에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²⁰⁾ 이는 지속적인 시너지 및 효율성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다.

3.1.3. 통역사용 및 문서의 축소

또한,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조약기구는 운영비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상당한 회의 서비스 권한을 지난 수년 동안 사실상 포기해왔다.

- 조약기구는 공식 회의시간 이외에도 통역 없이 일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토의 시나 일반논평 초안을 작성할 때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아동권리위원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점차 영어로 진행되는 회의시간을 늘리거나, 각 회기에 소규모 실무그룹을 영어로 진행한다(이는 일부 위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조약기구 전문가들은 공식 회의시간 외에 시민사회가 주관하는 브리핑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이는 정규 업무시간 외에 추가로 1시간 이상을 더 소요하는 것이다.
- 아동권리위원회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실행했던 후속조치 보고과정을 중단했다(이는 협약 제4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이었다). 이 결정²¹⁾은 전적으로 회의시간 및 다른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위원회가 적합하게 절차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 일부 표준 공식문서들, 즉 조약기구가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비준 현황 보고서, 또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국제협력 권고안 표 등은 작성이 중단되었거나 영어로만 준비되었다.
- 핵심 데이터, 법률 개요나 다른 기본 정보 등을 포함해서 국가보고서의 상당한 분량은 당사국과의 합의에 따라 부록으로 첨부되어 별도 번역되지 않고 있다.
- 아동권리위원회 회기 중 실무 문서는 번역되지 않는다.

20) A/66/175 제21항

21) 아동권리위원회/C/27/Rev.11 참조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회의록을 영어로만 반기로 동의했으며,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의록에 대한 번역문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 위원회들은 비공개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동의했다(주로 개인통보와 관련된 일부 예외사항은 제외).
- 사무국의 배경문건의 수는 엄격히 제한되며 거의 번역되지 않는다. 경제사회이사회가 승인하여 사회권위원회에 제공되는 NGO 발언문도 더 이상 번역되지 않는다.

3.2.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조치

유엔총회 결의안 62/236(제101항)에 따라,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내부감사실의 평가를 받았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조약국은 스스로의 요청으로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전체 평가의 일부분으로 조사받았다. 평가 및 평가보고서(2009년 7월)에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강점 및 보완이 필요한 분야가 강조되었으며, 이는 조약기구들의 업무, 투입물 및 산출물에 대한 일관된 방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무소 전반에 걸친 업무과정의 시너지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인권조약국에 중점적으로 해당되는 권고안은 인권조약국과 다른 국, 특히 인권최고대표 지역사무소 간 전략적 연결 및 작업 흐름의 원활한 유지, 조약기구들의 업무방식과 조약기구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지원의 조화, 인권조약국 내의 작업흐름 개선, 그리고 인적자원의 필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FOTCD 사무관들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국가기반의 업무를 조약기구들의 업무와 연결시켜주기 위해 필수적이다.

3.2.1. 사무국 업무방식의 조화 모색

업무 절차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고, 사무국의 업무 방식(예를 들면, 모든 조약기구 전문가에게 보내는 행정문서, 사무국과 조약기구 전문가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 간 소통을 위한 표준화된 통신 서식, 조약기구 간 업무 조화 및 우수사례를 유지하기 위해 조약기구 사무처간 체계화된 조정 및 정보 공유, 개선된 문서분류 및 자료보관, 부서 내 신규직원의 업무인계를 위한 패키지 개발, 신규 조약기구 전문가를 위한 업무인계 패키지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개발)을 점차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지역사무소를 포함한 사무처 전반에 걸친 업무흐름을 향상시켰다(아래 계획 및 사업 참조).

3.2.2.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사업 및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서의 조약기구 권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2010-2014 운영계획의 6대 우선 주제 중 하나는 “인권 메커니즘 강화 및 국제인권법의 점진적 발전”에 관한 것으로, 이는 조약기구들을 포함한 인권 메커니즘의 업무를 보다 폭넓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업무계획에 통합시키기 위한 것이다. 2011년 10월 개최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연례 기획주간 때 일정의 한 부분은 차년도(2012) 인권 메커니즘 지원을 위해 할당했다. 그 세션동안 참가자들은 여러 주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인권 메커니즘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현장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토의했다. 예를 들면 자기 출신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조약기구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해서 회원국이 요청한 역량강화 활동에 대한 리소스 퍼슨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한 보다 고품질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현장과 사무소의 다른 부서들이 업무 메커니즘을 어떻게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지를 조사했다. 메커니즘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었고, 관련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합동 보고 일정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본인은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것인데, 국가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도 인권 메커니즘과 관련된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고위 관리직 직원들은 조약기구들에 대한 특정 지원을 위해, 수회의 내부 수련회를 개최한 후, 2011년 9월 “인권조약기구에의 지원, 그로부터의 혜택 및 시너지의 향상 방안”에 관한 부서 간 합의에 도달했다. 본 합의에 대한 조치는 점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는 사업전략, 지식관리 및 정보공유 영역에서의 협력 증진, 그리고 내부 및 외부 역량강화를 포함한다.

3.2.3. 조약기구제도의 접촉활동 및 가시성 확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역량이나 자원의 추가배정 없이, 여러 인권 메커니즘의 결과물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조약기구 전문가,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수임자, 국가인권기구, 그리고 유엔기구들과의 접촉활동도 상당히 높였다. 세계인권색인(Universal Human Rights Index)은 이런 점에서 접촉활동을 위한 중요한 도구다. 주제 또는 국가별로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국가별 심의에서 나오는 모든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안을 취합해 놓았다.

세계 인권 색인 (The Universal Human Rights Index)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결과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결과물들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약기구, 특별절차 및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권고들을 취합한 전자 도구인 세계 인권 색인을 관리하고 있다(<http://uhri.ohchr.org/en>). 이는 최근 업그레이드된 웹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이제 모든 유엔 공식어로 작성되어있다. 이 색인은 사용자들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들을 분석 및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들이 권고안 이행을 위해 상호조정 할 수 있게 하고, 후속업무를 촉진하며, 결론과 권고를 사용하는 이들이 이를 쉽게 하도록 도와준다.

색인 사용자들은 어떤 개별적 상황에서도 인권의 이행정도에 관한 유엔기구와 메커니즘들의 평가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색인은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거나 스크린리더 같은 보조 장치 사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분기별 소식지를 출판하여, 모든 조약기구 전문가, 여타 다른 수임자, 국가, 국가인권기구, 유엔 파트너 그리고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사무소는 또한 교육자료(조약기구에 관한 DVD와 여러 개의 사실 설명 자료들)를 업데이트하고 조약기구 전문가들과 매주 업데이트를 공유하여 각 위원회가 다른 9개 위원회들의 업무 경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은 이러한 도구들이 조약기구들의 일반예산에서 운영되지 않지만, 모두가 염원하는 효율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지구촌의 잠재적 독자들에게 적합하게끔, 전통적인 방식과 소셜 미디어와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내용을 거르고 맞추는 전문능력의 부족으로, 가시성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독자들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조약기구들이 일반 대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조약기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의 일반 대중에게는 대체로 알려지지 있지 않다.

3.2.4. 기술 협력

국내에서의 효과적인 권고안 이행을 위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일상적 업무를 통해서 그리고 적합한 경우 국가에의 지원을 통해, 국가공무원 및 시민사회를 위해, 그리고 종종 여타 조직과 협력하여, 최종견해와 개인통보에 대한 인용결정의 권고 후 후속조치 관련 인권 훈련과 활동을 조직하고 이에 참여하고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특히 현장에서, 조약기구 보고를 위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지원하면서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는 훈련자료를 대상에 맞추는 일과 전문인력을 직원이나 위원회에서 보내는 것을 포함한다.

3.2.5. 조약기구강화 과정

마지막으로, 조약기구의 업무수행의 향상에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중요하게 기여한 것은 본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다. 사실, 2009년 시작된 조약기구 강화과정의 개념화 및 이행을 위한 모든 업무부담은 사무소의 일상적인 정규업무를 초과하여 추가로 진행되었다. 즉 10개 조약기구가 74주에 걸쳐 정기회기를 개최하면서 120개 국가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일상적 기능을 사무소가 정규업무로 지원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조약국의 책임 하에 있는 개인진정, 국가방문, 그리고 고문과 노예제 방지를 위해 설립된 두 개의 기금에 대한 지원업무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조약기구강화를 위한 시도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사무소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인권조약국 내에 조화, 접촉활동, 역량강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였다. 국가와 조약기구 모두는 조약기구제도의 기능과 향후 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기술적으로 확실하고 비용적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세심한 분석,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유가 있어야 한다.

3.3. 각국이 취한 조치

지난 수년간 당사국들은 조약기구가 임시방편적으로 회의시간을 추가로 요청하는 데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사무총장은 2010년 8월 “인권조약기구의 회의시간 추가 사용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A/65/317)를 작성했다. 이후 유엔총회는 결의안 65/200과 65/204를 통해 “예산상의 제약을 인지하고 각 조약기구의 상이한 부담을 고려하면서, 조약기구의 효과성을 개선하고 그 업무량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 업무방식의 효율성 및 필요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 인권조약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맞춤형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

2009년 이후 유엔총회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및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추가 회의시간 요청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등 조약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사무총장은 2011년 9월 66/344 보고서를 통해 조약기구 제도의 효과성, 조화성 그리고 개혁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유엔총회에 답변했다. 이는 조약기구의 추가 회의시간 요청이 그때그때 임시로 이루어지는 듯이 보이는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제안으로 (1) 현재의 보고서적체 문제의 해결

을 위한 제안서, (2) 국가보고서의 심의를 위해 설립된 조약별 보고서 주기에 따른 종합적 보고 일정의 확립에 관한 것이다.

“국제인권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에 관한 인권이사회 결의안 9/8에서, 인권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조약기구제도의 효과성 향상, 조화성 실현 그리고 개혁을 위한 권고안 등이 포함된 결의안의 이행, 그리고 이행시 문제점에 대한 연례 조치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청했다(최종보고서는 A/HRC/19/28 참고). 유엔총회는 또한 연례 의장단회의 보고서의 요청을 통해 조약기구들 간 진척사항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최종보고서는 A/66/175 참고).

2011년, 국가들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²²⁾, 아동권리위원회²³⁾와 규약들²⁴⁾에 관한 이전의 결의내용을 검토해서 모든 조약기구의 의장들이 총회 제3위원회와 교류하도록 변경하였다(이는 이전에 없던 사항이었다).

2012년 2월 23일, 유엔총회는 총회 의장에게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효과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하면서 포괄적인 협상을 실행할 정부 간 절차를 아무런 제한 없이 진행할 것과,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2명의 공동책임자(co-facilitator)를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 66/254를 채택했다. 이러한 제한 없는 정부 간 절차는, 사무총장 보고서와 본인의 종합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을 비롯하여,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효율적 기능을 강화 및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제안서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2년 6월 이전까지 본인의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유엔총회 의장 활동 - 뉴욕 당사국 간 협의 (2012년 4월), 인권조약과 실무회의 (2011년 3월), 회의 중인 한 위원회 모습

22) GA RES 66/131

23) GA RES 66/141

24) GA RES 66/148

제4절

2009년 11월 이후의 자문과정을 기반으로 한 인권최고대표의 제안과 권고

4.1. 종합 보고 칼렌다

서론

2011년 9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²⁵⁾는 조약기구들이 임시방편적으로 회의시간을 추가로 요청하는 문제에 대한 2개의 제안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1) 현재의 적체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제안서, 그리고 (2) 당사국 보고서 심의를 위한 종합 보고 칼렌다의 수립이다.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두 번째 제안은 조약상의 보고과정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가 보고서를 심의 받는 일정에 대한 확실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조약기구가 추가 회의시간을 계속 요청하는 필요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절은 이 제안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배경

현재 각 조약 및 조약기구의 최종견해에 명시된 보고 기한은 조약기구, 당사국 그리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두가 볼 때 예측불가능하고 불균형적인 일정이다. 조약기구들이 당면한 많은 보고서의 적체는 심사 지연을 초래하며, 이는 보고서 준비를 위해 수립된 국가절차의 추진에 상당한 손실로 이어진다. 대화할 때 즈음에는 상당한 양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긴급한 인권 문제에 직면하게 되거나 다음 보고서가 적시에 제출되는 것이 불확실해질 경우, 점점 더 많은 조약기구가 최종견해 이행의 후속절차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추가로 1~2년의 짧은 기간 내에 정보를 요청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조약기구들이, 몇몇 기구는 반복적으로, 유엔총회에 추가로 자원을 요청하도록 만들고 있다.

조약기구 강화과정의 모든 자문회의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은 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전반적으로 보고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25) A/66/344

제안

현재의 보고기한을 5년 주기에 기초한 단일한 종합 보고 칼렌다로 구성하지는 제안에 대해 본인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5년의 주기 동안, 조약에 모두 가입한 국가들은 1년에 최대 2개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는 보고 의무를 수반하는 핵심 조약상 현재 9개 보고서가 있는 것에 기반하는데, 강제실종협약 상의 1개 비정기보고서²⁶⁾와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개에 따른 한 개의 보고서²⁷⁾(본 제안서의 목적을 위해, 2개 선택의정서에 따라 작성되는 2개의 보고서는 핵심 조약 하에서 한 개의 보고서로 취급된다)를 포함, 즉 다르게 말하면 총 10개의 보고서에 근거하는 것이다.

시스템 내 모든 당사자들을 위해 확실성을 보장하고 효과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특정 당사국이 제출하는 보고서는 연간 최대 2개로 정해서, 보고 의무가 있는 조약에 따른 모든 보고서들이 5년에 걸쳐 제출되도록 한다.
- 각 조약기구가 심의하는 보고서를 매년 모든 당사국의 20%로 정해, 모든 당사국의 보고서가 5년에 걸쳐 심의되도록 한다.
- 제출된 모든 보고서는 제출 1년 후 심의하도록 하며, 희망할 경우 보충 자료를 제출하는 기회를 6개월 동안 허용하도록 하고, 다음 6개월 동안은 조약기구 및 그 사무국이 대면 대화를 준비하도록 한다.

이런 칼렌다에 따라, 당사국은 그 어떤 해에도 2개 이하의 보고서만 제출하게 되며, 전년도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2개 이하의 상호대화에만 참여하게 된다. 이는 당사국의 조약 준수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평등한 대우에 중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본 제도의 정기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시스템은 당사국이 조약기구 보고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26)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은 정례 보고과정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에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즉, 본 협약에는 정례 보고과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동시에 없다고 할 수도 없다.

27) 아동의 무력분쟁 개입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8조 및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12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각 선택의정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는 아동 권리 협약 44조에 따른 정기보고서 제출 시 선택의정서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협약 가입국이 아니면서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일 경우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정잡기

당사국의 목록을 각 20%씩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기준, 그리고 조약을 그룹으로 분류하는 기준 모두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다수의 국가들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 마감기한에 맞추어 당사국들을 그룹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견해를 표현함에 따라, 본인은 이러한 제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본인은 조약들을 주제별로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 1차 년도: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 2차 년도: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3차 년도: 고문방지협약, 강제실종협약
- 4차 년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 5차 년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또 다른 보고서 혼합방식도 선택될 수 있지만, 현 제안대로 최대한의 공통점이 있는 보고서끼리 연결된다면, 당사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원이나 노력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어 당사국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조약기구가 조약이행보고서 외에도 공통핵심문서에 요구되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국가들이 칼렌다에 맞게 5년 단위로 공통핵심문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조약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들쭉 조합하든간에, 보고할 국가들은 2개 규약(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상의 보고서를 서로 가깝도록 일정을 짜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 둘은 모든 인간의 기본 인권을 명시한 가장 광범위한 조약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고서 준비는 당사국의 4.5년마다 돌아오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절차상의 핵심 요소들과도 연결되어 처리된다. 따라서 양 규약에 가입한 160여 국가들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 기한에 맞추어 보고서를 처리할 경우, 이는 전반적인 보고의무에 있어 상당한 효율성 및 비용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칼렌다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조약기구의 보고 및 자원의 활용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가져온다. 이는 현재의 시스템에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것인데,

현재는 많은 국가가 보고서를 늦게 내거나 또는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산발적인 선택이나 시기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보고의무가 엄격하게 준수된다면, 국가별로 불공평한 이행율과 그에 따른 조약기구의 불평등한 대우가 사라질 것이다. 신규 조약기구를 제외한 모든 조약 기구는 재차 요구를 해도 반응이 없는 당사국들에게 어떻게 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인가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모든 조약기구는 (하나만 제외하고) 당사국의 보고서가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사국의 상황을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²⁸⁾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자기의 견해를 전달하지 못한 채 조약기구의 심사를 받기보다는 보고서를 준비하는 노력을 보였다. 적절한 자원이 투입된 종합적 보고일정에 의해 모든 제출의무가 있는 보고서는 심의를 위한 적정한 시간을 미리 배정하고, 마감기간이 훨씬 미리 설정되고 공개된다면, 당사국은 심의일정에 따라 보고에 필요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노력 및 공지에도 불구하고 서면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칼렌다에 계획된 대로 위원회와 당사국 대표단 간의 건설적 대화를 통해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칼렌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1차 사이클은 경과조치로 되어야 것이다. 이미 접수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보고서(즉 현재의 적체)가 일정에 포함되고,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강제실종협약 상의 보고서들이 제출되고 한번 심의를 받게 된다. 이는 2차 사이클 이후에 이 보고서들에 배정한 항목에 여유를 줘, 당사국들이 2차 및 3차 년도에서 단 한 개의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1차 사이클에 비해 일정의 미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다른 방안으로는, 이러한 여유분은 향후 새로 채택되는 조약의 보고서를 위해 활용될 수도 있다). 상쇄분이 발생한다면 이는 향후 비준이 늘어나는 결과로만 생기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것은, 2011년 유엔 사무총장의 총회 보고서(A/66/344)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신규 비준으로 인한 추가적 자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약기구의 업무량에 대한 정기종합심사를, 가능하면 매 2년마다, 수행할 필요가 있다.

28) 참조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A/58/18, annex IV, section P; 사회권위원회, E/C.12/2004/9; 여성차별철폐위원회 (Rule 65), 자유권위원회 (Rule 70); 고문방지위원회 (Rule 67), 아동권리위원회 (Rule 67, CRC/C/33, 제29항에서 제32항) 절차규칙들. 최근에 이주노동자위원회는 지난 2012년 4월, 제16차 회기에서 이러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이에 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장애인 권리협약』 36절, 2항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 『강제실종협약』은 단 한번만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후 정보는 요청 시에만 제공하게 되어있으며, 위원회는 아직까지 국가 보고서를 접수받지 않아 본 규칙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 미제출 당사국에 대한 조약기구의 처리 절차 관련 개관은 2011년 12차 위원회 간 회의에서 준비한 국가 보고서 절차 관련 인권조약기구의 업무방식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HRI/ICM/2011/4, 90항).



시온 국가간 협의 (2011년 5월)

칼렌다 운영을 위한 다른 업무방식과의 조화

칼렌다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전통적 보고과정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위원회 및 당사국들이 '약식 보고절차'를 받아들일 것을 권한다(약식 보고절차는 이전에 '보고 전 현안목록'이란 명칭으로 언급된 적 있다. 4.2.1 참조). '약식 보고절차'를 통해 초점 있는 질의를 하게 되고, 보고서의 제출 및 심의 사이의 지연 시간이 짧아지면서, 이는 복합적으로 국가 보고서 업데이트를 요청할 필요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통적 '현안 목록'의 필요성을 없앨 것이다. '약식 보고절차'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조약기구는 절차를 수정해서 '현안 목록'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요구하기 보다는 당사국과의 대화에서 제기될 핵심적 사항에 대한 안내로 그 목록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²⁹⁾

본 보고서 내 다른 제안과의 관계

일정은 보고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스케줄을 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보고서에 포함된 다른 제안들, 특히 보고과정의 내용, 포맷, 길이, 시간, 또는 그것이 보고서든, 대화든 또는 최종 견해든 간에 보고과정의 여타 측면에 대한 제안들과 혼용이 가능하지만 의존적이지는 않다. 이는 또한 조약기구가 수행하는 다른 과제들과도 무관하다. 개인통보에 대한 업무량은 현 제안서에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다른 과제와 관련된 업무량 (예를 들면 조사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다른 많은 제안들은 칼렌다의 잠재적인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칼렌다는 상설 국가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이 없는 당사국이 이를 설립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4.5.4절 참고). 본인의 사무소는, 업무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요청 시 4.5.3에

29) 현재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주제별 목록'을 통해 이를 실행하고 있는데, 보고서 접수 후 목록을 준비해서 서면 회신 요청 없이 보고서에 대한 대화 이전에 당사국 대표단과 공유한다.

명시된 실무를 지원해줄 수 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나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제안들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칼렌다에서 요구되는 추가 자원을 줄일 것이다. 예를 들면, 회의록을 3개 언어로 발간할 때 소비되는 연간 1,500만불에 가까운 비용은 한 개 언어로만 할 경우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회의록이 색인화된, 검색 가능한 웹캐스팅으로 전부 교체될 경우, 향후 지속적인 운영비도 (최초 설치비용 이후에는) 상당한 차이로 추가 감소될 수 있다.

제안의 부가가치

칼렌다의 채택은 다음의 효과를 가져 온다.

- 보고의무의 보편성에 기초해 운영됨으로써 당사국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없앤다.
- 현재의 보고의무에 합치된다. 즉 업무량이 추가되지 않고, 또 조약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
- 모든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속도로 업무를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해준다.
- 국가의 관련자들이 작성하는 보고서들 간에 지속성이 생기게 된다. 특히 상설 국가보고 메커니즘이 확립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문성을 쌓을 수 있게 된다.
- 심의할 보고서들이 또 다시 쌓이는 것을 예방한다.
- 조약기구에 제출되는 모든 보고서들을 신속히 심의하여, 모든 번역된 문서가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낭비를 최소화한다.
- 조약기구 회기 일정이 바뀌지 않도록 한다.
- 조약기구가 총회에 계속 일시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요청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 현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제안들과도 결합시킬 수 있어, 보고과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종합 보고 칼렌다는 **조약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기존의 법적 의무**에 부합되며, 정기적으로 모든 당사국의 조약이행을, 어떤 국가도 예외나 차별 없이, 검토하는 것이 그 원래의 목적인데, 현재의 절차에서는 보장할 수 없는 방법이다. 5년의 기간에 모든 조약의 주기를 조화시킴으로, 2-4년의 보다 짧은 주기의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보고 요건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일정은 조약을 개정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미 한 조약기구³⁰⁾가 당사국의 보고의무를 근거로 국제적 칼렌다에 따른 종합적인 해결책보다 먼저 이를 추진한 바 있다.

종합 보고 칼렌다는 전체 사이클의 **마감기한**을 한꺼번에 설정하는데, 이는 새로운 기준을 반영할 경우에만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되며, 미리 한참 전에 만들어진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계획하고 준비하여 당사국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이 보고의무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또한 그 후의 대화에도 영향을 미쳐 사전 계획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한 당사국은 보다 긴급한 관심을 요하는 또 다른 당사국의 보고서로 인해 **차후 회기로 연기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당사국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갑자기 조약기구 회기에 일찍 출석이 요구되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두 상황이 모두 흔하다. 일정의 변경이 늦게 이루어질 경우 보통 다른 당사국과의 대화를 조직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종합 보고 칼렌다 상에서는, 모든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불)이행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의 계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칼렌다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자원이 충분히 조달된다면, 조약기구는 유엔총회에 **회의시간을 포함한 추가적 자원을 임시로 요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있는 요청사항들은 모두 처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조약기구 업무량은, 특히 조약의 비준이 증가했을 경우를 볼 때,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제안되었듯이 유엔총회가 정기적으로, 가능하다면 2년마다, 심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범 운영 이후에 다시 지연되는 상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보고기한을 5년에 걸쳐 설정함으로써 당사국들의 **국가보고 메커니즘은 전문성을 축적하고 지속적인 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오래된 조약 6개 (150개국 이상이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및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임)의 가입국 대부분의 경우, 국가 보고 체계가 한해는 여러 개의 보고서로 인해 업무과중 되었다가, 다른 해에는 업무가 없는 상황에 빠질 염려가 없을 것이다. 이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다음 보고서가 일정대로 심사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후속조치 절차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던 조약기구들은 **재설정된 국가 보고서 심의 주기로 인해 보다 적은 횟수**의 요청을 하게 된다. 이는 특히 여러 조약에 공통적인 조약의 조항과 관련된 권고안에 대해 조약기구가 후속 조치를 취할 때 그러하다. 즉, 한 당사국이 심의 이후 2-3년 이내에 또 다른 조약기구에 의해 심의를 받을

30)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제15차 회기, 2011년 9월 개최.

것이라는 것을 어떤 조약기구가 알 때, 이 조약기구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상설 국가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이 어떤 조약 하에서도 차후 보고서를 준비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확실성은 보고활동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중간 기간 동안 권고안의 이행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보고서준비 및 후속조치의 꾸준한 이행은 국가 메커니즘으로 하여금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그리고 다른 국내 파트너들 사이에,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유익하도록 지속적으로 대화를 촉진하고 조율을 향상시킬 것이다(4.5.4절 참고).

제안의 비용

우선 무엇보다도, 이 제안의 이행을 위한 초기비용은 위에 언급한 효과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해 재빠르게 상쇄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확정된 국가 보고 칼렌다를 위한 제안과 개인통보와 관련된 연간 평균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한 연간 비용은 **1억 800만불**에 달할 것이다 (7900만불은 서류작업 및 추가 인력활용을 포함한 회의 지원 비용, 1200만불은 전문가의 일비 및 여행경비, 그리고 1700만불은 인권담당관 인력 비용에 해당됨). 이는 **관련 인프라 향상을 위한 비용이나, 일부 조약기구의 다른 기본활동, 예를 들면 조사 같은데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 할당된 예산보다 약 5200만불이 초과된 금액이다.

회의시간, 전문가 여행, 회의 지원, 회의 시설

연간 비용은 **9100만불**에 달한다 (7900만불은 엄격한 페이지 제한 및 추가 직원을 고려한 상태에서 서류작업을 포함한 회의 지원, 1200만불은 전문가의 일비 및 여행경비). 이는 현재 배정된 4200만불에 비해 4900만불이 증가(116%)한 것이다.

조약기구가 국가보고서와 개인통보를 심의하는 회의시간은 현재의 **연간 73주에서 124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108주는 국가보고서, 16주는 개인통보에 해당됨). 본 제안에서 보고서를 위해 필요한 108주는 조약의 주기를 엄격하게 고수할 경우, 현재 필요한 117주와 비교하여 8% 감소한 것이다.³¹⁾

또한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제네바에서 많은 회의가 집중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어, 모든 6개 공식어를 처리할 수 있는 통역시설을 갖춘 회의실을 추가로 필요로 할 것이다. 유엔 제네바 사무소

31) 조약기구 제도의 효율성, 조화 및 개혁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참조, A/66/24680, 제31항.

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추가 회의 지원 및 인권 담당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는 제네바 내 회의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의미하지만, 이는 조약기구 강화 절차와 무관하게 향후 어쨌든 직면하게 될 문제이다.

직원임용

5년 주기 사이클로 조정하는 절차는 총 68명의 P-3급 직원을 필요로 한다. 즉, 연간 263개 국가보고서 처리를 위해 **53명의 P-3³²⁾**와 160건의 개인통보 처리를 위해 **15명의 P-3³³⁾**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조약기구에서 근무하는 34명의 P-3 (극소수의 P-2 포함) 직원과는 별도로, 690만불에 해당되는 **P-3 직원 34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조약기구마다 한 명씩 총 10명의 P-4급 위원회 사무국 담당관을 제외한 것으로, 이 담당관은 회기 및 휴회기간 동안에도 P-3 직원의 감독을 포함하여, 위원회 업무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준비를 책임진다. 또한, 위원회 회의의 충분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위원회별로 추가로 한 명의 일반직 직원이, 즉 칼렌다에 따르면 **추가로 9명의 일반직 직원을 위해 170만불**이 필요한데, 이는 현 9명의 일반직 직원을 18명으로 2배 증원시키는 것이다.

국가보고서의 심의를 지원하는 **53명의 P-3급** 직원은 조약기구 전문가 및 각 위원회 사무국 책임자의 안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당사국이나 다른 출처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며, 현안목록과 최종견해의 초안 작성을 지원하고, 그 외에 위원회 회의 지원을 위한 관련과제를 수행한다.³⁴⁾ 연간 160건의 개인통보 심의와 관련하여, P-3급 **직원 8명**은 사례의 초안 작성을 위해 필요하고, P-3급 **직원 7명**은 들어오는 문서를 처리하고 (현재 연평균 7,500건의 서류를 접수한다), 사례를 관리하며 (약 500건의 등록 사례가 계류 중이다), 그 외 다양한 업무, 즉 분석보고서와 연례보고서 중 일부의 초안 작성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유엔 제네바 사무소는 영구적인 추가 역량 및 프리랜서 직원과 번역 용역을 위한 추가 예산 등 **다양한 추가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상기 회의 지원을 위한 7900만불의 비용에 포함된다. 다양한 자원의 정확한 조합은 통역 및 번역하기로 합의된 언어, 보고서의 단어 수 제한, 그리고 보고서

32) 각 직원이 연간 10개월 근무를 기준으로(1년 중 정기 휴가 및 병가 제외), 보고서 제출에서 최종 견해의 채택까지 한 보고서당 한 직원이 2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평균 국가 보고서 업무량을 산정함.

33) 직원 당 연간 10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각 사례 당 2주 소요하는 것으로 산정함.

34) 또한 기술적 협력 활동의 제공, 일반토론의 날 조직, 일반논평 작성 지원 및 여타 업무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각 보고서에 배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전체 수치에서는 보고서당 측정할 수 있음.

의 주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기타 옵션

1. 2011년 유엔 사무총장의 총회 보고서에서 제안되었듯이(A/66/344), 칼렌다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임시방편적 조치를 통해 한 번에 **현재의 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해서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제안은 2012년 현재 계류 중인 269건의 국가보고서 및 460건의 개인통보 심의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추가 회의시간 및 직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치는 5년 주기의 칼렌다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한 해에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2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 동안 새로운 보고서와 통보가 계속 접수될 것이다. 이 옵션은 현재 시스템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켜주지만, 당사국에 의한 불평등한 이행 및 당사국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것이다. 조약기구의 회의시간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면 곧 또 다른 적체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즉, 이 옵션은 종합적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옵션 하에서는, 조약기구 업무량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조약기구의 변모하는 자원 소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을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본 보고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현재의 지연 업무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해야 한다.
2.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로 할 경우 2010년 실행한 업무량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조약기구 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권담당관의 수 및 실제 수 사이에는 30%의 격차가 존재하며 (일반 예산 및 특별예산 직위 모두 포함), 인권조약국은 13명 정도의 P-3 직원 (연간 약 260만불 추정)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오늘날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수의 직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보고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현재 및 향후 업무량에 대해 최신 업데이트된 검토를 해야 한다.

본인은 조약에서 확립된 본래의 보고 사이클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5년 주기가 가장 충실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종합 보고 칼렌다를 더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기 위해 논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른 대안이나 제안들이 나온 바 있다.

- **다른 보고주기, 예를 들면 7년을 채택.** 이는 5년 주기를 완화해서, 회의시간이나 서류작성 등 연간 요구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7년 주기는 5년 주기의 5200만불에 비해 비용이

2100만불 증가한다.³⁵⁾

- **병렬 회의**에서의 보고서 심의. 이는 위원수가 충분한 조약기구(한 개만 제외하고 모두)의 연간 요구되는 회의시간과 그로 인한 일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매년 동일한 수의 보고서를 심사하고 그로 인해 서류작성 비용은 상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병렬 회의에서의 업무는 조약기구 회기 시간을 크게 늘리지 않고 칼렌다와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많은 조약기구 위원들이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반면에, 일비에서 절약한 예산은 훨씬 더 많은 회의시설의 필요와 두 번째 회의를 책임져야 하는 추가 P-4급 부책임자의 고용으로 상쇄될 것이다.
- 주목할 점은 5년 주기 칼렌다에서 **회의특**을 3개 언어로 발간하기 위해 연간 거의 1500만불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를 한 개 언어로 줄일 경우, 이 비용은 500만불에 불과하게 된다 (4.2.5절 참조).
- 또 하나 주목할 점은 5년 주기 칼렌다에서 회의 지원을 위한 비용은 **페이지 제한을 엄격히 준수**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권 고

당사국에게

- 조약기구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여 합의된 보고 주기 및 5년 주기 일정을 이행한다.
- 2년마다 조약기구 업무량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제도화하여 새로운 비준으로 인한 추가적인 자원 소요량을 고려한다.

조약기구에게

- 보고 주기에 대한 특정한 양식을 채택한다.
- 또 다른 조약기구가 곧 관련 문제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후속조치 절차를 단순화한다.

35) 5년 주기 총 예산: 540 (108*5) / 7년간: 연간 77(돈의 시간적 가치는 무시) / 현 연간 예산 (일반예산+특별예산): 56. 증가분: 21 (77-56)

〈종합적 5년 보고 칼렌다〉

당사국 1년차 →		당사국 2년차 →		당사국 3년차 →		당사국 4년차 →		당사국 5년차 →	
자유권 위원회	사회권 위원회	아동권리 위원회	아동권리 위원회 선택의정서	고문방지 위원회	강제실종 위원회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이주노동자 권리위원회	장애인 권리위원회
167개 당사국, 34개 보고서/연간	160개 당사국, 32개 보고서/연간	193개 당사국, 39개 보고서/연간	평균 88개 당사국 ³⁶⁾ , 17개 보고서/연간	150개 당사국, 30개 보고서/연간	30개 당사국, 6개 보고서/연간	175개 당사국, 35개 보고서/연간	187개 당사국, 38개 보고서/연간	45개 당사국, 9개 보고서/연간	112개 당사국, 22개 보고서/연간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8년	2018년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 12개월 (2015년)	+ 12개월 (2015년)	+ 12개월 (2016년)	+ 12개월 (2016년)	+ 12개월 (2017년)	+ 12개월 (2017년)	+ 12개월 (2018년)	+ 12개월 (2018년)	+ 12개월 (2019년)	+ 12개월 (2019년)
국가 보고서 기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주기 그룹1 국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주기 그룹2 국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주기 그룹3 국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주기 그룹1 국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주기 그룹2 국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주기 그룹3 국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주기 그룹1 국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주기 그룹2 국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주기 그룹3 국가
조약기구 1년차 ↓	조약기구 2년차 ↓	조약기구 3년차 ↓	조약기구 1년차 ↓	조약기구 2년차 ↓	조약기구 3년차 ↓	조약기구 1년차 ↓	조약기구 2년차 ↓	조약기구 3년차 ↓	조약기구 1년차 ↓

36) 선택의정서의 기한 내에 보고서를 이미 제출한 당사국은 포함하지 않음.

조약기구 4년차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주기 그룹4 국가	보고서 기한 정보 추가 기한 대화	당시국 1년차 →		당시국 2년차 →		당시국 3년차 →		당시국 4년차 →		당시국 5년차 →	
			자유권 위원회	사회권 위원회	아동권리 위원회	아동권리 위원회 선택의정서	고문방지 위원회	강제실종 위원회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이주노동자 권리위원회	장애인 권리위원회
			167개 당사국, 34개 보고서/연간	160개 당사국, 32개 보고서/연간	193개 당사국, 39개 보고서/연간	평균 88개 당사국 ³⁷⁾ 17개 보고서/연간	150개 당사국, 30개 보고서/연간	30개 당사국, 6개 보고서/연간	175개 당사국, 35개 보고서/연간	187개 당사국, 38개 보고서/연간	45개 당사국, 9개 보고서/연간	112개 당사국, 22개 보고서/연간
			2017년 + 6개월 + 12개월 (2018년)	2017년 + 6개월 + 12개월 (2018년)	2018년 + 6개월 + 12개월 (2019년)	2018년 + 6개월 + 12개월 (2019년)	2014년 + 6개월 + 12개월 (2015년)	2014년 + 6개월 + 12개월 (2015년)	2015년 + 6개월 + 12개월 (2016년)	2015년 + 6개월 + 12개월 (2016년)	2016년 + 6개월 + 12개월 (2017년)	2016년 + 6개월 + 12개월 (2017년)
			2018년 + 6개월 + 12개월 (2019년)	2018년 + 6개월 + 12개월 (2019년)	2014년 + 6개월 + 12개월 (2015년)	2014년 + 6개월 + 12개월 (2015년)	2015년 + 6개월 + 12개월 (2016년)	2015년 + 6개월 + 12개월 (2016년)	2016년 + 6개월 + 12개월 (2017년)	2016년 + 6개월 + 12개월 (2017년)	2017년 + 6개월 + 12개월 (2018년)	2017년 + 6개월 + 12개월 (2018년)
조약기구 5년차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주기 그룹5 국가	보고서 기한 정보 추가 기한 대화										

37) 선택의정서의 기한 내에 보고서를 이미 제출한 당사국은 포함하지 않음.

4.2. 간소화되고 조율된 보고과정

보고과정은 상호 연결된 단계들로 구성된다. 즉 국가보고서의 준비 및 제출, 보고서를 심의하는 조약기구와의 대면 대화, 그리고 조약기구가 채택한 권고안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휴회기간 및 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 하며, 따라서 보고서는 기한에 맞추어 제출되어야 한다. 보고과정은 하나의 연속으로, 각 주기는 이전 주기에 더해 쌓여지면서 경험을 축적하게 되고, 정기적인 보고로 더욱 풍부해지고 권리보유자의 보호에 있어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게 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및 국가인권기구 등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교류하면서 더욱 풍성해진다. 유엔기구의 중요한 역할은 조약기구의 권고안에 관한 이행 및 후속조치 강화에 관한 장에서 다루어진다.

여기에서는 보고과정을 단순화하고 조율하기 위한 제안들을 다루는데, 즉 공통핵심문서의 제출 및 정기적 업데이트, “약식 보고절차”, 당사국의 보고서 페이지 수에 대한 엄격한 제한, 그리고 회의록 번역의 언어 숫자를 줄이는 것 등이다. 본인은 이밖에도 보다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의 방법론, 보다 짧고 초점있는 최종견해, 다른 유엔 파트너들과의 관계 제도화, 그리고 조약기구,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간 교류를 조율시킨 모델을 제안한다.

4.2.1. “약식 보고절차”

간소화되고 조율된 보고과정을 위한 제안은 선택적인 “약식 보고절차”를 채택함으로써 국가들이 보고의무를 충족시키면서 보고의 질을 개선시키도록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보고 전 현안목록”이라고 알려져 있던 것을 국가들과의 자문에 비추어 개선한 것이며, 아래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국가는 기존의 보고과정과 4.1절에 명시된 종합 보고 칼렌다 제안을 포함한 새로운 약식 보고절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둘 중 어느 경우라도, 당사국은 종합적인 최초보고서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발전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정기적으로 최신 업데이트된 공통핵심문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약식 보고절차 채택여부는 국가가 선택한다. 조약기구는 “약식 보고절차” 질문지를 작성할 경우 훨씬 전에 국가의 동의를 구하며, 해당 국가의 공식 동의를 있을 때에만 이를 준비한다.



시온 국가자문 협의 (2010년 5월)

배경

지난 2007년 5월 개최된 제38차 회기에서, 고문방지위원회는 각국의 정기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보고 전 현안목록(LOIPR)’을 당사국에 전달하는 새로운 선택적 보고절차를 채택했다(A/62/44, 제23항 및 제24항). 이러한 선택적 보고절차는 당사국이 개별적인 정기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을 안내하고, 보고과정을 도와주며, 당사국이 “보고 의무를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시킨다. 당사국이 보고 전 현안목록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 후에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의 조약기구는 국가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보고서 심의 전에 서면질의서를 통해 요청해온 것으로, 이는 위원회와 사무국, 당사국을 위한 서류작성의 양을 줄이고 보고과정을 축소시킨다. 이 절차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고문방지위원회는 2009년 5월 제42차 회기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당사국의 높은 수락률(75%)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정기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10월 개최된 제97차 회기에서, 자유권위원회는 이 선택적 절차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시범기간 동안 매 회기마다 5건의 ‘보고 전 현안목록’을 채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가 매 회기에 ‘보고 전 현안목록’을 송부하는 5개 당사국은 3개의 누적기준에 따라 선별된다. 2011년 4월에 제14차 회기에서, 이주노동자위원회도 ‘보고 전 현안목록’에 대한 선택적 절차를 채택했다. 현재까지 이 위원회에서도 이 방안을 제안 받은 당사국 중 75%가 이를 수락한 기록을 보였다.

제안의 부가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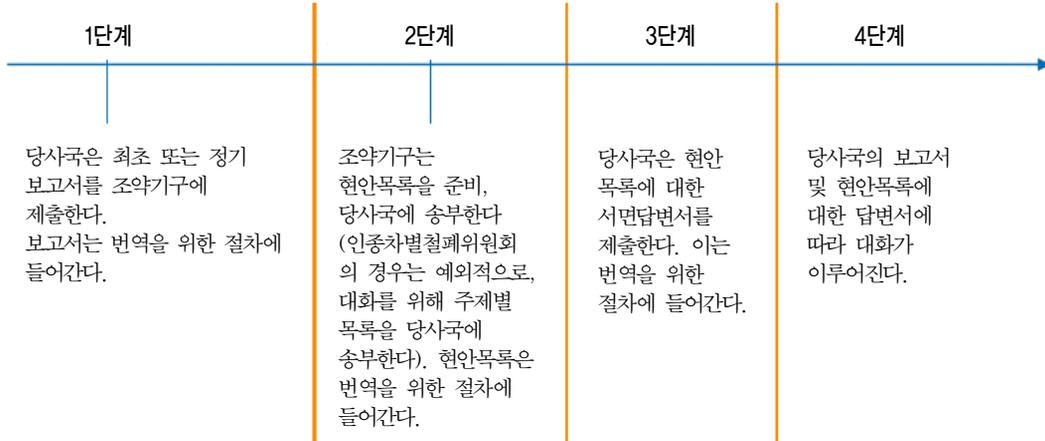
약식보고절차는 보다 집중되고 효과적인 보고절차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이를 상당히 간소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종합 보고 캘렌다와의 연관성을 포함)를 제공한다. 정보

요청을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약식 보고절차 질문지는 당사국의 보고서가 보다 초점이 있도록 하고, 국가가 답변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적게 소비하며, 이로 인해 건설적인 대화에 이바지하고, 그 결과 보다 집중되고, 정확하며, 이행 가능한 최종견해를 도출하게 되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질문의 수를 제한하므로, 특정 국가를 특정 시기에 심의할 때, 해당 조약기구가 우선을 두는 영역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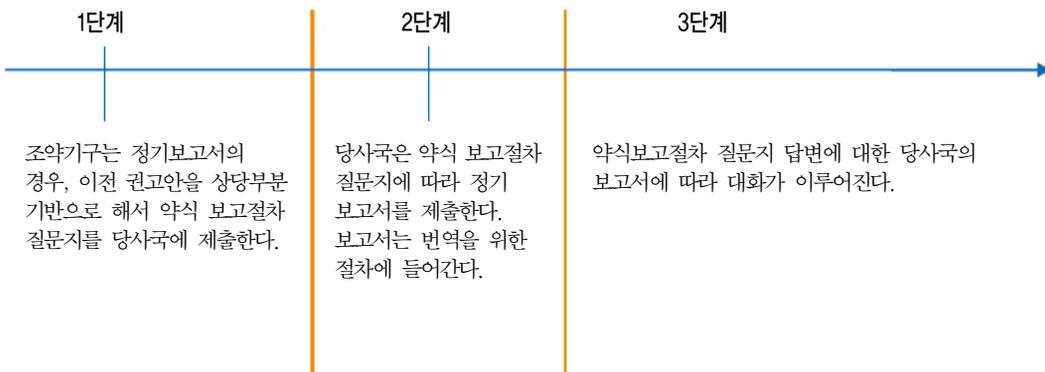
나아가, 많은 국가들은 조약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몇 개의 집중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자문과정 동안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는 당사국이 보고서를 준비할 때 국가차원에서 업무의 분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보고서의 깊이와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서류작성의 양은 줄어들었다.

종합 보고 칼렌다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약식 보고절차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기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어, 이는 보고기한이 상당히 경과된 보고서의 발생률을 줄일 것이다. 예를 들면, 고문방지위원회가 이 선택적 보고절차를 채택한 후 2010년 및 2011년에 보고서 기한 준수율이 2배 이상 증가(적시에 제출한 보고서가 13%에서 31%로 증가)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약식 보고절차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고서로 간주되며, 관련 조약기구와의 대화 이전까지 국가는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전통적 보고과정과 비교하여, 이는 기존 과정에서 한 단계, 즉 아래 그래프에 있는 대로, 당사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뒤 받은 현안목록에 대한 당사국의 서면 답변을 줄인 것이다. 최종견해는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에 기반하게 되며, 따라서 우선사항에 따라 정해지게 되어 국가의 이행을 촉진하게 된다. 약식 보고절차는 또한 조약기구 회기 동안 문서 번역이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전통적 보고절차〉



〈약식 보고절차〉



제안의 비용

본 제안은 당사국 및 유엔 모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현재까지 보면, 보고 전 현안목록은 간결한 국가보고서로 이어졌다. 예를 들자면, 20개 국가가 고문방지위원회에 새로운 선택적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서를 기한에 맞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들의 가공 및 번역을 위한 비용은 148만 22불이었다. 종전 절차에 따른 이전 보고주기 하에서 동일한 국가의 보고서(이는 보고서와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로 구성된다)와 비교할 경우, 해당 비용은 171만 9848불에 달했다. 이는 국가 보고서당 평균 1만 3338불이 절감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산은 한 조약기구의 경험(2007년에 시작)에 근거

한 것이나, 이를 통해 보고 전 현안목록의 내용이 기존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고, 더 짧아진 보고 전 현안목록과 국가보고서를 통해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는 위원회가 보다 많은 약식 보고절차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임시 인력이 필요하다. **충분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수의 인력을 마련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 현재 및 향후 업무량에 대한 업데이트된 분석을 해야 한다.**

기존의 보고절차 하에서 “공통핵심문서 및 조약별문서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 국제 인권조약에 대한 일원화된 보고 지침”(HRI/MC/2006/3 및 Corr.1)에 따라 페이지 수 제한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질문 숫자에 제한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절감도 가능하다.

권 고

조약기구에게

선택적 약식 보고절차를 아직 채택하지 않은 위원회는 현재의 밀린 보고서와 상관없이, 약식 보고절차 질문지 양식에 따라 25개 질문/2,500개 단어 이내로 채택한다.

이 절차를 채택한 위원회는 약식 보고절차 질문지에 대한 공통된 양식을 채택한다. 질문지의 양식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

1. 위원회의 이전 권고안 및 조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이전 권고안/정보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행은 다음을 적절하게 포함해야 한다. (a) 정책, (b) 입법적, (c) 사법적, (d) 제도적, (e) 계획 및 프로젝트, (f) 예산, (g) 기타.
2. 조약의 이행과 관련된 다른 조치의 채택 및 최근 진척사항 (질문은 없이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3. 이전 심의 후 당사국에서 발생된 진척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보고 전 현안목록을 실행한 조약기구는 국가들 및 이 절차를 채택하지 않은 다른 위원회를 위해 최근 고문방지위원회가 한 것과 같이 이 절차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하도록 요청한다. 조약기구는 이점에 대해 당사국의 견해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국에게

약식 보고절차가 이 절차를 선택하는 조약기구에 간소화된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수단인 것으로 간주한다.

조약기구 중 선택적 절차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이를 받아들인 당사국, 그리고 해당 조약기구에 보고 전 현안목록과 이후 심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선 당사국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평가내용을 제공한다.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유엔기구,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약식 보고절차 질문지 양식에 따라, 초점을 맞춘 정보를 관련 조약기구에게 조약기구가 설정한 기한에 맞춰 제출하도록 한다.

4.2.2. 공통핵심문서 제출 및 정기적 업데이트

공통핵심문서 및 조약기구별 보고지침을 보다 잘, 그리고 많이 활용하도록 한다. 본 제안은 “종합 보고 칼렌다”, “약식 보고절차”, 그리고 “당사국 보고서의 길이를 제한하여 보고서를 간소화, 증점화 및 비용축소”(아래 참고)를 보충한다.

배경

지난 2006년, 제5차 위원회 간 회의 및 제18차 의장단 회의는 “공통핵심문서 및 조약별문서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일원화된 보고지침”을 채택했다(HRI/MC/2006/3 및 Corr.1). 이러한 시도는 이전의 개혁 관련 논의에서 나온 것이고, 모든 조약 또는 여러 개 조약에 공통된 실질적인 조약내용에 관한 질문들을 일반적인 관심사에 관한 정보와 함께 한 문서에 일원화함으로써, 국가 보고를 향상시키는 도구로 간주되었다.

조약기구 강화 절차의 과정에서, 여러 당사국들과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공통핵심문서가 보고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보고서의 준비 및 발표를 간단하게 만들며, 공통핵심문서의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가 공통핵심문서를 활용하는데 있어 일관성 있고 명확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국을 돕는 것이며, 공통핵심문서 사용의 표준화와 조약별 약식 보고절차(이전까지는 해당 위원회가 이를 ‘보고 전 현안목록’으로 알고 있다)가 전체 조약기구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안일 것으로 지목되었다.

본 조화로운 보고제도의 잠재성은 아직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았다. 2006년 이후로 58개 당사국만이 공통핵심문서를 작성했다. 조약기구는 공통핵심문서와 조약별문서의 내용이나 활용을 아직 평가하지 않았다.

제안의 부가가치

공통핵심문서와 조약별보고서를 포함하여, 조화된 지침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각 조약기구 및 당사국으로 하여금 보다 넓은 국제인권 의무 맥락에서 관련 조약의 이행에 대해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각 위원회가 다른 조약기구와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단일화된 체계를 제공해 줄 것이다.

조화된 지침의 사용은 초점 있는 보고서의 준비 및 제출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로써 전체적으로 보다 집중된 보고 주기를 마련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간소화된 선택적 보고과정(보고 전 현안목록 및 약식 보고절차)을 적절히 보완한다. 조화된 지침은 국가가 보고의무를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정보의 불필요한 중복에 대한 회피를 포함한다.



제네바 국가자문회의 (2012년 2월)

공통핵심문서, 그리고 필요시 정기적 업데이트와 연간 첨부 자료의 제출은 조약별 문서가 보다 간결하고 목표에 맞게 작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로써 보다 집중된 최종견해의 작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국가차원에서 인권보호 수준을 조사하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정책 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제안의 비용

본 제안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가 있다. 공통핵심문서의 제출뿐만 아니라 이를 필요시 정기적으로, 그리고 종합 보고 칼렌다 주기에 따라 최소한 5년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보다 짧고 정확한 조약별문서와, 결과적으로 보다 집중된 최종견해가 작성되도록 해준다. 만약 업데이트된 공통핵심문서가 기존 공통핵심문서에 대한 별첨 형식으로 제출되었을 경우(아래 당사국에 대한 권고안 참조), 이는 이러한 업데이트의 처리 및 번역 비용의 절감을 의미한다(즉, 개정된 공통핵심문서 전부를 번역하는 대신 부록 몇 페이지를 번역).

권 고

조약기구에게

공통핵심문서 및 조약별문서의 내용과 활용을 평가하며, 이행 우수사례 및 경험을 취합한다.

해당될 경우, 약식 보고절차 질문지가 공통핵심문서를 보완하도록 한다.

당사국에게

해당 조약의 국가별 이행에 대해 조약기구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통핵심문서와 조약별 보고서, 또는 약식 보고절차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는, 간소하고 조화로운 보고 제도를 포괄적으로 활용한다.

공통핵심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출함으로써 조약에 대한 보고를 일원화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조약별 문서에서 충분히 상호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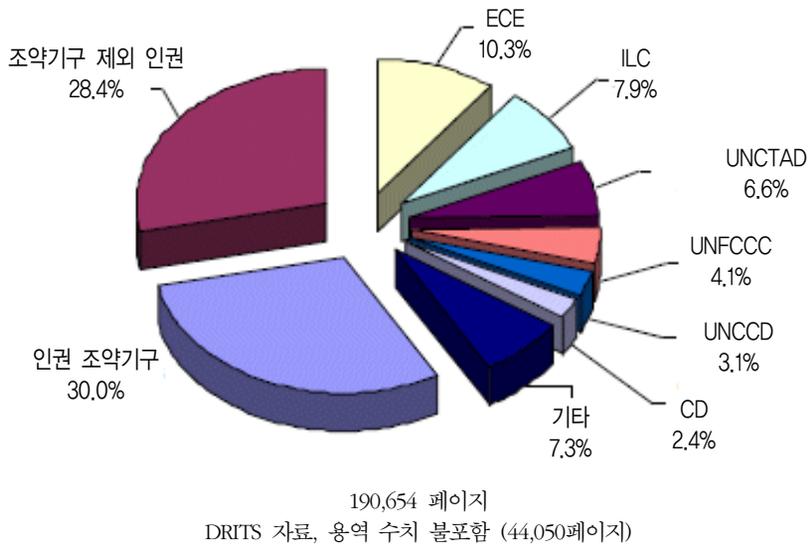
조화된 지침에 따라 공통핵심문서에 대한 60-80페이지 제한을 엄격히 준수한다(HRI/MC/2006/3, 제19항).

주요 법적, 정치적 또는 제도적 변화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또한 종합 보고 칼렌다 주기에 맞춰 최소 5년마다 공통핵심문서에 대한 주요 및 정기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업데이트가 불필요하다고 당사국이 판단할 경우, 이는 조약별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이는 가능하다면 기존 공통핵심문서의 부록으로 제출한다(위 참조).

4.2.3. 페이지 제한의 엄격한 준수

본인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페이지 제한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들이 보고서의 길이를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총 내부 번역/수정, 주요 고객〉



배경

지난 2006년,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일원화된 보고지침 – 공통핵심문서 및 조약별 문서에 대한 지침”은 “가능하다면, 공통핵심문서는 60-80페이지를 초과하지 말고, 조약별 최초보고서는 60페이지를 초과하지 말며, 이후 정기보고서는 40페이지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정기보고서를 최대 60페이지까지 허용하는데, 이는 “대다수 당사국이 협약뿐만 아니라 2개의 선택의 정서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아동권리위원회/C/58/Rev.2, 제11항). 제22차 연례 의장단회의는 기존의 페이지 제한이 실제로 적용되도록 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했는데, 이는 유엔 회의지원부서의 우려사항을 모든 당사국에 구상서를 통해 전달하고,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이를 재검토하고 상기 명시된 지침에 따라 다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무국은 이러한 구상서를 2010년 9월까지 모든 당사국에 보냈다.

모든 유엔의 인권 관련 서류작성은 조약기구에게 제출하는 당사국의 보고서만 제외하고, 유엔총

회, 인권이사회 및 조약기구를 모두 포함하여 엄격한 페이지 제한을 적용받는다. 인권 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국가별 제출 보고서에 대한 엄격한 페이지 제한(20페이지)을 설정하고 적용시켰다(HRC/5/1, 제15항 (a)).

제안의 부가가치

- 간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당사국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 보다 초점있는 보고서로 체계적이고 의미있는 건설적인 대화와, 그 결과 보다 초점있고 구체적인 최종견해를 가능하게 하며,
- 회의 지원부서 업무량의 경감으로 인하여, 당사국 보고서의 처리와 번역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 처리, 번역될 페이지 수의 감소로 절약된 재정이 재투자되어 조약기구가 모든 서류를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언어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는 회의관리부서가 당면한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다.

제안의 비용

본 제안은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60페이지 국가 보고서를 5개 다른 유엔 언어로 번역할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은 대략 11만불이다. 100페이지 보고서는 19만불이 소요되며, 300페이지 보고서도 종종 있는데 대략 56만불이 소요된다.³⁸⁾

아래 표는 2011년, 조약기구가 심사한 115개 당사국의 이행 보고서 중, 정기보고서의 64%가 일원화된 작성지침에 명시된 40페이지 제한을 초과했고 최초보고서의 33%가 60페이지 제한을 초과했음을 나타낸다. 이는 제한을 지키지 못한 페이지 수가 총 2,922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페이지 수 제한이 지켜졌을 경우, 2011년도에는 번역예산 약 550만불이 다른 조약기구 문서 번역에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시기에 맞게 문서가 발행되도록 도움을 줬을 것이다.

38) 5개 다른 언어의 한 페이지당 평균 번역 비용(편집, 참고 및 품질관리 포함)은 대략 1900-2000불이다.

2011년도에 심의한 보고서 종류	2011년도 총 심의 보고서의 수(115건)	페이지 제한 초과 문서 페이지의 수	단어 제한 초과 분량에 대한 문서 비용(US\$)
정기보고서	85		
최초보고서	30		
40페이지 제한을 초과한 정기보고서	54 (64%)	2,704	5,137,600
60페이지 제한을 초과한 최초보고서	10 (33%)	218	414,200
총계		2,922	5,551,800

권 고

조약기구에게

모든 최종견해 및 당사국과의 관련 서신교환에서, 공통핵심문서 및 조약별문서에 대한 지침을 포함, 국제인권조약하의 일원화된 보고지침에 따른 페이지 제한을 준수할 것을 당사국에게 체계적으로 상기시키고(HRI/MC/2006/3 및 Corr.1), 페이지 제한을 초과하는 당사국 문서는 페이지 수를 줄여달라고 이를 반송시킨다. 이 지침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연방국가나 해외영토가 있는 국가의 경우, 20페이지를 추가로 연장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본인은 제안한다.

“약식 보고절차”(또는 “보고 전 현안목록”)를 선택한 위원회의 경우, 최대 25개 질문/2,500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당사국이 답변서를 준비할 때 페이지 수 제한을 준수하도록 한다.

최종견해에 포함된 당사국에 대한 권고안을 최대 20개/2,500개 단어로 줄이고, 이를 우선순위에 집중하여 차후 당사국의 보고서가 제시된 페이지 제한에 부합하도록 한다.

당사국에게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일원화된 보고지침 – 공통핵심문서 및 조약별문서에 대한 지침”(HRI/MC/2006/3)에 명시된 페이지 제한을 준수한다.

페이지 제한을 지키기 위해, 지난번 받은 권고안의 이행과 최근의 발전사항에 초점을 두어 보고서를 작성한다.

추가정보는 보고서의 첨부자료로 제공한다. 첨부자료가 제출시의 원래 언어로만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사무국 실무언어중 하나로 작성된 첨부자료를 제공한다.

4.2.4. 당사국과 조약기구 간 건설적 대화를 위한 조율된 방법론

본인은 모든 조약기구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고 과정에서 당사국과의 대화가 보다 상호작용적이고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당사국 및 조약기구 간 건설적 대화를 위한 문서상 지침의 형태로 정렬된 방법론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지침에는 강화된 규율, 더 강력한 의장의 역할, 그리고 엄격한 발언의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을 통해 건설적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의 기대, 그리고 국가들과의 자문회의에서 표명된 견해들은 조약기구가 제안된 조율된 방법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요소들을 제공해준다. 이는 당사국 및 조약기구 전문가의 균형 잡힌 시간 활용, 중복된 질의의 방지, 그리고 보다 잘 조정된 전문가 질문 등을 포함한다.

배경

일반적으로, 모든 조약기구에서의 대면 또는 건설적 대화는 대략 동일한 구조를 따른다. (a) 당사국은 보고서를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도록 초청된다. (b) 대표단 수석대표는 주로 수도에서 온 정부의 전문가가 이끌게 되는데, 간단한 개회사를 하도록 초대된다. (c) 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경우에는 국가보고관 또는 국가 태스크포스 구성원의 주도로, 보고서 내 특정 관심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최초보고서에 근거한 대화는 국가 상황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 조약기구가 조약의 조항들을 모두 또는 적어도 대부분을 다룰 것을 요구한다. 정기보고서에 대한 대화는 당사국이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은 몇 개의 핵심 특정사안 및 조항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요구한다. 실제로는 조약기구에 따라, 일반적으로 최초보고서를 위한 대화와 정기보고서를 위한 대화 간에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다. 많은 정기 대화는 최초보고서를 위한 종합적인 대화와 동일하며, 이전 최종견해의 이행에 관한 토론은 종종 대화에서 미미한 적이 많다.

하지만, 각 조약기구가 당사국과의 건설적 대화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하는 방법론은 현재 상당히 다양하며, 여러 이해당사자들은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화의 효율성과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즉 시간 관리를 더 잘하고, 조약기구 위원들과 당사국 대표단간의 보다 균형 잡힌 의사교환 등이 포함된다.

제안의 부가가치

- 보다 균형 잡힌 생산적 의사교환을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된 유의미한 대화는 당사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며, 그 결과 보다 연관성이 크고, 초점 있는, 이행 가능한 사안 및 권고가 채택될 것이다.
- 정기보고서의 경우, 대화는 조약기구의 이전 권고안의 이행에 더 집중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했는지 추적이 가능할 것이다.
- 또한 건설적 대화를 위한 보다 조율된 방법론은 당사국이 매번 다른 요건에 적응해야 하기 보다는 당사국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것이다.
- 이는 또한 당사국이 어떻게 국가차원에서의 이행을 개선하고 따라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지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기회를 증진시킬 것이다.



사회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자유권위원회에서의 건설적 대화

제안의 비용

본 제안은 추가적 자원 없이 시행될 수 있다.

권고

조약기구에게

다음의 요소가 포함된 서면 지침을 채택한다.

- 최대 2개 회의(6시간)를 한 국가와의 상호대화에 할당한다. 2개 회의는 이틀 연속으로 개최되어야 한다(오후-오전)
-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국가 태스크포스는 (지리적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5명의 조약기구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사국과의 대화를 준비하게 되는데 대화 시 반복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와 조정, 질문을 명확히 배분 하는 등을 포함한다. 이런 조정 일은 국가보고관이 담당할 수 있다. 모든 태스크포스 구성원은 첫 질문 및 대부분의 질문을 하고, 태스크포스에 속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들은 후속 질문을 할 수 있다.

- 질문은 주제별로 묶는다. 원칙적으로, 대화는 조약기구 전문가들에게 3시간, 그리고 당사국에게 개회사를 포함해서 3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조약기구는 한 묶음의 질문이 끝나면 대표단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한다.
- 당사국의 모두 발언은 최대 15분을 할애하며, 이를 엄수한다.
- 스피치 타이머를 사용하여 질문의 횟수 및 시간을 엄격히 제한한다.
- 정기보고서에 대한 대화는 가장 심각한 인권사안과 이전 최종견해에 대한 당사국의 후속조치에만 집중한다.
- 의장은 대화를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조약기구 위원들과 당사국 대표단 간의 균형 잡힌 의사교환이 보장되도록 한다.

당사국에게

- 의회 및 사법부 구성원을 포함해서 고위급 공직자 및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지식이 풍부한 대표단이 국가를 대표하며, 이들은 조약기구가 제기한 문제에 대답하고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득을 얻게 된다. 대표단이 관련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는 비디오 링크 등을 통해 정부와 직접 통신하면서 요청된 정보를 신속하게 조약기구에 제공해야 한다.
- 조약기구와의 회의 중에 모두 발언은 15분으로 제한한다.
- 질의에 대해 짧고 정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상기에 명시된 질문목록에 기반해서) 제공한다.

4.2.5. 요약회의록 번역의 축소³⁹⁾

본인은 모든 조약기구가 요약회의록 및 언어에 대한 권한을 재고할 것을 장려한다. 웹캐스팅이 도입된다면, 이는 공개회의의 요약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으며, 비공개회의의 요약회의록에 관한 것만 고려하게 될 것이다.

배경

요약회의록은 회의관리부서에서 파견한 회의록 작성자들이 작성한 공식 회의 기록이다. 요약회의록은 발언 그대로의 기록이 아니라 회의 진행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조약기구는 현재 요약회의록에 대한 권한 및 사용에 대해 서로 다른 관례를 따르고 있다. 일부 조약기구는 모든 회의에 요약회의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면 다른 조약기구는 공개회의 또는 특정 회의에만 이를 적용한다. 대부분의 요약회의록은 내용을 명확하게 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사용되지만, 어떤 조약기구는 일상적으로 요약회의록을 사용한다.

요약회의록은 6개 공식 유엔 언어로 모두 번역되어야 하지만(A/66/RES/233, 제IV부, 제1항은 6개

39) 보도자료는 당사국과의 건설적 대화 후에 지속적으로 준비될 것이다.

유엔 공식 언어가 평등하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원의 제한으로 번역은 상당히 밀려있다. 또한 회의내용을 오디오 기록으로 저장하기도 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요약 회의록을 영어로만 작성하기로 결정했다.⁴⁰⁾

〈현 조약기구의 요약회의록에 대한 요청〉

조약기구	공개회의	비공개회의 (제한된 요약회의록)
자유권위원회	○	일반사항 - ○ 통보 - ×
사회권위원회	○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 일부 예외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일반사항 - ×, 일부 예외 통보 - ○
아동권리위원회	○	×
고문방지위원회	○	비공개 회의 - ○, 일부 예외
고문방지소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전체회의 - ○ 전체회의 이외의 회의 - ×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	×, 일부 예외
장애인권리위원회	○	×
강제실종위원회	○	×

제안의 비용

요약회의록이 발행되는 언어의 수를 줄이는 조치는 서류처리 능력에 적용되어, 조약기구에 제공되는 서류번역이 시기적절하게 발간되는 비율을 개선시킬 것이다. 예를 들면, 종합 보고 칼렌다 하에서 제한된 수의 회의에 요약회의록이 한 언어로만 준비되고 모든 공개회의가 웹캐스팅으로 교체된다면, 5년 주기 하에서 3개 언어로 요약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1500만불 대신 웹캐스팅에 드는 비용을 빼고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40)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 39/II에서, (제39차 회기, 2007년 7월 23일 - 8월 10일) 위원회는 2008년-2009년 2년간의 임시 조치로써 회의록을 영어로만 발간하고, 2009년 이러한 결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아직까지 이러한 결정을 다시 논의한 바 없다.

권 고

조약기구에게

각 조약기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회의록 권한을 재 고려해야 한다.

- 번역이 요구되는 언어의 수를 줄인다.
- 요약회의록을 요청할 회의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 요청 시에만 요약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음성 기록에 의거한다.



제네바 국가자문회의 (2012년 2월)

4.2.6. 초점을 맞춘 조약기구 최종견해

본인은 조약기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보다 초점 있는 최종견해를 채택하기를 바란다. 조약기구는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순위에 특히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에 덧붙여 최종견해가 당사국뿐만 아니라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이는 부제가 있는 명확한 표준 양식의 적용을 포함한다). 약식 보고절차를 위한 제안 및 건설적 대화 실행을 위한 조율된 방법론이 시행된다면, 최종견해의 양식과 내용은 쉽게 더욱 초점이 있게 될 것이다.

배경

모든 조약기구는 당사국의 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를 만드는 관례를 따랐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다음의 구조를 취한다. 서론, 긍정적인 면, 주된 관심영역 및 권고. 그들의 주된 목적은 당사국내 인권보호 문제 및 난관 등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 당사국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행을 위한 권고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즉 최종견해는 당사국이 조약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당사

국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차기 정기보고서에서, 이전 최종견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를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우려사항 뿐만 아니라 특히 권고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둘 다 당사국이 직면한 특정 상황에 부합되어야 한다. 조약기구 권고의 정확성과 질은 최적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질로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국가 차원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효율적으로 조약기구 권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0년 6월에 개최된 제11차 위원회 간 회의와 2011년 6월에 개최된 제12차 위원회 간 회의에서는, 각 조약기구가 최종견해의 길이를 축소하고 조약기구가 보다 초점있는 권고를 생성하도록, 즉 주된 관심영역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문단의 길이와 항목의 개수를 줄이고 적절할 경우 부제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 위원회 간 회의는 조약기구가 명확한 양식을 활용하여 최종견해를 작성하도록 권장하였다.

〈현재 조약기구 당 최종견해의 평균 길이〉

조약	실질적 조항 수	최종견해 평균 페이지 수
인종차별철폐협약	7개 조항	6-7
자유권규약	27개 조항	6-7
사회권규약	15개 조항	8-9
여성차별철폐협약	16개 조항	11-13
고문방지협약	16개 조항	10-11
아동권리협약	41개 조항	20-21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10개 조항	7
무력분쟁상황에 대한 아동의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7개 조항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71개 조항	8-9
장애인권리협약	33개 조항	8

제안의 부가가치

- 조약기구 최종견해가 짧고,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 그 안에 포함된 권고는 명확한 입법, 정책, 계획 및 제도적 개선책으로 보다 쉽게 바뀌어 질 수 있다.
- 최종견해의 내용과 질의 개선은 개별 조약기구 - 그리고 조약기구제도 전반의 위상과 가시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 더욱 초점이 맞춰진 권고를 내는 것은 당사국이 국가 차원에서 이를 이행하고 국가인권기구가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을 촉진시킬 것이다.
- 명확한 양식의 활용과 제목의 기입(주제별 제목달기)은 조약기구 권고의 색인작업을 돕고, 책임 있는 국가기구에 의한 보다 효과적 이행과 후속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 조약기구의 권고가 보다 초점이 잡히고 명확할 경우, 특별절차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등의 다른 인권 메커니즘을 위한 조약기구 권고의 활용도가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다.

제안의 비용

이 제안은 비용절감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데, 보다 초점이 잡힌 최종권해로 인해 자연히 번역을 요하는 페이지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조약기구의 다른 문서 번역에 쓸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따라서 이를 시기에 맞게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권 고

조약기구에게

- 첨부된 공통양식을 참고하여 최종권해를 작성하고, 그 안에 제목(주제별 제목)을 기입한다.
- 보다 높은 효율성과 영향력을 달성하기 위해 최종권해의 길이를 줄인다. 해당 조약의 실질적 조항의 수와 범위를 고려하면서, 회기 중 번역시 제한 단어수(3,300개 단어/6페이지)를 참고한다.
- 보고주기가 심의대상국의 우선순위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최종권해는 해당 국가에 특화되도록 집중시키며, 이전 최종권해가 각 새로운 보고주기의 출발점이 되도록 한다. 또한, 최종권해는 해당 조약기구가 건설적 대화 동안 제기한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
- 최종권해의 작성은 이행여부의 측정이 불가능한 일반적 성격의 권고를 피하고, 대신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조약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 법제를 포함,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가능하다면, 최종권해를 즉각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우선순위 문제로 나누는데, 긴급성과 주기 내에 처리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균형을 잡는다.
- 조약의 특정 조항이나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명시한다.
- 프로그램적인 성격의 권고나 당사국의 긍정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권고안은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한다.
-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조약기구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특별 절차 수임자의 권고를 상호참조하고 강화한다.

당사국에게

- 이전 최종권해를 차기 보고서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그 이행정도를 보고한다.

4.2.7. 여타 유엔 파트너들과의 관계의 제도화 제고

본인은 조약기구가 다른 유엔기구와의 보다 제도화된 협력을 통해, 조약기구에 의해 심의되는 당사국의 준비, 심의 및 후속조치에 있어 당사국과 여타 이해당사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배경

인권은 유엔의 3개 주요 영역 중 하나이며, 평화와 안보뿐만 아니라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관점이다. 지난 10년간, 유엔제도의 업무에 인권을 주류화 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조약기구와 유엔기구 간에 굳건한 동반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화해서 당사국과 여타 이해당사자들의 준비, 심의 및 후속조치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원은 각 유엔기구의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즉 유엔기구의 구체적인 임무, 전문분야, 지리적 주둔뿐만 아니라 유엔국가팀 시스템을 통한 통합적인 강점까지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안의 부가가치

제도화는 유엔 제도와 모든 인권조약기구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체계화시킬 것이며, 당사국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준비, 대화 및 후속조치를 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강화된 관계는 당사국 내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준다.

- 조약기구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이는 보다 관련성 있고, 초점이 맞춰진, 이행 가능한 권고로 이어진다.
- 조약기구 과정 동안 당사국에 대한 지원은, 당사국과 인권 관련 유엔시스템과의 사이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제기된 우려 및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건설적인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지원한다. 각 유엔기관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정해진 국가교섭자 팀과 같이 일하고 있으며, 조약기구 권고 관련 주제는 기술적 협력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 각 유엔기관은 시민사회 중에 특별한 지지기반이 있어서, 조약기구와의 대화 전과 후 모두, 조약기구 과정에 그들의 참여를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유엔기관들은 자기 임무와 관련된 조약기구의 결론 및 권고를 널리 공개하여, 이로 인해 일반 대중의 권리 인식을 제고한다.

- 유엔기관들은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권리에 관한 지역적 및 국제적 인권 기준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들이 조약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및 행동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유엔제도 및 조약기구제도 간의 향상된 상호관계는 유엔개혁과정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한다:

- ‘하나의 유엔(Delivering as One)’을 통해 유엔국가팀 지원을 단일화하고, 공동의 활동 및 대화를 추구한다.
- 유엔의 국가 프로그램 및 계획에 있어서 조약기구의 권고사항을 활용한다.

제안의 비용

업무방식의 개정과 관련된 제안은 추가적인 자원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국가 프로그램 및 업무 계획에 있어서 추가적인 영향은 각 유엔기구 및 유엔국가팀이 고려해야 한다.

권 고

조약기구에게

유엔이 조약기구 과정을 보다 잘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조약기구는 각각 맡은 임무 내에서 유엔 기구와의 다양한 교류 절차를 최대한 일치시키고, 국가별 서면 제출을 위해 공동으로 합의된 포괄적 지침을, 공동 제출 양식과 구두 보고를 포함하여, 개발하도록 권고한다.

유엔기구에게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다음의 방법으로 유엔기구의 조약기구 과정에의 관여를 촉진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다.

-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에 조약기구제도에 관한 최신의 관련된, 사용자 친화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보고일정 및 권고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하여 게재하여, 다른 유엔기관의 접근성과 정보의 활용을 촉진시킨다.
- 가능할 경우, 훈련 코스와 웹에 기반한 정보자료, 인권자문가 파견근무 등을 포함한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유엔 국가팀에 기술적 지원을 더 제공한다.
- 지침을 개발하고 기관 간 경험 및 교훈의 교류를 촉진하여, 조약기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기관 및 유엔국가팀 간에 일관된 접근방법을 강화시킨다.

본인은 유엔의 주재조정관, 유엔국가팀, 그리고 유엔기관이 다음과 같은 준비, 대화, 그리고 후속조치를 통하여, 역

량강화, 당사국과의 대화, 그리고 인권조약기구와의 주기적 관계를 통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조약기구의 보고 과정의 기회를 최대화시키기를 권장한다.

- 심의 준비를 위해, 유엔국가팀은 주재조정관 또는 지정된 선도 기관의 주도하에 당사국의 보고서 심의에 대해 이전 권고안의 이행에 있어 진전된 성과를 포함하여, 서로 협동하여 정보를 제공하기를 권장한다. 이는 개별적 기구가 주제나 특화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국가팀은 당사국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조약기구와의 대화에서 보고서 준비 및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자문, 정보,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 심의 이후에는, 권고를 번역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것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주재조정관의 주도하에, 유엔국가팀 및 유엔기관은 당사국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권고를 이행하도록 홍보하고 격려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유엔국가팀은 관련 권고안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유엔개발원조 프레임워크 및 유엔개발원조계획(UNDAF/UNDAP), 국가 분석, 전략, 프로그램 및 작업 계획에서 모든 조약기구의 관련 생산물을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수행한다.

당사국에게

유엔기관의 정부조직을 통한 정책수립 단위에, 유엔기관이 그 기관의 임무와 연관된 조약기구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시킨다.

필요한 경우, 국가보고서의 준비 및 우선적이거나 핵심적인 권고의 이행과 관련해서, 유엔국가팀과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요청하는 기술적 지원에 대응한다.



루체른 학술 자문 회의 (2011년 10월)

4.2.8. 조약기구,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간 통합적 교류 모델

본인은 조약기구들이 시민사회단체 및 국가인권기구와 관계 맺는 방법을 조화시키기 위해, 아래에 제시된 모델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배경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같은 국가행위자는 조약기구 보고과정과의 주기적인 관계에서 권고의 이행에 대한 정보제공, 사회적 인식의 증진, 후속조치 실행 등을 통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단체가 조약기구제도와 효과적인 관계를 맺는 데는 제한된 인식, 능력 및 자원, 조약기구와의 상호연관 방식의 다양함, 그리고 일부의 경우 당사국의 보복 의심 등을 포함한 여러 요소가 방해하고 있다. 더욱이, 각 조약기구가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어, 국가행위자도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신 매번 어떻게 개별 조약기구와 협력할 지를 배워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기구의 관점에서, 조약기구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서면정보 제출 및 구두 발표의 양식 및 시기)는 특히 국내 및 풀뿌리 시민사회단체의 조약기구제도 접근성을 낮춘다. 본 제안은 이 문제에 대응할 단일한 상호작용 방식-가장 좋은 사례에 근거한-을 시사한다.

제안 모델

본인은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기구와의 공식 회의를 공식적인 공개회의시간에 개최하고, 회의 시간 동안에 3시간을 2시간은 시민사회단체에, 1시간은 국가인권기구에 배분하라는 제안을 지지한다. 회의는 당사국 보고서의 심의 일정이 있는 주간의 첫째 날에 개최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1시간의 사적인 점심시간 브리핑은 당사국의 보고서 심의 전날에 개최한다. 이 모델은 이미 여러 위원회가 따르고 있다. 국가인권기구 또한 이러한 점심시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본인의 사무소는 여비와 참가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화상회의 같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조약기구 회기 보고과정 및 참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 당사자와 조약기구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것이다.

제안의 부가가치

이렇게 제안된 모델에 따라 조약기구와의 상호작용은 제도화될 것이다. 이는 위원회의 공개된 공식회의에서 열릴 것이므로,

- 발언은 공식적으로 기록된다.
- 통역이 제공된다.
- 당사국 대표가 자국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정보가 시기적절하게 제공되고, 이로 인해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공식회의의 특징인 극심한 시간제약을 고려할 때, 당사국의 보고서 심의 전날의 추가 점심시간 브리핑으로 보충하는 것은

- 보다 많은 단체와 국가인권기구가 위원회와 교류하고 따라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가 가능해지는데, 이는 서면보고서만 접수되었을 때나 공식 회의 시 시간 부족으로 제약이 있었던 부분이며, 따라서 심층토의가 가능해진다.
- 파트너들의 구두발언을 같은 주간에 배정하여, 여행일정을 보다 경제적으로 조정하도록 돕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일부 경우에는 점심시간 브리핑이 있기 일주일도 전에 공식회의 발언이 허용되고 있다.

조약기구와 파트너 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일치되어 보다 명확하고 단순해지며, 이로 인해 본 제도의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화상회의 제안과 합쳐서 시행할 경우, 당사국 파트너들의 잠재적인 참여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이는 조약기구 파트너들을 상당부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체들이 다른 위원회와 상호작용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업무방식을 배울 필요 없이, 조약기구와 상호작용하는 역량을 점차 키울 수 있게 할 것이다.

제안의 비용

본 모델은 추가적 자원의 소비 없이 종합 보고 칼렌다 및 현재의 할당된 자원을 이용하여 시행될 수 있다.

권 고

조약기구에게

상기 이해당사자들, 특히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기구와의 통합 상호작용 모델을 채택하고, 모든 보고과정 단계에서 시민사회단체 및 국가인권기구의 충분하고 포괄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당사국에게

조약기구에 참여하려고 하는 국가인권기구 및 국가 시민사회단체 행위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이해당사자들에게

가능한 경우, 최대 10페이지의 단일보고서 또는 30페이지의 공동보고서를 기한에 맞추어 보다 연계되고 집중된 방식으로 조약기구에 제출하며, 보고서가 번역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발언을 협력하여 조적한다.

가능한 경우, 공식회의 및 점심시간 브리핑에서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구두발언을 조정한다.

조약기구의 회기 동안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조약기구에 브리핑을 잘 하는 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보복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운동가,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조약기구가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하고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왔다. 보복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에는 조약기구를 포함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 이후, 위협이나 보복행위 사례에 관한 정보가 접수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조약기구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일치된 접근방식이 없으며, 아래에 제시된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이를 처리해야 한다.

제안

시민사회와 국가인권기구가 조약기구와 상호작용을 맺는 것을 보장하고, 조약기구와 관계한 후 보복으로부터 인권옹호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모든 조약기구가 위원들 중 연락담당관을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 및 국가인권기구가 그러한 보복의 사례가 생길 때 조약기구에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권 고

조약기구에게

조약기구 시스템과 관계한 인권운동가에 대한 보복 사례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 이는 조약기구 내 행동 추진체계를 보장하고, 연락담당관을 통하여, 특별절차 수임자나,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그리고 보복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등 다른 관련 시스템을 통한 일관성 있는 조치를 포함한다.

당사국에게

조약기구와 관계한 것 때문에 개인에게 행해지는 그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방지한다. 보복이 발생될 경우,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기소하며, 책임자들을 합당하게 처벌한다. 보복행위의 피해자들은 적절한 형태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



서울 (2011년 4월) 및 프레토리아 (2011년 6월) 시민사회단체 자문회의

4.3. 개인통보절차, 조사 및 국가방문의 강화

4.3.1. 개인통보에 관한 조약기구 공동의 실무그룹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 3월 9일자 서신을 통해 다른 조약기구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약기구 공동의 개인통보 실무그룹 설립을 제안했다. 실무그룹에서 나오는 권고는 해당 개인통보 담당 조약기구의 전체회의에 제출되어 공식 채택된다. 본인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조약기구와 협의하고 관련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배경

현재 2개 조약기구(자유권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개인사례의 논의와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권고안을 만들 목적으로 연간 총 5주간의 회의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고문방지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및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개인통보를 처리하며, 강제실종위원회도 개인통보가 도착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개인통보 절차의 증가로, 조약기구들이 주어진 권한에 맞는 범위 안에서 판례의 일관성을 가질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2006년 개혁 당시, 청원을 심사할 단일화된 기구가 제안된 바 있다. 현 제안은 조약의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011년 10월 청원에 대한 전문가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통보제도에 관한 합동 기구/실무그룹 설치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계획의 부가가치

- 보호에 관한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 및 조약기구 간 판례의 일관성 보장
- 재판 회부 가능성 및 모든 인권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
- 각 조약기구의 개별 전문성에 따른 보다 일관성 있는 결과물과, 이로 인한 당사국의 조약기구 견해 및 결정의 이행 촉진
- 통보를 담당하는 모든 조약기구의 일관된 업무방식 개발

제안의 비용

자유권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사용하는 기존의 5주간의 회의시간을 공동 실무그룹 회의 시간으로 변경하여 조약기구 당 한 명의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본 제안은 사실상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권 고

조약기구에게

제안을 검토하고 이에 찬성한다. 아니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검토 중인 사안에 관한 전문적 능력이 있는 조약기구의 자문을 허용하는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판례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

4.3.2. 절차규정과 업무방식의 적용 및 공동지침 채택과 관련된 우수사례 검토

보다 많은 개인통보절차가 수립되면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우수사례의 검토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통보의 처리를 위한 업무방식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본인은 또한 조약기구가 공동지침을 문서로 준비하여 모든 조약기구가 진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절차를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공동지침은 다음과 같은 공통의 실무를 포함할 수 있다.

- 인용 시 최종 결정에 가능한 한 해당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구제조치 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관습의 개정과 같은, 향후 유사한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권고를 포함한다. 가능한 한 구제조치는 실행방안이 측정 가능하고 처방이 되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보상, 복구, 만족, 배상 및 재발방지 보장 조치들, 입법 및 제도개혁 등의 적합한 조치를 통한 다른 형태의 만족할만한 법적 조치, 그리고 적절한 경우 조사 및 기소의 의무를 명시화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제안된 구제조치는 단기 및 장기 목표로 구성해서, 당사국이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단계를 명시할 수가 있다.
- 문제와 해당 인권이 유사한 성격을 지닐 경우, 의견 및 최종견해를 상호 참조하는 관행을 확대한다. 이와 유사하게, 지역체제의 관례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참고한다.
- 조약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기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 심사적격성과 인용의 분리에 관련된 요청에 관해 업무방식을 표준화시킨다.
- 임시조치에 대해 공통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며, 당사국이 임시조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 보호 조치를 포함시킨다.

조사절차가 점점 더 많이 수립되고 적용되면서,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처리하는 업무방식에 대한 우수사례를 검토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검토는 조사절차가 있는 조약기구가 공통적인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공통 가이드라인 문서 초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검토 사항에는 기밀 유지 규정의 적용, 조사를 개시하고 국가방문을 요청하는 심각하고 조직적인 침해의 패턴의 정도, 그리고 정보를 제출하는 단체들의 상호작용의 양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배경

2011년 10월 개최된 청원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들에 관한 관행, 즉 심사적격성과 인용 논의의 구분, 임시조치, 보호조치, 당사국이 기한을 지키지 않은 문제, 그리고 사례의 등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심사적격성과 인용의 구분에 관련된 업무 방식의 표준화, 임시조치 요청을 허용하는 관행의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그리고 제출기한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다.

고문방지위원회를 제외하고, 조사절차와 관련한 조약기구의 경험은 제한적이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그리고 사회권위원회도 조사절차가 있으며, 후자의 2개 기구는 각각의 선택의정서가 요구하는 수준의 비준에 도달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조사절차에 대한 공통적 접근방식은 조약기구, 당사국 및 여타 행위자가 거기서 발생하는 민감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안의 부가가치

개인정보 및 조사와 관련된 조약기구의 처리절차에 있어 지속적인 일관성과 법적 확실성이 확보된다.

제안의 비용

제안은 추가적 자원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권 고

조약기구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조사의 실시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에 관해 공통지침을 서면으로 발행한다.



포즈난 자문 회의 (2010년 5월)

4.3.3. 개인사례에 관한 조약기구 결정례 데이터베이스의 수립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제공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약기구 **개인사례별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원활히 운영되고 최신 업데이트 되도록 유지하며, 유엔 공식 6개 언어로 모두 검색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조약기구의 개인진정절차에 대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페이지를 재개편하여 접근성을 보다 높이도록 할 것이다.

배경

2011년 10월 개최된 청원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원활하게 운영되는 개인사례 판례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10년 6월부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조약기구 위원들, 당사국,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개인사례에 관한 조약기구 판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동일한 양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제안의 부가가치

- 개인통보 절차의 가시성 증가
- 조약기구의 개인사례 판례에 대한 연구 시설의 향상
- 판사와 변호사들에게 보다 용이한 접근성 제공. 법원이 점점 더 자체 판결에 대한 가이드로 삼기 위해 국제법 판례를 참고하는 추세임.

제안의 비용

이 사업에 따라 IT 계약직 및 데이터 입력 사무원을 우선 각각 9개월 동안 고용하고(추산 비용: 약 9만 3000불), P-3급 전담 직원을 연간 6개월 동안 배정한다(연간 비용: 10만 1000불).

권 고

당사국에게

이 제안에 대한 충분한 자원조달을 검토한다.

4.3.4. 우호적 해결

제안

2011년 10월 개최된 청원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조약기구에 의한 우호적 해결의 촉진을 위한 관행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조약기구가 개인통보 절차 내에서 우호적 해결을 위한 공간 제공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본인의 사무소는 우호적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조약기구를 즉각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

배경

조약기구를 기반으로 한 모든 개인통보 절차 중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와 이동권리협약 개인진정 선택의정서 만이 우호적 해결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는, 다른 조약기구들은 당사자들이 우호적 해결 과정에 들어갈 경우 개인통보의 심의를 중단할 수 있다.

제안의 부가가치

조약기구의 모순된 절차를 피하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우호적 해결)을 도출한다.

제안의 비용

제안은 추가적 자원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권 고

조약기구에게

사건의 해당 당사자들과 우호적 해결에 합의할 견해를 가지고 임하며, 이를 국제인권기준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를 조약기구의 절차 규정에 반영한다.

당사국에게

개인 사례에서 우호적 해결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조약기구의 권한을 받아들인다.

4.3.5. 고문방지소위원회의 역량 향상

제안

본인은 고문방지소위원회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안, 즉 위원수를 더 늘리고 매년 더 정기적인, 그리고 자문을 하고 후속조치 방문을 할 수 있게 할 제안을 지지한다.

배경

고문방지소위원회 업무의 핵심은, 다른 기존 조약기구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고문 방지협약 선택 의정서 1조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다. 또한 소위원회의 핵심 임무는 선택의 정서의 발효 후 1년, 또는 비준이나 가입 이후에 각 당사국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국가예방기구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선택의정서의 비준 및 가입 건수의 급격한 증가(63개 당사국)로, 2011년 1월 이후 위원수와 관련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문방지소위원회는 2011년에 정기 현장 방문을 불과 3번만 실시했으며, 2012년에는 3번의 정기방문과 국가예방기구에 대한 3번의 자문 방문만을 계획한 바 있다. 고문방지소위원회의 이러한 저조한 방문 횟수로는, 현재의 정기 예방 방문은 각 당사국 당 21년에 한 번 씩만 실시하게 될 것이고, 이는 조약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해당 역량과 방문 횟수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정기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는 더더욱 불가능할 것이다.

제안의 부가가치

- 고문방지소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고문방지소위원회의 현장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고문의 발생을 예방한다.
- 고문방지소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완전하게 기능하는 국가예방기구의 설립을 지원하고,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권고를 통해, 고문을 보다 강력하게 예방한다.

제안의 비용

현재 고문방지소위원회의 임무는 P-4 1명, P-3 2명, 그리고 일반직원 2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지원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복합적이고 강도 높은 현장 방문을 조직해내는 일을 포함하여(정기방문, 자문을 위한 국가예방기구 방문, 후속조치 방문 포함), 확대된 고문방지소위원회의 수립 이후에 축적된 경험에 의하면, 보다 많은 국가방문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2명의 추가 직원(P-3 1명과 P-2 1명)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간 36만 1000불이 소요된다. 직원은 방문할 국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방문 준비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 당국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연락하며,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관련 유엔기구와 연락을 취하고, 방문을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현장 방문, 방문 보고서 초안 작성, 그리고 방문을 마치고 난 후 국가 당국자들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과의 후속 조치 등에 있어서 위원들을 보조한다.

이러한 자원은 당초 사무총장이 2010년 요청한 적이 있으나, 이는 그 당시 행정예산문제 자문위원회와 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⁴¹⁾

권 고

당사국에게

일반예산 상으로 고문방지소위원회의 역량 증대를 지원한다.

41) 개편예산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A/65/500) 및 행정 및 예산상의 질의 자문 위원회 보고서(A/65/574) 참조.



고문방지소위원회의 국가방문 및 제네바 회기 중 휴식

4.4. 조약기구 위원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후보지명 및 선출 과정은 각 조약기구의 전문성 및 효율성에 있어 최상의 중요도를 지닌 결정적 요소이다. 이와 유사하게, 조약기구 권고가 지녀야 할 권위 및 존중의 정도는 조약기구 위원들의 실제 및 인식되는 독립성과 공정성의 수준에 달려있다. 선출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은 조약기구 위원들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조약기구들이 지침을 채택한 자발적인 노력을 지지한다. 또한 본인은 당사국이 조약기구 위원의 후보로 전문가를 지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어진 각각의 환경 속에서, 국가 정책과 절차를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 본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이런 점에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본인은 모든 당사국이 잠재적인 조약기구 후보자나 피지명인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개된 공적 공간을 제안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특히 조약기구 전문가의 선출 과정과 전문가에 대한 기대 등에 관한 정보 도구를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4.4.1. 인권조약기구 위원의 기능행사에 있어서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한 지침

조약기구 의장들은 제23차 회의(2011년 6월 30일-7월 1일)에서, 조약기구 구성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지침을 준비해서 2012년 6월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차기 회의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의장들은 이 지침이 독립성에 관한 기존 특정 조약기구 지침을 참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한 지침을 보유하는 것의 가치는 조약기구 강화에 관한 다양한 자문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배경

몇 개 조약기구는 위원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도구를 개발했다. 대부분의 조약기구는 그

절차규정 안에 이를 위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자유권위원회는 1999년에 별도의 지침을 채택했다(annex III of A/53/40, vol. I).

계획의 부가가치

조약기구 위원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해 자체적인 규제지침을 보유하는 것은 인권조약기구 제도가 도달 가능한 최상의 독립적인 전문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 독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그러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조약기구 제도의 궁극적 목표, 즉 당사국이 인권조약의무를 준수하는데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존중받는 평가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이 결정은 전문가들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이해의 충돌을 포함하여, 모든 조약기구의 위원 구성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이해 및 접근을 촉진한다.

제안의 비용

본 제안은 추가적 자원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권 고

조약기구에게

조약기구 위원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고 이러한 지침을 각 기구의 절차 규정안에 완전하고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함시킨다. 모든 조약기구 위원들은 그들의 임기동안, 그리고 조약기구 공식 회기가 아닌 때에도 이러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위원으로서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각 조약기구 위원은 엄숙한 선서를 할 때 지침을 존중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모든 조약기구는 이러한 지침을 적용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4.4.2. 조약기구 전문가의 후보추천과 선출에 관한 국가정책 및 과정에 대한 제안

본인은 전문가를 조약기구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국가정책과 과정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국가적 시도는 제네바와 뉴욕에서 열린 자문회의에서 국가가 제시한 여러 우수사례를 참고로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1. 관련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증명된 기록이 있고(관련 업무 경험, 출판 및 기타 업적 등), 조약 기구위원의 임무와 관련해서 모든 범위의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별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지명한다.
2. 정부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여타 다른 지위라도 압력이나 이해의 충돌에 노출될 수 있거나, 개인 또는 조약기구제도 전반의 독립성 차원에서 후보자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의 또는 인식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전문가는 지명 또는 선출을 피하고, 선출된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서 사퇴한다.
3. 가장 최근의 조약은 최대 2회까지 임기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위원회 임기 횟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한다.

본인의 사무소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가 지명에 기여하는 국가정책 및 과정에 대한 당사국별 우수사례 모음집을 작성하고, 이를 일반에게 제공할 것이다.



국가인권기구 마라케시 자문 회의 (2010년 6월, 모로코)

배경

조약기구위원의 지명 및 선출 과정은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권한이다. 독립성과 공정성 인식을 지킬 필요성은 국가 차원에서의 지명절차에서부터 시작된다. 조약기구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과정에서 조약기구 전문가의 지명에 관한 많은 국가사례가 참고되었다.

1997년 이후, 제8차 연례 조약기구 의장단회의에서 거듭 권고한 것은 “인권조약의 당사국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해당 조약상의 독립 전문가의 의무를 곧바로 수행할 수 없는 직위를 가진 자를 조약기구에 지명 또는 선출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의장단은 또한 조약기구 임무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전문성의 중요도, 균등한 지역적 배분의 필요성, 양성사이의 적절한 균형 추구, 그리고

조약기구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후보자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것을 촉구했다”.

〈현 인권조약기구의 구성 분석 데이터〉

모든 위원회				
성별 위원 분포	지역별 위원 분포	모든 조약 당사국의 지역별분포	실무언어	현 직위
여성: 65	아프리카: 43 (25%)	54개 국가/362건 비준 (67%)	아랍어: 21	학계: 51 (30%)
남성: 107	아시아: 29 (17%)	54개 국가/306건 비준 (56%)	중국어: 5	컨설턴트/자문: 19 (11%)
	동유럽: 22 (12%)	23개 국가/171건 비준 (74%)	영어: 152	외교관/정부 관료: 31 (18%)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34 (20%)	33개 국가/240건 비준 (73%)	불어: 82	판사/변호사: 25 (14%)
	서유럽: 44 (26%)	29개 국가/202건 비준 (70%)	러시아어: 15	국회의원: 3 (2%)
		9대 핵심 조약 및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총 비준건수: 비준 가능한 1,930건 중 1,281건 비준	스페인어: 52	NGO: 15 (9%)
		(비율%) 계산법: 국가수 × 조약수(10) ÷ 비준수)		국가인권기구: 13 (7%) 퇴직 유엔 직원: 1 (1%) 퇴직 외교관/정부 관료: 11 (6%) 퇴직 판사/변호사: 3 (2%)

제안의 부가가치

- 국가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포용적인 방법으로 지명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요구되는 전문성에 대해 증명된 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가장 유용하다.
- 자격 있는 많은 후보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임기제한을 기반으로 할 때,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전문성을 창출하게 된다.
- 특정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지 않는 것은 잠재적인 이해의 충돌을 막고, 독립성 및 공정성의 관점을 보호하며, 조약기구제도에 대한 신뢰와 그 결과물의 권위를 향상시킬 것이다.
- 광범위한 당사국들의 우수 사례가 다른 당사국에게 귀감이 되어, 요구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명한 과정을 수립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제안의 비용

본 제안은 추가적 자원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권 고

당사국에게

조약기구 위원 후보자로 전문가를 지명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이때 조약에 명시된 요건에 맞추고 위에 언급된 제안 내용을 참고한다.

인권조약기구 후보자의 지명과 관련하여 우수사례로 판단하는 것을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공유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러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4.4.3. 기대, 가용성, 요구되는 업무량에 관한 안내책자 및 조약기구선거 통합 웹사이트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약기구위원회와 관련된 선거과정, 조건, 그리고 위원에게 요구되는 다른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사실과 정보를 담고 있는 안내책자를 발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 문서는 조약기구 전문가에 대한 실제적인 기대치와 업무량을 강조할 것이다. 이는 국가 지명절차와 그 뒤에 진행되는 선거에 앞서서 당사국과 모든 관심 있는 잠재적 후보자를 위해 제공될 것이며, 일원화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조약기구선거 웹페이지에 게재될 것이다. 이 웹페이지는 조약기구 내 공식과 다가올 선거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명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안내서는 조약기구의 신임 및 현 위원들의 기능 및 임무수행에 관한 모든 필수적 실용정보, 즉 절차, 업무방식, 그리고 구성원이 가질 권한과 기대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이다.

배경

지명과정의 질은 조약기구의 구성에 있어 결정적 요소이며, 그 결과 각 조약기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극히 중요한 요소이다. 지명과정은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동시에 독립성과 가용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후보자를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공식이나 다가올 선거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는 것이다. 더욱이 지명하려는 국가와 관심 있는 후보자 모두가 조약기구 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업무의 성격과 양에 대해, 회기의 수와 기간, 회기 전 실무 그룹 참여의 중요성, 국가 방문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어떤 위원은 본국에서 직업적 업무와의 일정 충돌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회기 전

실무그룹 또는 전체회의에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결정이 연기되고, 이로 인해 회의시간이 낭비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제안의 부가가치

직책의 요구조건에 대한 보다 나은 정보는 국가가 어느 후보가 가장 추천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또한 관심 있는 개인들이 조약기구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업무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 시기적절하고 접근이 용이한 정보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관심있는 개인들이 지명 및 선거과정을 준비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 이는 국가 차원에서 더 넓은 잠재적인 후보군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당사국에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제안의 비용

본 제안은 추가적 자원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4.4.4 모든 당사국이 조약기구의 잠재적 후보자나 피지명인을 공고하기 위한 공개된 공적 공간

본인은 모든 당사국이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조약기구의 잠재적 후보자나 피지명인을 소개하기 위한 공개된 공적 공간을 구축하지는 제안을 지지한다.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성별, 지역, 그리고 법제도의 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반영하는 5명의 전 조약기구 위원들이 이러한 공간을 운영할 것이다. 객관적인 과정을 보장하고 본 제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장단회의가 이러한 전문가들을 선택할 것이다.

배경

관련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증명된 기록이 있고 조약기구위원으로서의 임무와 관련해서 전면적인 책임을 질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선발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각 후보자의 자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성별, 지역, 전문분야, 그리고 법제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필요성을 수반한다.

제안의 부가가치

이 과정은, 간단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조약기구위원 자리에 대해 관심가진 후보자 또는 실제 피지명인의 자격조건에 대해 당사국에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더욱이 이는 개발도상국 출신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본 제안은 조약기구시스템의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과정을 보장함으로써 질적으로 보다 향상된 지명 결과가 보장될 것이다.

제안의 비용

본 제안은 포럼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P-4급 직원 1명과 이를 보조하는 일반직 직원 1명을 연간 총 6개월 동안 필요로 할 것이다 (비용: 연간 21만불).

권 고

당사국에게

각국의 잠재적인 후보자나 피지명인이 선거 준비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 공간을 지명과정의 핵심적 요소로 활용한다.



포즈난 선언서 개시 (2011년 3월, 제네바)

4.5. 조약 이행 역량의 강화

4.5.1. 조약기구의 후속조치 절차

본인은 모든 조약기구가 후속조치 절차를 철저히 재검토할 것을 권장한다.⁴²⁾

배경

조약기구 권고의 이행은 당사국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진전 상황에 대한 검토는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원칙에 내재된 것이다. 모든 조약기구는 당사국이 이전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안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차기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4개 위원회⁴³⁾는 최종견해에 포함된 특정 권고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보고서 제출 사이에 최종 견해 채택 후 1~2년 이내에 국가가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식 절차를 채택하였다. 현재 적어도 한 개의 다른 조약기구가 이러한 후속조치 절차 채택을 고려 중이다.⁴⁴⁾

더욱이 인권조약기구의 제12차 위원회간 회의 및 제23차 의장단회의는 정기보고서와 관련하여, 이전 심의 이후 당사국에 의한 진전 상황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이전의 우려사항 및 권고가 새 최종견해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⁴⁵⁾ 이는 정기보고서 심의와 관련해서 조약기구의 근본적인 후속조치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이와 유사하게, 개인통보를 검토할 임무를 가진 모든 조약기구는 관련 조약이 위반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당사국으로부터 후속조치 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제안의 상세한 내용

1. 종합 보고 칼렌다가 채택되면, 조약기구의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절차가 필요할 경우는 줄어들 것이다. 다음 보고서가 일정대로 심의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후속조치 절차를 사용하는 조약기구는 회기 사이에 추가정보를 요청해야 할 압박을 덜 받을 것이다.

42) 고문방지 소위원회 후속조치 절차는 본 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3) 자유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

44)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45) A/66/175, 제25항

이는 여러 개의 조약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규정의 경우에 특히 적용되는데, 한 조약기구가 가진 긴급한 관심사에 대해 당사국이 2~3년 이내에 다른 조약기구에 의해 그 사안에 대해 심의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현재와는 달리, 그 사안들에 대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덜 긴급하게 될 것이다.

2. 종합 보고 칼렌다의 채택 여부에 상관없이, 후속조치 절차는 간소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최 종견해 및 개인통보절차에 대한 후속조치는 최소한 조약기구들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약기구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공동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권고의 이행을 위해 조약 기구간의 일치된 행동, 예를 들면 유엔국가팀의 지원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포함하여 권고의 이행을 위한 공동의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이들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당사국의 법 안 채택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할 수도 있다. 이들은 다른 인권 메커니즘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당사국이 다음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특정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당사국이 계속해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사례를 검토한 결과 그 나라에서 침해가 반복되었을 경우, 특별절차 수임자에게 국가방 문을 제안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제안의 부가가치

조약기구들 간 후속조치 과정의 개선 및 통합은 당사국이 조약기구제도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강화시키고, 조약기구 보고가 일회성 활동이 안 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지속적인 관계는 국가 내 제도 적 기억력을 구축하고, 조약기구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의 보고, 이행, 그리고 관계를 위한 상시적인 국가 메커니즘의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안의 비용

후속조치 절차는 직원 비용이 많이 들며, 현재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나, 비용 문제는 조약기구가 어떻게 본 절차를 발전시키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권 고

조약기구에게

현 후속조치 절차의 양식을 재검토해서 이를 단순화하고 개선하며, 특히 공통지침의 채택을 통해 이를 이룬다.

개인통보에 대한 것을 포함, 조약기구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메커니즘 및 규제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국가에 제안한다.

당사국에게

개인통보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한 조약기구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에는 법률이나 국가 인권전략, 또는 행동계획의 채택을 포함할 수 있다.



당사국들의 요청에 의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역량 강화 활동: 대표로 구성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후속조치에 관한 소지역 세미나 정부, 국가인권기구, 및 서아프리카 보츠와나, 나미비아, 서아프리카, 프레토리아 잠비아 및 짐바브웨 (2011년 6월)의 시민 사회 및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국가 권고안의 이행 강화에 관한 서부 발칸 지역 국가 실무회의, 세르비아, 벨그레이드의 조약기구 및 특별 절차 (2011년 11월/12월)

4.5.2. 일반논평/일반권고의 작성을 위한 조율된 자문과정

일반논평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가의 관행에 근거해서 조약의 규정에 대해 국가와 여타 이해당사자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에, 조약의 범위 및 목적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는 각 국가들이 약속한 의무를 완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인은 모든 조약기구가 일반논평을 작성하는 동안 당사국, 유엔기구,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 단체에게 그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일반토론의 날에 참여를 요청하는 등 일치된 자문 절차를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본인은 또한 모든 접수된 내용은 각 조약기구의 웹사이트에 게재될 것을 제안한다.

배경

모든 위원회는 “일반논평”이나 “일반권고”의 형태로 당사국이 지닌 의무의 내용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설명하는 관례를 채택하였다. 이는 점차 길어지고 복잡해졌으며, 현재는 조약의 특정 규정이나, 조약의 조항과 특정 주제/문제 간 관계에 관하여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기구들은 일반논평을 발간하면서, 당사국 보고서의 심의나 개인통보와 관련하여 채택한 경험을, 조약의 추가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에게 이득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모든 조약기구들은 작성 과정동안 위원회 외의 전문가의 자문을 정기적으로 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위원회는 일반토론의 날 또는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며, 여기에 국가는 대부분의 경우 참관자로 초대된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논평/일반권고의 초안이 웹사이트에 게재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는다.

제안의 부가가치

이 제안은 조약기구제도에 대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접근성, 투명성, 그리고 아이디어의 상호교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논평의 질을 높이고 이로 인해 다양한 견해 및 경험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안의 비용

본 제안은 추가적 자원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권고

조약기구에게

각 조약기구는 일반논평 작성의 지문 단계 동안 이해당사자들과의 일치된 상호작용과정을 채택해야 하며, 당사국, 유엔기구, 국가인권기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허용하고 이러한 의견이 해당 조약기구의 일반논평/일반권고 작성 웹사이트에 게재되도록 한다.

4.5.3. 보고 관련 역량강화 활동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약 보고 및 개인통보에 대한 국가 또는 (소) 지역 차원의 역량강화 활동을 위해 축적된 경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러한 활동은 전통적으로 정부, 사법부, 그리고 의회의 대표단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여타 국가 이해당사자나 지역 인권단체에도 혜택을 주고 있다.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전략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당사국이 보고의무를 다 하도록 하는데 있어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당사국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강화 전략을 더욱 다듬을 것이다. 이는 그것이 국가 차원에서 소 유되고 적절하게 통합된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9대 핵심 국제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의 개별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술적 지원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이는 다양한 정부 부처와 국가 당국의 업무 분야,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및 유엔, 특히 유엔국가팀의 각 특성화된 역량이 개발되거나 강화되는 것을 요구한다. 각 조약은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각에 대해 국내 의식제고, 훈련과 역량강화 과정을 필요로 하며, 국내 행위자들 가운데 각자의 고객집단을 종종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견으로는 지속가능한 보고와 전문성을 유지시키고,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4.5.4. “상설 국가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의 수립” 제언 참조) 조약기구로부터 충분히 혜택을 받도록 국가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적절할 경우,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메커니즘의 수립이나 강화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특별절차 및 조약기구-이 5년의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수의 국가에 대해 평균적으로 200-500개 채택), 이러한 전략은 보고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때 일치된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다. 국가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이행을 위한 국가 체계/정책/행동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다양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으로부터의 권고를 종합하는데 있어서 최신 업데이트된 도구인 세계인권색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활동

국가의 보고의무가 증가하고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본인은 조약기구 보고를 위해 필요한 관련 기술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대로 종합 보고 칼렌다에 맞게 조정되어, 최대한 제공되도록 할 것이다.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잘 이용하기 위해, 최빈국, 내륙개발도상국, 도서개발도상국, 자연재해 또는 무력갈등에 취약한 국가, 그리고 상설 국가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 또는 강화하기로 결정한 국가로부터의 요청에 우선순위를 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강화 활동의 보다 지속가능한 효과를 보장한다.

조약기구 전문가를 이러한 활동의 훈련가로 포함시키는 현 관행은 지속되고 강화될 것이며, 국가 인권기구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인권기구도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활동은 유엔국가팀과 유엔 현지조정관, 그리고 그들을 통하거나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관련 개별 유엔기구와의 동반 관계를 통해 진행하여 모든 유엔기구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배경

1990년대 초반 이후, 본부는 연간 평균 20건 이상의 보고 역량강화를 위한 요청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⁴⁶⁾, 이중 다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여타 유엔 현장사무소나 기구(UNDP, UN Women, UNICEF 또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국)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2003년에서 2009년 사이,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을 통해(총 약 400만 유로), 본인의 사무소는 국가 행위자에게 인권조약기구 시스템에 보고하고 협력하는데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30개 국에서 실행했다. 대상은 국가, 그리고 특히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미디어였다.

더욱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여러 현장사무소는 국가 및 여타 이해당사자들에게 국가가 권고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조약 업무 및 조약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직접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점점 더 유엔국가팀 및 현지조정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리고 개발기금(EU 또는

46) 2008년 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조약국은 다음의 국가(이 목록에는 국가 또는 지역 차원 또는 여타 참석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직접적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다)의 조약 작업 분야의 능력 배양을 지원했다 (주로 1-2개 조약에 중점, 일부 경우에는 개인통보절차에 중점): 아르메니아, 바레인(2회), 벨라루스, 벨리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공화국, 중국(2회), 콩고,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민주 콩고 공화국, 유럽 지역, 유럽연합, 마케도니아 구 유고 슬라비아 공화국, 잠비아, 독일,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2번), 요르단, 카자흐스탄 (2회),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몰디브, 말리(2회), 모리타니와, 멕시코, 모로코, 니제르, 파나마, 페루, 필리핀, 카타르,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2회), 세이셸, 시에라리온, 서아프리카(2번), 스와질란드,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2번),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베트남.

UNDP에 의한)을 포함한 지역기구 및 공여자 공동체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브라티스라바(Bratislava)에 위치한 UNDP 지역센터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후속조치를 위한 금융 기관을 설립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아주 최근에 조약기구, 특별절차, 그리고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역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그로 인해 모든 국제인권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을 모색했는데, 이는 우수사례의 공유를 장려하고, 다양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나오는 권고를 묶고, 우선순위를 매기며, 통합해서 국가 차원의 후속조치 전략으로 만들도록 지원하는 방법론적이고 기술적인 도구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⁴⁷⁾

제안의 부가가치

역량강화 활동은 국가의 전문성과 역량의 구축 또는 강화에 기여하며, 따라서 조약 보고 준수 및 궁극적으로 그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국가 이해당사자들 간에 대화를 촉진시키고 지원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행위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제안의 비용

역량강화 활동은, 보고 훈련 워크숍을 포함해서, 장소와 형식, 그리고 참가자의 수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소요된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예산 규모에 따라, 기술적 지원 및 역량강화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주재하는 국가나 본부에서 사무소의 기존 사업계획 내에서 예견할 수 있다. (또한 조약 비준 및 보고를 포함해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권고에 관한 후속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신탁 펀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47) 조약의 기구의 국가 이행에 관한 권고안, 특별 절차 및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강화를 위한 3개의 지역회의가 2011년 3월 브뤼셀에서 17개 유럽의 국가의 정부, 국가인권기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위해 개최되었다(알바니아, 사이프러스, 체코 공화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몰타, 전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 스위스 및 영국). 서양 발칸 국가의 경우(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및 터키) 벨그레이드에서 2011년 12월, 남부 카프카스의 국가의 경우(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몰도바, 조지아 및 우크라이나) 트리빌시에서 2012년 1월,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우(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비슈케크에서 2012년 4월 개최되었다.

권 고

당사국에게

보고의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국가는 이런 점에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기술적 조력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의 수립 또는 강화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계속 요청하도록 권유한다.

국가는 관련 주무 부처를 통한 적절한 조정 및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으로부터의 권고를 분석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세계인권색인을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국가의 보고의무를 준수하고 조약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데 있어 국가를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강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국가가 계속하도록 권유한다.

4.5.4.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

본인은 당사국에게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 또는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시기적절한 보고 및 조약기구의 권고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조정을 향상시키는 것, 둘 다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은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성, 조정, 일관성, 그리고 시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인권색인 데이터베이스의 지원을 받아,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은 모든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를 주제별 또는 사업별로 (이를 이행하는 책임기관 별로) 더 분석, 분류하고, 권고의 이행 관련 행위자를 파악하며, 그들을 전 과정 동안 지도해야 한다. 본 메커니즘은 또한 보고 및 이행 과정에 관한 협력을 위해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정기적인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 의회 내에서는 적절한 상임 위원회 또는 유사한 기구가 설립되어, 권고, 특히 입법적 개혁에 관련된 권고의 국내 이행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본 메커니즘은 또한 사법부 구성원과 연계하여 조약기구의 권고에 대해 알려주고, 국제 인권법과 관련된 사법적 결정을 수집하고 전파해야 한다.

국가가 그 나라에 적합한 상설 국가 메커니즘을 기획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사무소는 이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 연구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본 사무소는 또한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요청이 있을 시 유엔국가팀을 지원할 것이다.

배경

조약기구 제도의 성장과 2008년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메커니즘의 수립은 보고서 제출 수와 당사국이 이행할 권고 수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초래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국가들은 조약기구 및 여타 인권 메커니즘으로부터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을 주도, 조정, 협의, 모니터링하고, 정기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영구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였다. 더욱이 어떤 국가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모든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국가들은 보고서 준비를 위해 설립되었다가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해체되는 임시 위원회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

제안의 부가가치

효과적인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은 국가가 유엔인권제도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혜택을 얻도록 역량을 강화해서, 인권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특히, 이러한 메커니즘은,

- 임시적인 초안 작성 위원회와 비교할 때, 국가 담당부처 내의 인권에 관한 전문성 및 제도적 기여력을 상당히 강화시킬 것이다.
- 조약의 보고와 이행 분야에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유엔제도 내 다른 행위자가 요청하는 기술적 협력 활동을 위한 자연스러운 대상이 될 것이고, 이는 국가 내 지식 및 전문성의 축적을 가능하게, 그리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부터의 기술적인 협력 제공을 합리화할 수 있게 한다.
- 국가가 다양한 국제 보고의무를 준수하도록, 특히 매년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모든 국제 메커니즘을 위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종합 보고 칼렌다 하에서, 합리적인 마감기한과 오랜 사전준비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준다.
- 지속적인 이행 노력의 조정자로서 봉사하게 되며, 종합 보고 칼렌다를 따를 것을 당연히 권장하고, 일원화된 약식 보고절차를 택한 국가들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 이 과정은 어느 조약기구든지 다음 보고주기는 이전의 주기에서 채택된 권고의 이행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될 것이다.
- 조약제도 전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공통핵심 문서 업데이트 및 세계인권색인과 여타 국제기구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제출 준비에 도움이 되는 도구의 활용에 있어서 국가행위자의 훈련을 포함한다.

- 또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및 지역 보고의무에 대한 초안을 작성할 메커니즘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각국이 종합 보고 칼렌다 속에 통합할 수 있다.
- 조약 하의 개인통보제도나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통보제도에 대응하는 담당 부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제 또는 지역 인권기구 및 메커니즘에 대한 중앙 국가교섭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제출되는 보고서의 일관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권고 및 그 후속조치 이행에 있어서의 일관성도 보장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여러 제안들과 같이 실행된다면, 이러한 메커니즘은 국가 수준에 최대한의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즉, 종합 보고 칼렌다 하에서 합리적인 속도의 마감기한에 맞춰 보고활동에 지속적인 계기를 확보하고, 이는 약식 보고절차를 통해 간소화되고, 이후 조약기구와의 대화를 비용의 발생이 미미하거나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화상회의를 통해 함으로써 전문성을 수도로부터 끌어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기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엔제도를 통해 기술적인 협력을 받고, 매년 새로운 임시 초안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인권 법률 및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메커니즘은 다양한 초안 작성 소위원회의 핵심적 중심 기관—또는 핵심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개별 보고서에 적합한 다양한 인력의 전문가(예를 들어,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의 경우 국경 통제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 및 출입국 공무원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의료, 교육, 법, 그리고 다른 분야의 경우, 이주민 담당부서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를 유치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은 종합 보고 칼렌다에 따라 해당 조약기구와의 대면 대화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모든 조약기구가 권고 하듯이, 정부는 모든 국가 부문—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까지—의 상시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가치 있는 정보와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학계도 참여시켜야 하는데, 메커니즘 내에서 이들을 대표하는 구체적인 단체들은 처리할 사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국가 초안작성 메커니즘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대부분의 조약기구가 권고하듯이,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국가보고서

트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는 연구 및 초안을 책임지는 부처 간 초안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한다. 그러한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다룰 주요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협의와 국가차원의 논의를 시작하도록 지시를 받을 수도 있다. 보고서를 위해 필요한 연구는 학술 기관 또는 컨설턴트에게 위탁하거나, 국가인권기구와 전문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지만, 최종 편집에 관한 권한은 유지할 수 있다. 근년에는 보다 많은 당사국들이 정부 이외의 이해당사자 대표들을, 단순히 정보제공자로서 뿐만 아니라 초안위원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제안의 비용

본 제안은 추가 자원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당사국의 요청에 대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11년 역량강화 활동: 카보베르데, 온두라스, 그리고 세네갈

권고

당사국에게

- 당사국은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경우 법에 근거하여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 담당기관, 특히 조약기구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이 조약기구,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및 특별절차에 대한 국가의 모든 국제적 및 지역적 인권 보고의무에 대응할 책임을 부여하고, 뿐만 아니라 그 권고의 이행을 조정하는 책임도 부여한다.
-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이 조약기구와 다른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의 개인통보절차에 대응하도록 책임을 부여한다.
-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이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행위자들, 학계를 포함한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체계적인 참여를 위한 방식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책임을 부여한다.

유엔행위자들에게

관련이 있을 때마다, 유엔국가팀은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의 수립 또는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4.6. 조약기구의 가시성 및 접근성 향상

정도는 다르지만, 조약기구는 국내에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성과의 활용 또한 너무 제한적이다. 아래의 제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현대 정보기술뿐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보다 잘 활용해서 조약기구가 수행하는 업무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4.6.1. 조약기구의 접근성 및 가시성을 국가적 수준에서 향상시키기 위한 웹캐스팅 및 화상회의

본인은 조약기구의 모든 공개회의가 웹캐스팅을 통해 방송되어야 하고 조약기구가 화상회의 시설 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제안을 지지한다.⁴⁸⁾ 이러한 제안이 실행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대중의 보다 손쉬운 접근을 위해 웹사이트에 조약기구 회의 오디오 파일을 게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배경

조약기구는 접근성, 협력, 그리고 참여의 증진을 포함하여, 그들의 업무를 촉진하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개회의에 대한 웹캐스팅 서비스 및 화상회의 기술을 제공해 줄 것을 유엔에 거듭해서 요청했다.

2006년 이후 임시적으로 웹캐스팅 된 인권이사회의 경험은 투명성과 참여, 둘 다의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널리 받아오고 있다.

화상회의 기술을 사용할 경우 이는 모든 보고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회기 동안 당사국의 화상회의 시설 사용에 대한 수요가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가능한 경우 사무국은 이러한 추세에 긍정적으로 대응하여, 몇몇 당사국에게 대표단 외에도 수도에 있는 전문가가 상호대화 동안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시설은 조약기구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화상회의 및 연결 장치는 팔레 월슨의 회의실에는 전혀 없고, 팔레 데 나시옹(제네바)에도 몇 개의 회의실에만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48) 웹캐스팅 및 영상회의는 서로 다른 제안이나, 일부 기술이 중복되어 같이 논의되고 있다.

웹캐스팅 서비스는 유엔 공공정보국의 책임에 속하며, 이는 유엔 본부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해당 자원을 전적으로 지원해 왔다.

웹캐스팅

투명성, 동일한 대우, 그리고 비차별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조약기구의 모든 공개회의가 웹캐스트 되어야 한다고 제안된 바 있다(즉, 연간 약 903 시간, 또는 301건의 공식 회의⁴⁹⁾). 이는 국가보고서의 심의, 일반토론의 날뿐만 아니라 일반논평의 초안에 관한 토론을 포함한다.

현재의 임시 웹캐스트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유엔 본부에 회의 진행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내는 것과, 외부 서버에 회기/발언자별 영상파일을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 각 비디오 파일은 보관 및 검색을 위한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 추가된다. 웹캐스팅은 일반적으로 발언자의 언어 및 영어로 제공된다.

제네바에 조약기구를 위한 웹캐스트 역량을 구축하려면 카메라 설치, 회의실 안에 오디오/통역 시스템과의 통합, 뿐만 아니라 케이블, 컴퓨터 장비, 소프트웨어의 설치 그리고 파일보관이 추가로 가능한 서버 용량이 있어야 한다. 현재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는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또는 인력 면에서 그러한 기능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인권이사회에 제공되는 모든 웹캐스팅 서비스는 임시적 조치이다.

제안의 부가가치

새로운 기술은 가시성과 상호작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영향력, 주인의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집행력의 향상 면에서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

조약기구의 공개회의에 대한 웹캐스팅은 당사국과 조약기구 간 대화에 대한 접근성과 가시성을 상당히 향상시키고 모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주인의식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본인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내에서 조약기구 회의 웹캐스팅을 통해 지식을 전수하고 각 사회에서 젊은 세대를 참여시켜 권리 및 책임에 관한 고양된 토론을 나누면서 큰 이득이 있다고 본다.

49) 이와 비교하여, 자유권위원회 회의 가운데 1년에 약 26주는 웹캐스트로 진행된다.

웹캐스팅은 조약의 규정 및 조약기구 권고의 이행에 대한 후속조치 및 실행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고 동시에 공공 정책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것이다.

이는 또한 국가공무원과 권리보유자의 훈련, 교육, 역량강화를 담당한 사람들이 웹캐스팅을 영구적이고 재생 가능한 훈련 및 역량강화 도구로 활용하고, 대표단이 건설적 대화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공한다.

제안의 비용

유엔 제네바 사무소 및 공공정보국 정보서비스의 책임 아래, 모든 조약기구 회의의 웹캐스팅을 가능하게 할 영구적인 웹캐스팅 역량 구축은 시설/장비 비용으로 약 70만불, 연간 유지비 약 90만불이 소요될 것으로 2008년에 추산되었다. 이후 기술의 변화를 고려할 때, 그러한 역량을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비용 절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전에 검토한 내용은 필요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이는 회의록을 생성하기 위한 비용보다는 훨씬 더 낮을 것이다. 향후 회의내용에 대한 기록이 자동으로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약기구는 회의록을 웹캐스팅으로 대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웹캐스팅은 비용 절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화상회의

웹캐스팅 목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는 화상회의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때 화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추가 장비는 각 회의실에서 발언자를 보여주기 위한 모니터이다.

화상회의의 주요 목적이 여행경비와 관련 비용을 줄이고, 국가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조약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라면, 화상회의 시스템은 USB 웹카메라와 같은 몰입형 원격회의 시스템과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안의 부가가치

- 이는 당사국 대표단이 수도에 있는 대표들을 추가로 조약기구에 참여시키고 전문가의 전문성과 지문을 통한 이득을 얻으며, 이로 인해 조약기구 회기에 대표단의 참여를 강화시킨다.
-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향상된 전문성은 보고서 심의 동안 국가가 전문가의 질문에 대응하는 능

력을 향상시켜 주고, 이는 대화의 전체적인 질을 향상시킨다.

- 화상회의는 조약기구가 보고서 없이 국가를 심의할 때, 건설적 대화에 수도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허용하여, 정부대표단 부재 중 이러한 심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 화상회의는 모든 단계의 보고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모두가 조약기구와 협력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
- 화상회의는 2010년 12월 채택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탄소배출 감소전략에 따라, 여행 관련 기후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제안의 비용

화상회의는 일단 설치되면 국가들의 여행경비를 절감해 줄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하여, 화상회의 시설의 설치에 여전히 비용 투자를 필요로 한다.

권 고

당사국에게

- 화상회의 기술사용을 고려하여 상호대화 도중 활용 가능한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정부가 파견한 전문가를 보완하고 (예산도 절감한다.)
- 웹캐스팅 추진 안을 지원하고 제네바에서 웹캐스팅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을 제공한다.
- 유엔 조약기구 화상회의에 관한 제안을 지원하고⁵⁰⁾ 화상회의 시설 설치를 위한 적절한 예산을 제공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기타 유엔기구에게

유엔국가팀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현장사무소는 조약기구 심의의 국가 내 검토를 촉진함으로써 전파노력에 기여하고, 웹캐스팅을 인식 증진 및 훈련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유엔국가팀은 보고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사법부 구성원을 포함해서 국가 및 시민사회 활동가가,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 시설 또는 원격회의 시스템을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약기구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기타 이해당사자들에게

가능한 경우, 기타 이해당사자들은 조약기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약기구와 관계하며, 보고과정에 활발히 참여하는 혜택을 최대한 얻기 위해 웹캐스팅 및 화상회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특히 국가인권기구는 자국을 심의하는 조약기구 회기에 대한 웹캐스팅을 이용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업무를 풀뿌리 시민사회단체에 소개하기 위한 정기적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6.2. 조약기구제도의 가시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타 조치

본인은 전담 홍보담당관 직위를 신설하여 미디어 및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적인 미디어 및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조약기구 성과 및 교류를 보다 활발하게 전파하고자 한다.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통신을 상호작용의 대화로 변화시키고 모든 이해당사자의 지속적이고 건설적 참여에 대한 기여방안이 보다 깊게 검토되고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인은 조약기구제도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추가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1.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웹사이트에서 조약기구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웹사이트를 더욱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며, 장애인을 포함해서 사용자들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종합적 국가웹사이트는 지속적으로 조약의 비준 및 보고 상태에 관한 국가 관련 문서수집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모든 조약기구의 연간 일정을 웹사이트에 기재했고, 향후에는 당사국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위해 마감기한, 즉 제출, 구두 브리핑, 후속조치 활동 참여 등에 관한 것도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연간 일정은 국가 및 조약기구별로 검색이 가능할 것이다.
2.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국가가 세계인권색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어 특정 국가에 대한 권고를 주제별로 통합해주고, 이를 정부 부처, 의회, 사법부,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유엔기구 파트너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이를 단일문서로 통합할 것이다.
3. 세계인권색인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는 이에 대한 가시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4. 더 나아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개인통보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보다 증진시킬 것인데, 이는 별도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가능한 경우 세계인권색인과 연계하여, 조약기구의 견해, 후속조치 정보, 필요한 행동 및 구제 권고에 대한 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개인통보 절차에 따라 채택된 사례 요약본은 각 조약기구 회기 말미에 준비되고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독자에게 이메일로 결정을 발송할 때 각 결정에 키워드를 포함시켜야 한다.
5. 또한 이메일 배포 목록은 정보 전달을 개선하기 위해 확대될 것이다.

50) 일부 웹캐스팅 및 원격회의의 관련 장비 및 기술이 호환 가능하나, 이러한 2개 제안서는 각각 별도로 심의 및 이행될 수 있다.

제안의 부가가치

- 조약기구의 가시성이 향상되고 인지도가 개선된다.
- 조약기구의 결과물이 보다 더 확산된다.
- 투명성이 개선되고 예측가능성이 증가된다.
- 장애인 등을 포함해서 사용자가 조약기구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가, 기타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조약기구의 보다 활발한 참여 및 상호교류가 이루어진다.
- 최근 발전상황에 대한 결과를 계속 받음으로써, 모든 행위자의 역량이 증대된다.

모든 조약기구 및 기타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연간 일정에 기초한 전략적 계획 및 프로그램이 가능해진다.



DVD (인권조약과 분기별 소식지): “조약기구-인권을 가정으로” 및 세계인권색인

제안의 비용

P-3급의 직위 하나를 신설해 홍보담당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연간 비용은 20만 2000불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조약기구 관련 웹페이지를 포함)를 6개 모든 공식 유엔 언어로 번역하고 유지할 경우, 6명의 웹 콘텐츠 매니저(P-3급) 채용을 위해 연간 약 121만 2000불, 그리고 5명의 콘텐츠 관리 보조원(GS급) 채용을 위해 연간 36만 8000불의 비용이 소요되어, 연간 총 158만불 정도의 비용이 직원 채용에 소요된다. 또한 현재 영어로만 제공되는 방대한 웹사이트 콘텐츠의 번역을 위해 많은 자원이 소요될 것이다. 번역 용역은 기존 내용의 번역을 위해 약 31만불의 일회성 비용과 더불어 이후 43만 5000불이 매년 소요될 것이다. 향후 연간 201만 5000불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는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아직까지 비용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 고

당사국에게

- 홍보 직책을 개설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를 모든 유엔 공식 언어로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 조약기구의 결과물을, 개인통보제도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모국어 및 현지어로 번역하고, 법률적 및 사법적 교육 안에 조약기구 판례를 포함시키는 것 등의 적절한 채널을 통해 이에 대한 폭넓은 전파를 보장한다.
- 조약기구 절차에 대한 정보를 개인통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장애인과 아동에게도 쉽게 이해되고 바로 접근 가능한 양식으로, 그리고 모국어 및 현지어로, 제공한다.
- 국가 차원에서, 조약기구 개인통보절차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 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를 검토하고, 이는 제출물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기타 유엔 기구에게

- 조약기구의 결과물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가능한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가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 조약기구와 국가행위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며, 특히 조약기구의 결과물과 그 제도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를 널리 전파한다.
- 당사국과 기타 이해당사자가 인권기구 및 메커니즘의 권고를 구조적으로 이행하도록 지향하면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도록 지원한다.

기타 이해당사자들에게

- 국가인권기구는 조약기구 결과물들의 출판 및 보급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 시민사회 행위자는, 가능할 경우, 국가가 모든 관련 행위자들에게 정보를 전파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며, 그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를 지원한다.



결론 앞으로의 방향

우리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이를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이와 같은 비범한 시스템을 설립하였던, 조약을 작성했던 자들의 안목과 용기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조약은 보편적인 가치를 성문화하고 모든 인간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한다. 국가는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에 의한 정기적인 공개 심의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놓는다. 그러나 불복종과 자원의 부족이라는 “불가피성”에 체념하면서, 본 시스템은 오랜 역사동안 은근히 무시를 당하여, 현재 사무국은 증대되는 업무량에 매몰되어 압도당하기 직전인 실정인데, 이는 한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평균 23%가 해당 조약의 심의 절차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접어두고라도 그런 실정이다.

우리는 이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그것이 2009년에 본인이 본 제도가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시작했던 이유이고, 나는 그 결과에 압도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크고 작은 수많은 제안들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해준다. 이 보고서에서 본인은 제안들을 한 묶음으로 제시했고, 각 제안은 바로 개별적으로 이행될 수 있으나, 모두 같이 이행될 경우 개별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합한 것보다 몇 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조약기구의 기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는 능력도 강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권리보유자가 제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이 궁극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강화는 당사국, 조약기구, 그리고 본인의 사무소가 각자 권한에 따라, 그리고 서로 간에 협력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달려있다는 것이다. 본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는 각자가—금융 위기의 한 가운데 있을지라도—내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있다는 것이다. 본인은 낙관적이다. 유엔총회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조약기구 전문가들이 최대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모하고자 하면서, 변화의 계기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제도는 행동을 요구하고, 행동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공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당신의 헌신을 본인은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하는 당신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2012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 내비 필레이

4.1. 종합 보고 칼렌다

제안의 비용:

1. 전통적 보고과정이나 약식 보고절차의 페이지 제한과, 뿐만 아니라 최종견해의 길이 등등이 엄격히 지켜지며 (즉 이상적인 사례의 경우), 공통핵심문서가 연간 평균 수량으로 제출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2. 당사국과의 건설적 대화를 위한 회의 시간, 그리고 제안된 '상호작용을 위한 조율된 모델'에 따른 위원회들 및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전체회의에서의 최종견해 채택을 위한 시간을 포함하였다.
3. 회의 지원 비용은 표준형식을 이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이는 프리랜서 직원의 채용을 통해 추가 역량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서, 현재 시장에서 충분한 수의 능력있는 프리랜서가 존재하지 않아 실행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본 보고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비용 절감 방안, 즉 번역 업무를 용역에 맡기든가 회의 지원 사무소에서 업무를 공유하는 등을 조사해서, 정규직원, 프리랜서, 그리고 번역용역직을 혼합한 내용의 보다 세부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안사항에 대한 비용 (백만불)	2012	연간 기준
전문가 여행경비/일반예산	6.8	12
인건비/ 일반예산	8.8	34명의 추가 P-3급 직원, 합계 690만불 및 9명의 추가 GS급 직원, 합계 170만불 추가 비용(현재 일반예산 기준): 860만불 제안서 총 직원 인건비 ⁵¹⁾ : 17
인건비/ 특별예산	4.8	
회의 지원	36	79 (회의록 작성을 위한 500만불 및 추가 회의 지원 인건비 1580만불 포함)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번역 방식을 혼합하여 예상비용 세분화(원격, 용역, 업무량 공유, 프리랜서, 상시 인력 등)
추가 회의 지원 인건비	-	예상 상시 인력: 회의진행: 20명으로 구성된 추가 통역팀 1팀(P-5급 6명, P-4급 6명, P-3급 8명), 추가 회의실 담당관(GSOL급 5명) 문서작업: 번역 용역 및 내부 번역의 품질관리를 위한 P-5급 6명, 수정을 위한 P-4급 6명, 번역을 위한 P-3급 18명, GS급 사서(GSOL급 18명), 문서 관리자(GSOL급 3명), 인용자료 보조원(GSOL급 3명), 추가편집 직원(P-4급 3명, P-3급 3명) 1만 5800만불 (상기 7900만불 항목에 포함)
추가 회의실 시설	-	아직 비용 추산 안 됨 (팔레 데 나시옹의 전략 유산 계획(SHP)에 통합될 예정임)
총 계	56.4	108

대안으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보고 주기의 변경, 예를 들면 7년으로**, 회의시간이나 서류 등 연간 요건을 줄이기 위해 5년으로 주기를 완화한다. 5년 주기 하에서 소요되는 5200만불 대신, 7년 주기는 연간 2100만불이 더 요구된다.⁵²⁾
2. 2011년 총회에 제출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 제안했듯이(A/66/344), 종합 보고 칼렌다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한 번의 임시 조치로 **현재의 적체 상태를 일괄 제거함으로써**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안은 2012년에 계류 중인 269건의 국가 보고서 및 460건의 개인통

51) 위원회 국장, 과장, P-4 사무직원을 제외한, 68명의 P-3급 직원(1370만불) 및 18명의 GS급 직원 (330만불).

52) 총 5년 주기 예산: 540 (108*5)/ 7년 주기: 연간 77(돈의 시간적 가치는 무시)/현 연간 예산 (일반예산+특별예산): 56. 증가: 21 (77-56)

보에 대한 심의를 의미하며, **추가 회의시간 및 직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치는 5년 일정상의 예상 연간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를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그 동안 새로운 보고서 및 개인통보는 계속 접수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현 제도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켜줄 것이지만, 당사국의 불평등 이행 및 대우를 유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조약기구의 회의시간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적체가 쌓일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이 방안은 종합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임을 말해준다. 이 방안 하에서는, 조약기구 업무량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조약기구의 거듭되는 자원 소모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비용을 명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본 보고서에 대한 결정이 정해진 이후, 현재의 적체에 대한 업데이트된 검토를 해야 한다.

3.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2010년 시행한 업무량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약기구 회기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권 담당관의 수와 실제 수(일반예산 및 특별예산 직원) 사이에는 30%의 격차가 존재하며, 인권조약국은 P-3급 직원 약 13명(연간 약 260만불 추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직위가 몇이나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현재 및 향후 업무량에 대한 업데이트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4.2. 간소하고 조율된 보고 과정

본 장에 포함된 제안은 조약기구들이 업무방식을 조화시킴으로써 시행할 수 있으며, 추가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일부 제안은 조약기구의 다른 문서를 번역하기 위해 자원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문서 발간의 시기적절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4.2.1. “약식 보고절차”

이 제안은 당사국 및 유엔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보고 전 현안목록은 보다 간결한 국가보고서의 제출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의 시작 단계에서는 위원회가 보다 많은 약식 보고절차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임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수의 직위를 마련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현재 및 향후 업무량에 대한 업데이트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2.2. 공통핵심문서 제출 및 정기적 업데이트

이 제안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공통핵심문서의 제출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는 필요한 때마다, 그리고 적어도 종합 보고 캘렌다 주기에 따라 5년마다 이루어지며, 보다 짧고 목표가 분명한 조약별문서와, 이에 따라 더욱 초점을 맞춘 최종견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아래 4.2.4. 참조). 업데이트된 공통핵심문서가 원래의 공통핵심문서의 첨부문서로 제출된다면(아래 당사국 권고안 참조), 이는 업데이트에 대한 처리 및 번역 비용의 절감을 의미 할 것이다(예: 전면 개정된 공통핵심문서를 번역하는 대신, 첨부문서 몇 페이지만 번역한다).

4.2.3. 엄격한 페이지 제한 규정

이 제안은 예산 절감을 가져온다. 페이지 제한이 지켜진다면, 2011년 번역 역량에서 약 550만불로 추산되는 금액이 조약기구의 다른 문서의 번역에 배정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문서를 시의 적절하게 발간하도록 개선할 수 있었다.

4.2.4. 당사국 및 조약기구 간 건설적 대화를 위한 통합 방법론

이 제안은 추가적 예산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4.2.5. 요약회의록 번역의 축소

요약회의록이 발간되는 언어의 수를 줄일 경우 이는 문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고, 조약기구 문서 번역본의 시기적절한 발간을 늘릴 것이다. 예를 들면, 종합 보고 캘렌다에 따라 요약회의록이 제한된 숫자의 회의에 대해 한 언어로만 준비되고 대신 모든 공개회의가 웹캐스팅 된다면, 이는 3개 언어로 된 5년 주기의 요약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1500만불에서 웹캐스팅 비용만 제외하고 상당히 높은 잠재적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4.2.6. 초점 있는 조약기구 최종견해의 작성

이 제안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보다 초점이 명확한 최종견해는 자연스럽게 번역이 필요한 페이지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조약기구의 다른 문서에 대한 번역 역량을 늘릴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시기적절한 발간이 증대될 것이다.

4.2.7. 다른 유엔 파트너들과의 관계의 제도화

업무방식의 수정에 대한 제안은 추가적 자원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국가사업 및 업무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은 각 유엔기구 및 유엔국가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2.8. 조약기구, 국가인권기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통합된 교류 모델

이 모델은 추가적인 자원의 소요 없이, 종합 보고 칼렌다와 현재의 자원배분 하에서 추진될 수 있다.

4.3. 개인통보절차, 조사 및 국가방문 강화 제안

4.3.1. 개인통보에 관한 조약기구 공동실무그룹의 설치

자유권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사용하는 기존의 5주간의 회의시간을 공동 실무그룹의 회의시간으로 변경하여 조약기구 당 한 명의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본 제안은 사실상 소요 비용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4.3.2. 절차규정과 업무방식의 적용 및 공동지침 채택에 관한 우수사례의 검토

이 제안은 추가적인 자원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4.3.3. 조약기구 결정례 데이터베이스의 수립 및 개별사례 후속조치에 관한 정보제공

이 사업에서는 IT 계약직 및 데이터 입력 사무원을 우선 각각 9개월 동안 고용하고(추산 비용: 약 9만 3000불), P-3급 전담 직원을 연간 6개월 동안 배정한다(연간 비용: 10만 1000불).

4.3.4. 우호적 해결 및 아미카스 브리프에 대한 조약기구의 역할 탐구

이 제안은 추가적 자원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4.3.5. 고문방지소위원회의 역량 향상

2명의 추가 직원(P-3급 1명과 P-2급 1명)이 필요하며, 소요 비용은 연간 36만 1000불이다.

4.4. 조약기구 위원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안

4.4.1. 인권조약기구 위원들의 업무수행 시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한 지침

이 제안은 추가적 자원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4.4.2. 조약기구에 전문가 추천 시 국내정책 및 절차의 채택

이 제안은 추가적 자원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4.4.3. 기대, 가용성 및 업무요구량에 관한 정보안내서, 그리고 조약기구 선거 통합 웹사이트

이 제안은 추가적 자원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4.4.4. 모든 당사국이 조약기구의 잠재적 또는 지명된 후보자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개된 공적 공간

이 제안은 포럼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총 6개월 동안 전담 P-4급 직원 1명과 이를 보조하는 GS 직원 1명을 필요로 할 것이다 (비용: 연간 21만불).

4.5. 조약 이행 역량의 강화를 위한 제안

4.5.1. 조약기구의 후속조치 절차

후속조치 절차는 직원 비용이 많이 들며, 현재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나, 비용 문제는 조약기구가 이 절차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달려있다.

4.5.2. 일반논평/일반권고의 작성을 위한 통합된 자문과정

이 제안은 추가적 자원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4.5.3. 보고 관련 역량강화 활동

역량강화 활동은, 보고 훈련 워크숍을 포함해서, 장소와 형식, 그리고 참가자의 수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소요된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예산 규모에 따라, 기술적 지원 및 역량 강화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주재하는 국가나 본부에서 사무소의 기존 사업계획 내에서 예견할 수 있다. (또한 조약 기준 및 보고를 포함해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권고에 관한 후속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신탁 펀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4.5.4. 상설 국가 보고 및 조정 메커니즘

이 제안은 추가적 자원의 소요 없이 시행될 수 있다.

4.6. 조약기구의 가시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안

4.6.1. 국가적 수준에서 조약기구에의 접근성 및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웹캐스팅 및 화상회의 소개

웹캐스팅

유엔 제네바 사무소 및 공공정보국 정보서비스의 책임 아래, 모든 조약기구 회의의 웹캐스팅을 가능하게 할 영구적인 웹캐스팅 역량 구축은 시설/장비 비용으로 약 70만불, 연간 유지비 약 90만불

이 소요될 것으로 2008년에 추산되었다. 이후 기술의 변화를 고려할 때, 그러한 역량을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요구되는지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비용 절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전에 검토한 내용은 필요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이는 요약회의록을 생성하기 위한 비용보다는 훨씬 더 낮을 것이다. 향후 회의내용에 대한 기록이 자동으로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약기구는 요약회의록을 웹캐스팅으로 대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웹캐스팅은 비용 절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화상회의

화상회의는 일단 설치되면 국가들의 여행경비를 절감해 줄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하여, 화상회의 시설의 설치에 여전히 비용 투자를 필요로 한다.

4.6.2. 조약기구제도의 가시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타 조치사항

P-3급의 직위 하나를 신설해 홍보담당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연간 비용은 20만 2000불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조약기구 관련 웹페이지를 포함)를 6개 모든 공식 유엔 언어로 번역하고 유지할 경우, 6명의 웹 콘텐츠 매니저(P-3급) 채용을 위해 연간 약 121만 2000불, 그리고 5명의 콘텐츠 관리 보조원(GS급) 채용을 위해 연간 36만 8000불의 비용이 소요되어, 연간 총 158만불 정도의 비용이 직원 채용에 소요된다.

또한 현재 영어로만 제공되는 방대한 웹사이트 콘텐츠의 번역을 위해 많은 자원이 소요될 것이다. 번역 용역은 기존 내용의 번역을 위해 약 31만불의 일회성 비용과 더불어 이후 43만 5000불이 매년 소요될 것이다. 향후 연간 201만 5000불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는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아직까지 비용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 인권조약기구제도 강화 방안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 인 쇄 | 2014년 2월

| 발 행 | 2014년 2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B/D 11층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827 | F A X | (02) 2125-091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508-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